[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11.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명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상범(중앙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
	변혜정(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이성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국미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위촉연구원)
	오미영(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진영(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위촉연구원)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연구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조사에 응해 주신 학생선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덥던 여름 땡볕 아래 운동장 벤치에서, 무더운 교실에서 조사에 응해주시던 학생선수들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에 응해주신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원고를 읽어주시고,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이 연구를 지원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본 연구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안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 주신 문경란 상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의 주관부서로서 연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정책총괄팀의 김형완 팀장님과 서현수 사무관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조사를 위해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시민교육팀 관계자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며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공간과 행정을 지원해주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이재경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함께 해주신 김상범, 변혜정, 이성은, 국미애, 오미영, 이진영 연구진 선생님들 모두에게 깊은 동지애와 감사를 보냅니다.

연구책임자 이명선 드림

연 구 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체육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계기로 운동선수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근본적인 예방과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 연구의 범위는 ① 학습권 및 폭력, 성폭력 실태 전반 ②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유지 기제 분석 ③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해외사례 연구 ④ 학생선수 인권 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5월-10월 동안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문헌연구 등이 병행되었다.

①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설문지는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피해(경험, 빈도, 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등) 및 대응방식, 피해의 영향,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등 주로 실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9개 지역 대상 인권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② 심층면접

○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3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 운동선수로서의 일상,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 실태 및 경험, 및 피해발생 맥락, 대처 상황, 상호 인권 침해 간의 연관성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였다.

③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 정책제언과 관련해 각계 스포츠계, 여성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관련자, 정책담당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과 서면자문으로 진행하였다.

④ 국내외 문헌연구

○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학습침해 실태와 태도를 중심으로

① 학습권 실태 및 대처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합이 있을 때 평균 2시간, 없을 때는 4.4시간 정도로 심각한 수업 결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② 폭력 실태 및 대처

○ 전체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은 매일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폭력의 주 행위자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로 나타나며 폭력이 발생하는 주 장소는 훈련 장소이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 다음으로 선후배나 친구에 의한 폭력도

심각하며, 특히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 선배가 주 폭력행위자로 분석된다.

○ 폭력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이기보다는 “모르는 척 한다” 등 소극적 대처 경향을 보이며,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소극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고 폭력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체벌 등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56.4%), 체벌의 효과에 대한 일반 통념과 달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한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하다. 특히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성별차이가 유의미한데,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폭력이 여성선수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대처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등 소극적 대처가 “싫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적극적 대처보다 지배적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소극적인 대처경향을 나타낸다.

③ 성폭력 실태

○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 58.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한다. 강간 및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도 각각 1%과 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율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가 매우 일상적일 뿐 아니라 그 정도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성폭력 행위자는 폭력 행위자와 달리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서보다 선후배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장소나 기숙사로 나타난다.

○ 성폭력 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46.7%)”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화가 난다(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41.8%)”로 나타난다. 이 역시 성별 간 차이가 분석되는데 남학생이 “화가 난다(53.1%)”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는 응답이 가장 높다.

○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폭력에 비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등 적극적 대처의 의지를 보이는 비율(59.6%)이 높게 나타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 “대응방법을 몰라서(29.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④ 기타: 운동선수로서의 경험, 운동 중단 의사와 폭력의 관계 등

○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이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적으며, 운동부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운동 중단 의사를 가졌던 비율이 전체의 86.2%로 나타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 면접조사 결과: 인권 침해 발생구조를 중심으로

면접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며 아울러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구조와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준다.

① 학습권 침해

○ 학생선수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에 방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업 능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 학습권 침해는 폭력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주요한 토대이자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즉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이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고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또 다른 인권 침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②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구조 재생산

○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이 매우 일상적이며 종종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의 폭발이나 학생선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훈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용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선수들의 사기나 자존심 저하를 초래해 운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도자의 폭력은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도자-선배학생-후배학생으로 이어지는 가해자-피해자 연결고리의 악순환이 재생산 되고 있다.

③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적 구조

○ 성폭력은 선후배나 친구들 간에 그리고 코치 등 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발생

하며, 이들 성폭력의 발생은 불평등한 권력구조나 위계적인 폭력 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운동현장에서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훈련의 양상,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 선후배간의 폭력이나 체벌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로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상호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고 있다.

○ 폭력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는 지도자나 선후배 간의 위계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 학생선수 인권정책 사례

○ 미국은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와 NCAA(미국대학체육연맹)에서는 선수자격에서부터 학습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제시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지도하는 IMG 아카데미의 경우 코치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코치는 학생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폭력 및 성폭력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이나 브로셔, 가이드라인 제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자체의 조성을 억제시키고, 피해신고 시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 호주의 경우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차원에서 스포츠에서의 인권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관련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Member Protection Officer, Member Protection Mediator)를 따로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 경우, “Child Protection in Sport"에서 학생선수보호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및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 이들 해외정책사례는 학생선수를 전인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스포츠 활동 중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자의 자질과 스포츠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 정책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①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의 필요성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인권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엘리트 정책”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특히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미비, 성인지적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 인권 관점에 입각한 학원체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도한 경쟁주의로 인한 학습권 박탈 및 폭력의 허용 등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제도들의 개선과 아울러 인권 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② 영역별 주요과제

○ 학습권 보장 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 한 제도개선안, 즉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수업 결손 금지, 합숙소 개선, 전국(소년) 체육대회 개선 및 유소년축제로 전환,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등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 인권 침해(폭력 ·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생선수 성교육 운영, 지도자 인권교육,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학부모 인권교육 및 간담회, 관계기관 담당자 인권교육 및 협의회, 스포츠 인권 전문 사이트 개설, 스포츠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문화 향상사업 등이 요구된다.

○ 인권 침해(폭력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탑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신고 시 조사 및 위기 상담, 지속 상담, 진로 지도 및 중재, 법적 · 의료적 지원을 연계 · 통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주관부처는 3년, 5년, 10년 등 단계별/영역별 중장기플랜을 제시하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단계별 정책 집행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책 집행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 배치와 자원의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전담부서나 기구의 신설,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엘리트 체육의 경쟁주의, 승리주의 가치에 내재된 남성적 문화와

폭력 허용 문화가 체육계의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주요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학생선수 인권문제가 수많은 젠더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폭력,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뿐 아니라 폭력이나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로서의 자존감이나 정체성 등에서 상당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선수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책 지원, 성 인지적 체육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는다.

○ 국내 최초로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된 인권실태 조사이다.

○ 학습권 침해, 폭력·성폭력 등 학생선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 및 기제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다.

○ 기존 학생선수 인권정책 평가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스포츠 영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 전반을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연구 진행과 정책 수행 과정을 결합한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로서 의미를 갖는다.

<목 차>

연구요약 ····· iii

Ⅰ. 서 론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5
3. 연구방법 및 절차 ····· 7
4. 연구의의 및 한계 ····· 14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 **19**

1. 이론적 배경 ····· 19
   1) 국가주도 엘리트 체육과 학생선수 인권 침해 ····· 19
   2) 스포츠계의 폭력 허용과 남성적 문화 ····· 21
   3)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의 연속선 ····· 23

2. 분석 관점 및 주요 개념 ····· 26
   1) 분석 관점 ····· 26
   2) 주요 개념 ····· 27

Ⅲ.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 **31**

1. 설문조사 결과: 인권 침해 실태와 인식을 중심으로 ····· 31
   1) 응답자 특성 ····· 31
   2) 학생선수 인권 실태 및 대처 ····· 32
      가. 학습권 실태 및 대처 ····· 32
      나. 폭력 실태 및 대처 ····· 37
      다. 성폭력 실태 및 대처 ····· 52

3)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 인식 ····· 81
가. 체벌로서 폭력의 수용성 ····· 81
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 89
다. 성역할 의식 ····· 96
4) 운동부 경험과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 98
5) 소결 ····· 104

2. 면접조사 결과: 인권 침해 발생 구조를 중심으로 ····· 109
1) 응답자 특성 ····· 109
2) 학습권 침해와 대안 부재 ····· 111
가.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 규정되는 존재 ····· 111
나. 폭력과 성폭력 발생의 물리적 토대로써 학습권 침해 ····· 116
3)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 구조의 재생산 ····· 118
가. 지도자의 일상적 폭력과 폭력의 묵인 ····· 119
나. 학습된/허용된 선배의 폭력과 위계 구조의 재생산 ····· 127
4)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 136
가. 훈련이나 체벌과 혼동되는 성희롱 ····· 137
나. 폭력을 수반하는 동성 간 성추행 ····· 140
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 양식 ····· 141
5) 소결 ····· 143

Ⅳ.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 연구 ····· 147

1. 미국 ····· 147
1) NCAA의 사례 ····· 147
2) NFHS의 사례 ····· 152
3) IMG 아카데미의 사례 ····· 154
2. 호주 ····· 155
3. 스코틀랜드 ····· 164
4. 소결 ····· 167

Ⅴ. 정책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 173

1. 학생선수 인권정책 동향과 그 평가 ····· 174
1) 학생선수 인권정책 최근 동향 ····· 174
2) 현행 인권정책 평가 ····· 178
가. 정책관점의 혼재: 엘리트 체육 vs. 인권정책 ····· 178
나. 엘리트 체육 개선안의 문제 ····· 179
다.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미흡 ····· 180
라. 성 인지적 체육정책 도입 필요 ····· 182

2. 인권 관점에 입각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 183
1) 인권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183
2)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과 주요과제 ····· 185
가. 인권 향상(학습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185
나.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188
다.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198

3. 소결 ····· 201

Ⅵ. 결론 ····· 205

[참고문헌] ····· 212

[부록1] 학생선수 인권관련 외국기관 사이트 ····· 219

[부록2]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24

<표 목 차>

<표 Ⅰ-1> 설문조사 내용 ····· 10
<표 Ⅰ-2> 연구절차 ····· 14
<표 Ⅲ-1> 성별·학교급별·지역별 응답자 수 ····· 31
<표 Ⅲ-2> 성별·종목별 응답자 수 ····· 32
<표 Ⅲ-3> 시합 없을 때와 시합 있을 때 하루 운동시간 및 하루 수업시간의 평균 ····· 33
<표 Ⅲ-4> 보충수업 방법 ····· 34
<표 Ⅲ-5> 수업 보충 방법 ····· 35
<표 Ⅲ-6> 성별·학교급별 연간 합숙훈련 횟수 및 합숙일 ····· 36
<표 Ⅲ-7> 성별·학교급별 숙소 ····· 37
<표 Ⅲ-8> 폭력 경험 유무 ····· 38
<표 Ⅲ-9>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 39
<표 Ⅲ-10>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 39
<표 Ⅲ-11>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 40
<표 Ⅲ-12>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 40
<표 Ⅲ-13>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 41
<표 Ⅲ-14>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 42
<표 Ⅲ-15>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 43
<표 Ⅲ-16>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 44
<표 Ⅲ-17>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 45
<표 Ⅲ-18> 폭력 발생 장소 ····· 47
<표 Ⅲ-19>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 48
<표 Ⅲ-20> 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적 대처 ····· 50
<표 Ⅲ-21> 성별·학교급별 대처의 정도 ····· 52
<표 Ⅲ-22> 성(폭력) 경험 ····· 54
<표 Ⅲ-23> 성별에 따른 유형별 성폭력 피해 ····· 55
<표 Ⅲ-24>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 56

<표 Ⅲ-25>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 57
<표 Ⅲ-26>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릴 적이 있다” ····· 57
<표 Ⅲ-27>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 58
<표 Ⅲ-28> 11-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 59
<표 Ⅲ-29>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 59
<표 Ⅲ-30> 11-7 “나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 60
<표 Ⅲ-31>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 61
<표 Ⅲ-32>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 61
<표 Ⅲ-33>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62
<표 Ⅲ-34>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 62
<표 Ⅲ-35> 성폭력 발생 빈도 ····· 63
<표 Ⅲ-36> 성폭력 경험과 빈도의 차이 ····· 65
<표 Ⅲ-37> 성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 66
<표 Ⅲ-38> 성폭력 발생 장소 ····· 69
<표 Ⅲ-39>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 71
<표 Ⅲ-40> 다른 선수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한 느낌 ····· 73
<표 Ⅲ-41> 성폭력에 대한 대처 ····· 75
<표 Ⅲ-42> 폭력 대처 방법의 정도 ····· 77
<표 Ⅲ-43> 성폭력 대처 방법의 정도 ····· 77
<표 Ⅲ-44>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 ····· 79
<표 Ⅲ-45> 자신이 소속된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유무 ····· 81
<표 Ⅲ-46>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82
<표 Ⅲ-47> 성별에 따른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83
<표 Ⅲ-48> 학교급에 따른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84
<표 Ⅲ-49> 체벌 인식의 평균 ····· 85
<표 Ⅲ-50> 성별에 따른 체벌 인식 평균 ····· 86
<표 Ⅲ-51> 체별 인식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 86
<표 Ⅲ-52>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 ····· 87
<표 Ⅲ-53> 폭력 대책 ····· 88

<표 Ⅲ-54>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90
<표 Ⅲ-55>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92
<표 Ⅲ-56> 학교급에 따른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93
<표 Ⅲ-57> 운동부 내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94
<표 Ⅲ-58>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 ····· 94
<표 Ⅲ-59>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 95
<표 Ⅲ-60>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 95
<표 Ⅲ-61> 성별에 따른 성의식 평균 ····· 96
<표 Ⅲ-62> 성의식 평균 ····· 97
<표 Ⅲ-63> 성의식의 신뢰도 검정 결과 ····· 97
<표 Ⅲ-64>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 소질 ····· 98
<표 Ⅲ-65> 운동부 전후 변화의 평균 ····· 99
<표 Ⅲ-66> 운동부 전후 변화에 대한 신뢰도 검정 ····· 99
<표 Ⅲ-67> 성별에 따른 운동부 전후 변화의 평균 ····· 100
<표 Ⅲ-68>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 ····· 100
<표 Ⅲ-69> 성별에 따른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 ····· 101
<표 Ⅲ-70>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102
<표 Ⅲ-71> 운동부 중단 의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03
<표 Ⅲ-72> 인터뷰 사례 개요표 ····· 109
<표 Ⅳ-1> 학생선수 차별, 폭력 및 성폭력 체크리스트 ····· 162
<표 Ⅳ-2> 호주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 지역 및 연령별 참여율 ····· 163
<표 Ⅳ-3> 호주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 종목 및 참여유형별 참여율 ····· 164
<표 Ⅴ-1> 스포츠 인권관련 부처별 정책 비교 ····· 177

<그 림 목 차>

<그림 Ⅲ-1>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 49
<그림 Ⅲ-2> 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적 대처 ····· 51
<그림 Ⅲ-3> 성별에 따른 유형별 성폭력 피해 ····· 55
<그림 Ⅲ-4>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 72
<그림 Ⅲ-5> 다른 선수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한 느낌 ····· 74
<그림 Ⅲ-6> 성폭력에 대한 대처 ····· 76
<그림 Ⅲ-7> 폭력과 성폭력 대처 방법의 비교 ····· 77
<그림 Ⅲ-8>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 ····· 80
<그림 Ⅲ-9>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82
<그림 Ⅲ-10> 폭력 대책 ····· 89
<그림 Ⅲ-11>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 91
<그림 Ⅲ-12>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103
<그림 Ⅳ-1> 스코틀랜드 정부의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 ····· 165
<그림 Ⅴ-1>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및 정책과제 ·····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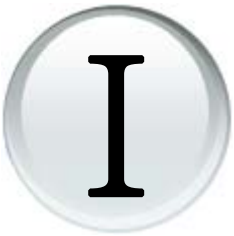

서 론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체육계[1]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각으로부터 소위 체벌이나 폭력으로 대표되는 인권 침해나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병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는 "공공연한 비밀"이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묵인되어 왔다(정희준, 2007). 그러나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과 올해 초 KBS 시사기획 <쌈>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보도를 계기로 운동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대책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왔던 체육계 인권문제를 밖으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체육계의 인권실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부분적이나마 현재 운동선수들이 처해있는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며 폭력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2006년 수행된 조광민 외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74.3%가 언어적 폭력을,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연구(2005)는 학생선수의 78.1%가 구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7년 수행된 황정임 외의 연구는 직장운동부내 성폭력 피해 경험율이 16.1%이며, 학생운동부 시절의 성폭력 경험은 37.5%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더구나 체육계 성폭력 발생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Fasting 외, 2003)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구보다 일상적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훨씬 관대한 우리사회의 경우 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와 아울러 학생선수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체육계 지도자나 관련학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습 권리로부터 배제된 채 오직 운동

1) 본 연구에서 "체육계"는 체육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문화적·관계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맥락에 따라서 "체육계" 혹은 "스포츠계"라는 개념을 혼용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

과 연습만을 강요당한 채 '운동기계'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학습권' 개념으로 접근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학습이나 대안조차 적절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강신욱, 2003).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정책변화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은 극히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상태이다.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 지도자나 관계자들 역시 폭력이나 체벌, 정규학습 불이행 등의 학습권 침해 문제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사자인 운동선수나 학부모들에게도 팽배해 있어서 "운동을 통해 성공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당장의 진학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경우에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의 일반적 인식은 더욱 부족하다. 대부분 성폭력은 극히 소수만이 겪는 일이거나 그다지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도자와 선수 간 혹은 선후배 간의 성적 희롱이나 추행 등은 명백히 성폭력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별 일 아닌 것으로 덮어지거나 심지어 성폭력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2)]

다행히 최근에 와서 체육계와 여성계 일각으로부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나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제기되고 있고, 엘리트 체육 문화의 변화와 체육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3)] 특히 2007년 국회가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비슷한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한 점은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2) 이 연구가 수행된 기간 동안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샵, 지도자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등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욱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7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와 문화연대의 공동주최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문화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 박명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나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 제기와 더불어 여성계의 이러한 대응은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여성계의 직접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할 만하다.

공동협약>을 맺고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중대 사안에 대한 사법조치 촉구, 공동 인권교육, 장단기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운동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를 개선해가려는 일련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4]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근본적인 예방과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에 관한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이라는 세 측면을 학생선수 인권실태의 주요지표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권은 학생선수를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으로부터 차별・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보다 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폭력은 단체생활, 훈련과정 및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신체에 가하는 체벌 및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과 인격모독이나 굴욕감을 주는 '언어적 폭력' 둘 다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의사에 반한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언동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을 학생선수 인권실태를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본다.[5] 첫째, 연구대상의 정체성이 '학생선수'라는 점을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7년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바탕으로 2008년 현재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특별인권상담 제보 접수,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샵 개최 등 일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5) 어느 한 집단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측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평가자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이고 선험적이기

고려할 때 학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 정서적, 인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는가 하는 측면은 매우 기초적인 지표이다. 둘째,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자율권이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폭력이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인권 척도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보고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살펴본다. 셋째, 폭력과 같은 맥락인 개인의 자율권 개념에서 더 나아가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중요한 인권 침해의 지표로 보고 성폭력 실태에 접근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학생선수 인권실태에 접근하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세 부분의 실태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더 크게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의 정책사례 및 한국사회의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학생선수 인권상황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에 대한 본 조사연구의 범위는 1) 학습권 및 폭력, 성폭력 실태 전반 2)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유지기제 분석 3) 관련 해외 정책사례 연구 4) 학생선수 인권 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및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학습권과 폭력, 성폭력의 구체적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 및 대응방식, 인권 침해가 학생선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2) 학생선수 인권 침해 발생 구조 분석

학생선수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폭력·성폭력의 발생구조, 학습권 침해구조와 폭력·성폭력 발생의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한다.

보다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가에 따라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생선수 인권 관련 해외 정책 사례

학생선수 인권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등 선진해외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4)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책동향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관점과 방향, 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문헌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한 것은 각각의 연구방법이 갖는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서이다. 즉 설문조사가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경험 등을 드러내는 데에 장점을 갖는 반면, 심층면접은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원인, 그러한 경험이 개인이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발생되는 구조 등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밖에 국내외 문헌자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학부모 간담회의 녹취록 등을 주요자료로 활용하였다.

가.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 및 방법

학습권, 폭력, 성폭력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1,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어려움과 이 연구가 국가인권

위원회의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기간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전국 시·도별 중·고교 학생선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인권교육과 조사의 병행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방법을 채택한 것은 스포츠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의 문제들, 즉 스포츠계의 문화적 폐쇄성, 합숙 및 훈련과 같은 집단생활로 인한 개별적 접촉의 한계, 그리고 폭력, 성폭력 등 본 연구 주제가 갖는 민감성에서 야기되는 조사의 제약[6]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별 학생선수 인권교육 진행시 연구진이 직접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지를 배포하였고, 인권교육이 조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권교육 이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지 수거 시에는 조사대상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봉투를 밀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기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서울 이외에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북, 부산의 9개 지역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 추출기준이 수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참가자 선정은 이 표본 추출기준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학교급별(학년별)/종목별/지역별의 4개 범주를 기준으로 성별 비율과 학년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선수가 많은 체조/농구/배구/수영/태권도의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선수의 인구 비율에 따라 종목별 비율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교육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표본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료처리 결과 조사 설계 당시의 기준과 달리 지역별로 특정 종목에 치우치거나 5개 종목 이외의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5개 종목 이외에 기타종목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종목별 범주를 통계분석 상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별, 학교급별(학년별) 변

6) 특히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 그 학생이 속한 학교나 담당 지도자가 폭력 등 내부문제가 노출되거나 학교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등 접근 가능성 자체가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본 연구의 설계 당시 자문에 응해준 스포츠계 전문가들은 “스포츠계의 폐쇄적 문화로 인한 조사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프로 스포츠 팀과 직장운동부 여성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황정임 외(2007)의 연구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진행의 어려움과 회수율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12.0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t-test, 신뢰도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② 조사내용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습권, 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폭력 및 성폭력 경험에 관한 영역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폭력인식과 성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가 10대의 학생선수인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 내용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학, 여성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하였다. 최종 조사내용은 크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관련 실태 및 대처, 폭력·성폭력 경험 실태 및 대처, 폭력·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의 영향, 기타 운동부 경험과 학생선수의 성의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31개 문항)		내 용
경험 실태	학습권 관련 실태 (5)	- 하루 평균 운동시간 - 하루 수업시간 - 연간 합숙횟수 - 연간 합숙일 - 보충수업 방법
	운동부 내 폭력 경험 실태 (3)	- 폭력 경험(폭력 빈도, 폭력 행위자, 폭력 장소) - 본인이 폭력을 당할 경우의 느낌 - 폭력 대처방법
	운동부 내 성폭력 경험 실태 (6)	- 성폭력 경험 (성폭력 빈도, 성폭력 행위자, 성폭력 장소) - 본인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의 느낌 - 다른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의 느낌 - 성폭력 대처방법 -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거나 못할 이유 - 소속 운동부 내 성폭력 유무
주관적 인식	운동 전후 변화 (1)	- 운동부 가입 전후 변화
	폭력/성폭력 인식 (4)	- 폭력 유형별 인식 - 성폭력 유형별 인식 - 폭력심각성 - 성폭력심각성
	체벌 인식 (1)	- 체벌 허용에 대한 인식
	성의식 (1)	- 성역할 의식
해결 방안 (2)		- 체육계 학습권, 폭력, 성폭력 해결 방안 - 체벌 없는 훈련법에 대한 의견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3)		- 본인의 소질에 대한 평가 - 운동부 중단 의사 및 이유 - 장래 희망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2)	- 성별 - 학교급/학년
	운동 관련 특성 (3)	- 운동 종목 - 운동부 시작 시기 - 운동부 가입 이유

나. 심층면접

① 조사대상 및 방법

심층면접은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30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특성상 면접대상자 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시 홍보전단물 배포, 학교 선생님이나 체육계 인사를 통한 소개, 연구진의 개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자 섭외가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심층면접 분석대상 중 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상담 지원 사례 중 하나로서, 본인과 부모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상황에 따라 학교나 훈련장 주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례 당 평균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접대상자와 라포가 잘 형성된 경우 2-3시간 진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6명), 충청(8명), 강원(5명), 전라(4명), 경상(2명), 부산(5명)으로 실태조사와 병행해 전국지역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6명이며, 성별로는 여학생 21명, 남학생 9명이고, 종목별로는 단체종목이 16명, 개인종목이 14명이다.

②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설문조사와 같이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주요 조사범위로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면서 아울러 심층면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진들 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학생선수들의 훈련이나 진로 선택 과정, 운동과 학습 병행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인권 침해 피해와 관련된 개별적 경험, 피해가 경험되었던 맥락이나 관계, 상황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실제 현장에서 학습권 침해가 학생선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성폭력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이며, 어떤 구조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등의 구조적 분석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접근하였다.

다. 전문가 인터뷰/자문

① 조사대상 및 방법

학생선수 인권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제언을 제안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및 서면 자문을 진행하였다. 각계의 전문가는 스포츠계 학자 4명, 여성계 학자 2명,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정책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면 인터뷰는 일차로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전 과정이 녹음되었고, 분야별로 제기된 평가와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제언 초안 집필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정책제언 초안을 기초로 3명의 체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전문가에게 다시 서면자문 및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② 조사내용

질문 내용은 각각의 전문가가 속한 영역별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제안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견,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수립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했던 학자나 체육코치, 정책담당자로부터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비판적 평가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계 인사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성 인지적 체육정책의 필요성과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는 주로 현실적인 정책과제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등이 수렴되었다. 이외에 본 연구의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2008년 10월 7일)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 및 평가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정책관계자 협의회 등에 제출된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토론문 등을 정책담당자의 의견으로 간주하고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문헌연구

학생선수 인권관련 국내외 이론, 학습권 침해와 폭력・성폭력 관련 국내외 실태

조사 관련 선행연구, 국내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관련 자료 및 언론보도문 등을 주요 문헌자료로 참고하였다. 또한 해외 인권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례 연구, 관계기관의 사이트나 매뉴얼 등을 중요한 정책 자료로 분석하였다.

마. 기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병행해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 9차분[7]을 전수 녹취하고, 필요시 연구진들이 토론이나 진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인권상황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들의 의견과 경험 역시 본 연구의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전문가 워크샵 등에서 제기된 스포츠계 및 여성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 발간 자료집 등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8]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5월-10월에 걸쳐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의 <표 Ⅰ-2>와 같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학생선수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경우 조사기간에 실시되었던 9개 지역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를 전수 녹취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일상적 고충이나 진학문제는 물론 폭력, 성폭력 문제, 스포츠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8) 본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워크숍(2008. 4)》, 《인권교육 전문가 워크숍(2008. 9)》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관련학자나 스포츠인, 스포츠 문화평론가,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토론된 내용과 자료집 등을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2007년 7월 진행된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11월의 《인권정책 관계자 협의회》 자료집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Ⅰ-2> 연구절차

2008년	5월	연구설계 및 실태조사 질문지 작성
	6월 - 8월	설문조사 진행
	6월 - 9월	심층면접 진행
	8월 -10월	정책제언 관련 전문가인터뷰/자문 진행
	6월 -10월	국내외 문헌연구 및 해외정책사례 연구
	10월 7일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11월 1일	최종보고서 제출

4. 연구의의 및 한계

중·고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국내 최초의 전국적·포괄적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조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인권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학생선수 인권실태와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들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이나 성별, 학교급별 등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주류를 구성하는 남녀 중·고등학생[9]을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전국적·포괄적 실태조사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 학생선수 인권실태의 현 주소를 보다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실태조사 보고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인권실태 전반 조사

연구범위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습권 침해 및 폭력,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9)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등 인권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조광민 외, 2006).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의 실태조사들이 주로 학습권이나 폭력, 성폭력 등 어느 한 부분만을 연구범위로 국한해 수행됨으로써 인권실태의 부분적 측면만을 조명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인권 침해를 분석하는 주요 지표로서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의 세 측면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인권 침해의 실태를 보다 다면적,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3) 인권실태의 구조적 분석 및 이론화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생선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조사 분석을 토대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 분석 및 이론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특히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제언 및 해외사례 소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학생선수 인권정책 동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분석은 현재 관계당국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개선책들이 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제언은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수립을 위해 중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 대책,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해외사례는 비록 국내 여건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직접적 적용은 어렵더라도, 스포츠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정책수립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자 선례로서의 실용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5) 연구와 정책수행과정을 결합한 액션 리서치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 진행과 정책 수행 과정을 결합한 하나의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로서 실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한 해 동안 수행한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새로운 시도들, 즉 정책 개발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인권정책들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심층적인 정책 평가 및 제언을 구성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수행과정의 결합을 시도한 본 연구는 학문적, 담론적 논의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검증된 정책제언으로서 실천가능성과 활용성을 갖는다.

6)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행한 최초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연구

본 연구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에 접근한 본격적 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는 체육계 내부의 문제라는 폐쇄성과 더불어, 여성계 역시 여성선수들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부여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 인지적 관점 하에 연구의 설계와 분석 등 전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인권정책의 성 인지 정책 미비와 도입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학생선수 인권실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스포츠계의 성 차별이나 성 평등 정책개발 등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과 예산, 인력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과 범위를 포괄하다보니 영역별·대상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의 특성상 설문조사 과정에서 표집방법 등 조사방법의 엄격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진의 과제로 남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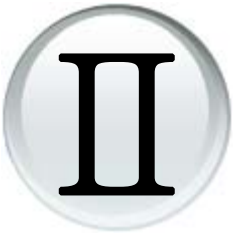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II.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1. 이론적 배경

그 동안 학습권, 폭력, 성폭력 각각에 대한 각각의 실태조사나 부분적인 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세 영역을 포함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론화 작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주도의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학생선수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둘째, 한국 스포츠계의 남성적 문화와 폭력 허용 문화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조장, 묵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의 발생구조는 무엇이며 이는 폭력의 발생과 구조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1) 국가주도 엘리트 체육과 학생선수 인권 침해

학생선수를 비롯한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 체육계를 지배하는 소위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엘리트 체육은 1)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 2) 소수의 제한된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중심 3) 체육영역(생활, 학교, 엘리트) 간 불균형과 단절을 그 특징으로 한다(류태호 외, 2003). 1970년대 이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정책과 구조는 한국 체육계에 빛과 그림자라는 분명한 이중적 측면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해 류태호 외(2003)는 한국 체육시스템이 소수의 엘리트 선수에게 물적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이들의 운동기량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기여했지만, 잠재된 풍부한 인적자원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선발된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합숙훈련,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풍토를 조성해왔다고 비판한다.

"국가주도 엘리트 체육"으로 명명되는 한국 체육계 구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치는 '무한경쟁'과 '승리 지상주의'이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 해 경쟁과

승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권 제한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들이 무수히 발생되어 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구조적 병폐나 개인의 인권 침해가 "운동을 통한 성공" 혹은 "국위선양"을 위한 정치적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인 양 묵인되거나 수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와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바로 학생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이다. 소위 "합숙 훈련" 혹은 "합숙소"는 운동선수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보장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위배되며 비교육적 관행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효율적으로 (손쉽게) 운동선수를 훈련하고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합숙이 공간적으로 폐쇄적인 집단문화를 유지시키는 물리적 기제라면, 굳이 합숙이 아니더라도 정규수업 불참을 전제로 진행되는 대회나 훈련일정, 그리고 운동부 안에서 준수되는 선후배 간의 위계적인 지배-복종 관계 등은 운동선수들이 "일반학생"과는 분리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별개의 삶을 구성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다.[10)]

학생선수들의 합숙 문화나 정규수업 불참 관행은 한국의 체육계가 운동선수에게 기대하는 이상적 인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들에게 운동이 학습과 병행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장래의 꿈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기에, 이들은 운동 이외의 어느 것도 꿈꿀 수 없는 전문선수이자 운동기계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스포츠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때 이들은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절박함 때문에 운동을 즐기기보다는 운동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학생으로서 배움의 과정은 물론 모든 개인적 욕망을 차단하고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운동에 집중하는 "운동기계"는 이미 인권을 가진 자율적 주체가 아닌 운동선수로서 대상화된 타율적 존재이다.

이 문제는 단지 학습권 침해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선수들의 잠재력이나 문제대처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인권 침해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가령 집단성, 폐쇄

10) 안민석 의원은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 보고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학생선수들이 무리한 학습과 수업 결손으로 인해 "이분법적 시간성", "단절된 공간성", "위계적 관계성", "무한경쟁적 활동성"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문화 안에서 타율적 대상으로 키워진 운동선수 개개인은 흔히 위계와 권력에 무력한 피해자로 사회화되거나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다.[11] 설사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의 부당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운동 이외의 대안이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운동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은 운동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다양하고 전인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기보다는, 소수의 승자 중심 경쟁원리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권 박탈을 통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 제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주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하겠다.

2) 스포츠계의 폭력 허용과 남성적 문화

학생선수 인권 침해를 가장 단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은 체육계 내부의 폭력문화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연구들 역시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05)[12]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선수의 78.1%가 구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선수의 58.4%가 주당 1회 이상 구타를 경험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광민 외(2006)[13]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74.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11) KBS 시사기획 <쌈>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는 운동선수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왜 저항하지 못하는지, 왜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을 보여준다.

12) 이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각급(초·중·고·대) 학교 275개교의 18개 종목, 국가대표급 8개 종목에서 학생선수 1,600명, 학교운동부 지도자 200명, 학부모 120명, 국가대표 선수 109명, 국가대표 지도자 11명 등 총 2,04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월 15일-3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13) 이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에서 총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7월 31일-9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은하 외(2005)[14]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선수 전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빈번한지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관련 제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즉 소수의 승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구조에서 지도자나 학생, 심지어 학부모조차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은 경기력 향상이나 학생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에 대하여 운동선수와 지도자의 태도를 분석한 김응식(2001)의 연구는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벌 필요성에 대하여 지도자가 학생선수보다 더 많이 동의하고, 그러한 체벌의 심각성에 대해 학생선수가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체벌 방법이나 체벌 부위, 장소, 감정 개입 정도, 체벌 이유 설명 과정 등에 대해서도 학생선수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생선수와 지도자 모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팀워크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함으로써 체벌을 자연스러운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구타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5). 즉 체육계의 오랜 폭력이 관행화되어 운동선수 자신이나 지도자,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경기인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내면화하고 있다(김정명,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신체에 부정적 자극을 가하면 신체자극에 의해 기량이 향상된다는 체육계의 통념(myth)과 그로 인해 폭력이 답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함정혜・박현애, 2007).

스포츠계의 남성적 문화는 폭력 문화를 허용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스포츠는 흔히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된다.[15] 무엇보다 스포츠가 연상시키는 육체적 힘과 건

14) 이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각급(초・중・고・대) 학교 운동부 7개 종목, 국가대표급 11개 종목에서 학생선수 12명, 학교운동부 지도자 5명, 학부모 5명, 국가대표 선수 18명, 국가대표 지도자 4명 등 총 44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5년 3월 13일-6월 15일이다.

15) 스포츠가 남성적이라는 의미는 단지 가치 체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스포츠계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이나 권력불평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2007년 현재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중 남성의 비율이 77%로 압도적인 현상은 체육 종목 등 구조 자체가 남성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

강하고 강인한 육체는 일반적 의미에서 여성적 이미지이기보다 남성적 이미지와 결부된다. 게다가 한국 스포츠계에서 강자승리와 무한경쟁,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의 세계에서 공격성과 적극성, 성취욕과 같은 소위 "남성적 가치"는 운동선수의 긍정적 덕목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성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선수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적 가치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남성화되거나 남성처럼 자신을 재구성해야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일상적 삶에서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소위 남성적 가치는 여성의 성별 정체성과 대립되거나 적합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과 폭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선수들은 폭력적 문화나 남성적 문화를 수용하거나 체화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운동선수로서의 적응과정이자 중요한 생존전략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폭력 문화를 수용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순응을 훈육 받은 집단 안에서 10대 선수들은 부당한 인권 침해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힘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폭력이나 통제에 순응하거나 자신 역시 폭력의 가해자로 역할하게 되는 폭력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of violence)을 겪는다.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비단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후배 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남성선수들뿐 아니라 여성선수들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폭력의 사회화 과정이며 또한 폭력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의 연속선

폭력과 더불어 성폭력 역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가져오거나 심한 경우 평생 동안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 침해이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폭력이나 학습권에 대한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나 그 심각성

아니라 청소년기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운동=남성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운동을 선택한다는 것이 곧 남성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할 때, 이러한 가치체계는 여성들이 체육계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체육계 현장에서 지도자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 관계자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현상 역시 체육계가 일반 다른 사회보다 더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임을 증명한다.

을 드러내기에는 이미 충분하다. 조광민 외의 연구(2006)는 조사대상자인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14.8%가 성적 폭력을 경험했음을 보고하고 있고, 황정임 외의 연구(2007)에서는 직장운동부 내 성폭력 피해 경험이 16.1%, 학생운동부 시절의 성폭력 경험이 37.5%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종미의 연구(2008) 역시 서울시내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의 약 34%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 더구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간 성희롱 인식 수준에 관한 남상우 외(2007)[16]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운동선수들은 성희롱 행동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폭력 실태와 피해는 연구결과에 나타나는 객관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함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연구결과에서 동성 간의 성폭행이 드러나는데, 주종미의 연구에서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76%) 운동부 지도자로 나타나지만, 일부(24%)는 동료선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광민의 연구결과 역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남녀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이 연구에서 피해자의 약 72%가 남학생으로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성적 폭력 피해율을 나타낸다. 또한 주 가해자가 지도자(45%)로 나타나며, 남학생의 경우 운동부 선배한테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도 35%에 이른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스포츠계 성폭력이 단순히 이성 간에 발생하는 성적 행위로 나타나기보다 동성 간 지도자-선수관계나 선후배 간의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여성학자들이 이론화했듯이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별(gender)과 같이 특정한 위계질서와 권력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이명선, 2005). 여성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황정임 외(2007)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성별 위계관계에 의한 성적 폭력의 전형은 남성지도자와 여성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형태이다. '스포츠 지도자=남성, 운동선수=여성'인 관계에서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의 위계관계와 성별불평등은 성폭력 발생의 기본조건을 제공한다. 더구나 어린 여자선수들의 경우 남성지도자를 트레이너이자 친구이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와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로 얽힐 수도 있고(Fejgin & Hanegby, 2001), 이 같은 친밀성이 종종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활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보고된다

16) 이 조사는 D광역시 고등학교 운동선수 200명과 일반학생 200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사례는 일반학생 196명, 운동선수 178명이다.

(Nielsen, 2001; 황정임 외, 2007에서 재인용). 가령 여성선수들이 남성선수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여성적 역할(가령 지도자의 개인적 시중이나 서비스 등)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 경우 이는 전형적으로 조직 내 위계나 권력에 의한 성희롱 혹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별 불평등뿐 아니라 위계질서나 조직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 역시 성폭력 발생의 구조로 작용한다. 군대와 같이 폐쇄적인 동성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최근의 연구(권인숙, 2004)는 성폭력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폭력이 아니라 위계와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동성 간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나 동성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성별이나 위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과 더불어 스포츠계의 성폭력 발생은 앞 절에서 살펴본 폭력 허용문화와 분리시키기 어렵다.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왔듯이, 성폭력은 폭력이 허용되는 문화에서 더 쉽게 발생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몸에 대한 훈육과 통제의 일상화, 폭력의 허용과 순응도가 높은 집단문화는 성폭력에 대한 허용이나 수용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각각의 폭력적 행위가 갖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연속선 개념[17] 혹은 폭력과 중층적 관계를 맺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폭력은 단순히 성적 행위가 아니라 폭력 행위의 한 형태이며 때로 폭력과 결합되어 발생한다. 물론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성폭력은 분명 일정한 지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폭력과 다른 특수성을 갖지만, 동시에 폭력의 한 형태로서 폭력이 갖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개념적 연속선 위에 위치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중층적 구조로 나타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가령 성폭력은 폭력과 함께 지도자가 선수를 통제하거나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방식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훈련이나 체벌의 한 형태로 오용될 수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 역

17) 폭력의 연속선(the continuum of violence)이란 폭력의 양태가 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적, 정서적 형태에서부터 육체적 상해(극단적으로는 죽음)를 야기하는 극단적 형태의 폭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구성함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성적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폭력의 개념과 구분되지만, 성폭력 역시 언어적, 정서적 폭력부터 극단적인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는 연속선의 개념으로 구성되며 현실적으로 성폭력은 강제라는 폭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중층적 특성을 갖는다.

시 성폭력을 체벌이나 훈련의 일환으로 혼동하거나 일상적인 해프닝(장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의 행위는 흔히 체벌이나 훈련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되고 수용된다. 심지어 서구의 연구들은 여성선수들이 남성적 스포츠 문화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남성문화의 일부로 인식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수용하고 참을 뿐 아니라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 감당해 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Brackenridge, 1997). 이러한 상황들은 스포츠계 안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비가시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왜 이를 드러내거나 문제화하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성폭력의 문제를 권력의 불평등에 기반 한 성적 자율권의 침해이자 폭력의 연속선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의 형태로 분석한다.

2. 분석 관점 및 주요 개념

1) 분석 관점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인권 개념, 즉 “학생선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과 권리를 추구할 자유를 가지며,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엘리트 체육 구조, 스포츠계의 남성적 문화와 폭력 허용문화, 그리고 폭력과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권력불평등의 중층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한다. 따라서 각 개별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더불어 이의 발생 및 유지, 재생산 기제가 작동하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및 정책방향 모색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을 견지한다. 성 인지적 관점이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정책이나 연구, 교육결정 및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남녀 성원이 갖는 차이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 평등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권 실태나 운동경험, 폭력,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 해서 남녀 간의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각 개인이나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중요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요구되는지를 제시한다.

2) 주요 개념

본 연구에서 분석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개념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개념 정의는 이론적 논의나 쟁점을 포함하기보다는,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조작적 개념 정의이다.

가. 학습권

학습권 개념과 관련하여 김신일(1999)은 일반적으로 학습권의 의미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격적·지적·기능적 향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고 기초교육에 참여할 권리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학습할 권리와 아울러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학습권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 홍덕기·류태호(2007)는 학생선수를 '학생'이라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교육기본법 제3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으로부터 차별·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여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권은 "학생으로서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개념에서 접근한다. 또한 학생선수 역시 일차적으로 '학생'이라는 주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역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인권으로 본다. 본 조사연구에서 학습권은 일차적으로 수업시간, 운동시간, 보충시간, 보충방법, 운동 중단 여부, 그 요인 등의 양적 실태와 아울러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 등 교육과 훈련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등을 통해 분석된다.

나. 폭력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브라운밀러, 1971)이다. 이는 유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 공포, 좌절 또는 힘의 과시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분석적으로 해석하여 1) 체벌을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2) 체벌이라는 목적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표현적 폭력 모두를 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광의의 폭력 개념은 유형별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며, 폭력은 때로 성폭력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포괄적 개념과 성폭력과의 중층적 특성을 "폭력의 연속선" 개념으로 분석한다.

다.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학문적, 법적 개념이 모두 다른 층위를 가지며, 심지어 여성학자들 간에도 입장에 따라 "가부장제 사회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급진적 관점에서부터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강제나 위계, 불평등한 권력에 의한 폭력 또는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권인숙 외, 2004; 변혜정, 2004, 2006; 이성은, 2003; 장(윤)필화, 1999); Flynn, 1999; Kelly, 1987; Kirshenberg, 1997; Kurth & Spiller & Travis, 2000).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 관점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분석한다. 성적 자율권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한 개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성적 행위나 태도 등과 관련해 외부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강제나 폭력 또는 권위나 위계 등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이명선, 2005). 또한 성폭력은 "의사에 반한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적 행위"이며, 이성 간의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포괄한다.[18]

18) 본 연구의 성폭력 개념은 법적인 개념과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밝힌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

이 연구에서 성폭력은 맥락이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는 개념으로도 대체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한 범주에 포괄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개념적 수준에서 신체적 성폭력은 소위 법적인 범주의 강제추행, 강간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도 포함한다. 또한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은 의사에 반한 차별적인 성적 표현이나 보여줌(게시) 등의 행위로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법, 아동보호법 등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을 다루고 있으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 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으나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성적 자율권)의 침해죄”로의 변경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성희롱은 1993년 서울대조교 사건 이래로 한국사회에서 1997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5년 폐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불법행위로 규제되고 있다. 법적으로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에만 성립하고, 그 이외의 어떠한 성적 접촉도 모두 강제 추행으로 해석하며 강간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언행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개념에 의거한다면, 동성 간의 강간이나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은 법적 강간이나 성희롱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유사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 청소년 간에 일어나는 강간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근거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과 동성 간의 원하지 않은 성관계, 즉 강간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Ⅲ.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인권 침해 실태와 인식을 중심으로

1) 응답자 특성

전체 설문지 1,139부 가운데 성별 또는 학교급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17부)를 제외한 유효 사례는 총 1,122부이다.[19] 그러나 분석에서 성별이나 학교급을 기입하지 않은 사례를 결측으로 제외하지는 않았으며, 성별 분석이나 학교급별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성별・학교급별・지역별・종목별 현황은 아래의 <표 Ⅲ-1>, <표 Ⅲ-2>와 같다.

<표 Ⅲ-1> 성별・학교급별・지역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구 분		서울	전남	전북	경기	경북	충북	충남	부산	강원	전 체
여학생	중학생	33	1	13	9	33	28	24	24	31	196
	고등학생	33	68	47	48	24	31	39	26	26	342
	전 체	66	69	60	57	57	59	63	50	57	538
남학생	중학생	27	0	19	25	32	29	37	35	27	231
	고등학생	34	65	44	56	38	20	29	31	36	353
	전 체	61	65	63	81	70	49	66	66	63	584
전 체		127	134	123	138	127	108	129	116	120	1,122

19) 앞서 Ⅰ장 3절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설문지 수거율이 거의 100%였고 교육 참가자가 같은 학교, 같은 운동부 소속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본 설문조사 결과 해석 시에 유의해서 보아야 할 특성으로 간주된다.

<표 Ⅲ-2> 성별·종목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구 분	육상	축구	체조	농구	배구	수영	태권도	기타	전 체
여학생	37	43	16	51	86	52	44	207	536
남학생	47	60	14	84	31	68	74	205	583
전체	84 (7.5)	103 (9.2)	30 (2.7)	135 (12.1)	117 (10.5)	120 (10.7)	118 (10.5)	412 (36.8)	1,119 (100.0)

<표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여성 538명(48%), 남성 584명(52%)으로 남학생이 약간 더 많고, 중학생이 427명(38%), 고등학생이 695명(62%)으로 고등학생이 더 많다. 그리고 <표 Ⅲ-2>에서 나타나듯, 원래 조사 설계 시 계획했던 성별, 종목별 층화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타' 종목의 응답자가 많았다(36.8%). 이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많은 수가 체고 학생들로서,[20] 체고의 특성상 다양한 종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종목별 분석에 문제를 가져왔으며, 연간 합숙횟수나 합숙일 등 다른 문항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석 한계로 밝힌다.

2) 학생선수 인권 실태 및 대처

다음에서는 학교에서의 운동과 수업시간, 그리고 보충수업의 방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학생선수로서 어느 정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물론 물리적인 학습시간 확보만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학습시간과 보충 시스템의 마련 여부는 학습권의 기본 조건이다. 또한 합숙훈련 횟수와 합숙일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구성 조건의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

가. 학습권 실태 및 대처

20) 응답자의 47% 정도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에 근거한다면 조사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가 체고 학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운동시간과 수업시간

먼저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중·고와 비체중·고의 차이가 있지만[21] 전반적으로 시합 여부에 따른 운동시간과 수업시간을 비교하였다.

<표 Ⅲ-3> 시합 없을 때와 시합 있을 때 하루 운동시간 및 하루 수업시간의 평균

구 분		시합 없을 때 운동시간	시합 있을 때 운동시간	시합 없을 때 수업시간	시합 있을 때 수업시간
여학생	중학생	4.2154	5.5864	4.821	2.695
	고등학생	5.0966	5.8909	3.996	1.278
	합계	4.7748	5.7811	4.286	1.804
남학생	중학생	3.6528	4.5749	5.617	2.616
	고등학생	4.7064	5.4491	4.053	1.610
	합계	4.2897	5.1016	4.666	2.005
합계	중학생	3.9116	5.0371	5.260	2.652
	고등학생	4.8984	5.6684	4.025	1.450
	합계	4.5225	5.4287	4.485	1.910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선수들은 시합이 있을 때는 평균 약 2시간, 시합이 없을 때는 4.4시간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 Ⅲ-3>을 보면 '시합이 없을 때' 하루 운동시간은 여학생이 4.7748시간, 남학생이 4.2897시간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고, 중학생이 3.9116시간, 고등학생이 4.8984시간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합 있을 때 운동시간은 여학생이 5.7811시간, 남학생이 5.1016시간, 중학생이 5.0371시간, 고등학생이 5.6684시간으로, 시합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다. 한편 시합 없을 때 수업시간은 여학생이 4.286시간, 남학생이 4.666시간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중학생이 5.260시간, 고등학생이 4.025시간으로 중학생이

21) 체고의 경우, 시합이 없을 때는 주로 오전 4시간이 학습시간으로 편성되지만, 이 시간 중에도 운동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고등학생보다 많다. 그리고 시합 있을 때 수업시간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중학생이 2.652교시, 고등학생이 1.450교시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루 운동시간과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운동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다. 반면 수업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다. 이렇게 운동시간과 수업시간의 분포가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하루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운동시간과 수업시간이 서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② 보충수업 실태

<표 Ⅲ-4> 보충수업 방법

단위: 명(%)

구 분		전혀 받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이 보충해 주신다	운동부 선생님이 보충해 주신다	운동부 친구들끼리 도와준다	운동부가 아닌 친구들이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다	기타	전 체
여학생	중학생	147	26	12	50	62	31	26	194
	고등학생	263	41	22	146	46	37	45	340
	전체	410 (76.8)	67 (12.5)	34 (6.4)	196 (36.7)	108 (20.2)	68 (12.7)	71 (13.3)	534 (100.0)
남학생	중학생	189	25	20	48	59	21	31	227
	고등학생	313	46	17	104	28	20	44	350
	전체	502 (87.0)	71 (12.3)	37 (6.4)	152 (26.3)	87 (15.1)	41 (7.1)	75 (13.0)	577 (100.0)
전 체		912 (82.1)	138 (12.4)	71 (6.4)	348 (31.3)	195 (17.6)	109 (9.8)	146 (13.1)	1,111 (100.0)

* 복수응답 허용

<표 Ⅲ-4>는 학생선수들이 수업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충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2.1%로 전반적으로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특히 성별로는 여학생 76.8%, 남학생 87.0%로 나타나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친구들의 도움이

나 개인과외 등의 방법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학생 가운데 “운동부 친구들끼리 도와준다”는 응답은 매우 높은 반면 ‘운동부가 아닌 친구들이 도와준다’는 응답이 중학생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아마 이번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에 체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체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며, 교실을 제외한 이들의 생활공간은 주로 훈련장소와 기숙사에 제한되고 있다.

<표 Ⅲ-5> 수업 보충 방법

단위: 명(%)

구 분		전혀 받지 않는다	선생님이 보충해주신다	친구들이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다	기타	전 체
여학생	중학생	147	38	112	31	26	194
	고등학생	263	63	192	37	45	340
	전체	410 (76.8)	101 (18.9)	304 (56.9)	68 (12.7)	71 (13.3)	534 (100.0)
남학생	중학생	189	45	107	21	31	227
	고등학생	313	63	132	20	44	350
	전체	502 (87.0)	108 (18.7)	239 (41.4)	41 (7.1)	75 (13.0)	577 (100.0)
전 체		912 (82.1)	209 (18.8)	543 (48.9)	109 (9.8)	146 (13.1)	1,111 (100.0)

<표 Ⅲ-5>는 수업을 보충 해주는 방법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위 표에서 “선생님이 보충해주신다”는 18.8%로 “친구들이 도와준다(48.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보충수업은 20%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보충수업을 전혀 받지 않거나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보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시간 분석결과는 이들이 학습권으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한편,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인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채 친구 등 비공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과 비교해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 현상이 심화[22]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해준다.

③ 합숙 실태

<표 Ⅲ-6> 성별·학교급별 연간 합숙훈련 횟수 및 합숙일

구 분		합숙횟수	표준편차	합숙일	표준편차
여학생	중학생	3.835	4.4248	21.956	42.1615
	고등학생	3.782	4.0183	29.978	48.9059
	합계	3.801	4.1653	27.147	46.7286
남학생	중학생	2.462	2.5874	14.550	17.1323
	고등학생	4.217	6.7023	24.648	31.2456
	합계	3.614	5.6959	20.948	27.3621
합계	중학생	3.275	3.8396	17.523	29.9715
	고등학생	3.968	5.3321	26.863	39.5950
	합계	3.723	4.8654	23.492	36.6724

<표 Ⅲ-6>은 연간 합숙횟수 및 합숙일을 나타낸다. 합숙폐지 논의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합을 위한 합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지에서 가장 많은 편차를 나타냈으며 가장 신뢰도가 낮은 항목이 바로 합숙횟수와 합숙일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는 기숙사나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합을 위한 합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문항3. 여러분은 1년 동안 대략 몇 번 정도 시합을 위해서 합숙 하나요"와 "문항4. 그렇다면 1년 동안 며칠 정도 시합을 위해서 합숙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매일', '365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결측치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숙횟수 및 합숙일은 학교급별 차이를 보였는데, 합숙횟수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합숙일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Ⅲ-7>은 학생선수들의 성별·학교급별 숙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2) 안민석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실태를 비판하며 조사대상자 중 중학교의 학년별 석차 비율 하위 80% 미만의 학생선수 비율이 76%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7.8%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Ⅲ-7> 성별 · 학교급별 숙소

단위: 명(%)

구 분		가족과 함께	친척집	기숙사	자취나 하숙	합숙소	기타	전 체
여학생	중학생	87	2	50	0	54	3	196
	고등학생	68	1	212	4	56	0	341
	전체	155 (28.9)	3 (0.6)	262 (48.8)	4 (0.7)	110 (20.5)	3 (0.6)	537 (100.0)
남학생	중학생	121	2	43	3	60	0	229
	고등학생	84	0	220	4	44	0	352
	전체	205 (35.3)	2 (0.3)	263 (45.3)	7 (1.2)	104 (17.9)	0 (0.0)	581 (100.0)
전 체		360 (32.2)	5 (0.4)	525 (47.0)	11 (1.0)	214 (19.1)	3 (0.3)	1,118 (100.0)

본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체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반영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숙소의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나. 폭력 실태 및 대처

다음으로는 폭력의 경험이나 빈도, 발생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등 폭력 피해의 실태와 폭력 피해에 대한 태도, 대처 방식을 살펴본다.

① 폭력 실태: 경험, 빈도, 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폭력 실태 분석은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체벌이 소위 운동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물리적 강제로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훈련과 관련된 폭력과 훈련과 관련 없는 폭력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폭력의 빈도,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 행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전반적인 실태(8-1)와 체벌을 이

유로 한 기합, 욕설, 구타, 옷 벗김 등과 관련한 폭력 실태(8-2, 8-3, 8-4, 8-5)를 질문하였다.

다음의 <표 Ⅲ-8>은 유형별 폭력 경험 빈도이다.

<표 Ⅲ-8> 폭력 경험 유무

단위: 명(%)

폭력 유형	빈 도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500 (44.4)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725 (64.3)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670 (59.1)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558 (49.3)
8-5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79 (7.0)
전 체	898 (78.8)

* 폭력 경험이 전혀 없다('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즉 전체 응답자 1,139명 중 8-1항부터 8-5항까지 폭력을 한 가지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총 898명이다. 예를 들어 8-1과 8-2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에서는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계산되었다.

위의 <표 Ⅲ-8>에 의하면 어떤 형태든 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전체 조사대상자 1,139명중 898명으로 78.8%로 나타난다. 유형별로는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64.3%)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59.1%),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49.3%)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생선수들이 훈련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구타나 욕설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8-5와 8-6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폭력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Ⅲ-9>부터 <표 Ⅲ-12>는 각 문항별 폭력 실태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Ⅲ-9>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52(27.1)	177(51.8)	229(42.9)
남학생	86(37.9)	170(48.9)	256(44.5)
전 체	138(32.9)	347(50.3)	485(43.7)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9>의 8-1 폭력 경험자 수(485명)가 <표 Ⅲ-8>의 8-1 경험자 수(500명)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Ⅲ-9>의 경우 성별 및 학령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이나 학교급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Ⅲ-10>부터 <표 Ⅲ-12>까지의 전체 경험자 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표 Ⅲ-8>과 차이를 보인다.

<표 Ⅲ-9>에서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43.7%이며 여자 고등학생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중학생의 피해 경험이 32.9%인 반면 고등학생은 50.3%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된 피해 경험의 반영이거나, 고학년일수록 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0>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13(58.2)	244(71.8)	357(66.9)
남학생	117(51.5)	237(67.7)	354(61.4)
전 체	239(56.8)	481(69.7)	711(64.0)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10>에서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학생(56.8%)보다 고등학생(69.7)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훈련과 관련

해서 기합이나 얼차려 등을 받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며, 이는 훈련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체벌이 가해지고 있는 체육계의 관행을 드러내준다.

<표 Ⅲ-11>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05(53.8)	235(68.9)	340(63.4)
남학생	116(50.9)	201(57.1)	317(54.7)
전 체	221(52.2)	436(62.9)	657(58.9)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11>에서, 훈련과 관련한 언어적 폭력의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58.9%로 나타난다. 기합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주된 폭력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92(47.4)	171(50.4)	263(49.3)
남학생	106(46.1)	176(50.1)	282(48.5)
전 체	198(46.7)	347(50.3)	545(48.9)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12>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맞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48.9%이며, 여학생과 남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표 Ⅲ-13>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없다	한 학기에 1-2번	한 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4번	매일	전 체
여학생	중학생	140 (72.9)	13 (6.8)	5 (2.6)	14 (7.3)	17 (8.9)	3 (1.6)	192 (100.0)
	고등학생	165 (48.2)	43 (12.6)	30 (8.8)	54 (15.8)	35 (10.2)	15 (4.4)	342 (100.0)
	전체	305 (57.1)	56 (10.5)	35 (6.6)	68 (12.7)	52 (9.7)	18 (3.4)	534 (100.0)
남학생	중학생	141 (62.1)	23 (10.1)	8 (3.5)	26 (11.5)	12 (5.3)	16 (7.5)	227 (100.0)
	고등학생	178 (51.1)	43 (12.4)	45 (12.9)	42 (12.1)	19 (5.5)	21 (6.0)	348 (100.0)
	전체	319 (55.5)	66 (11.5)	53 (9.2)	68 (11.8)	31 (5.4)	38 (6.6)	575 (100.0)
전 체		624 (56.3)	122 (11.0)	88 (7.9)	136 (12.3)	83 (7.5)	56 (5.0)	1,109 (100.0)

<표 Ⅲ-13>부터 <표 Ⅲ-18>은 폭력 유형별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13>에서 약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며, 매일 경험하는 학생들도 5%이다. 그리고 <표 Ⅲ-9>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표 Ⅲ-13>에서 폭력의 빈도를 보면 "매일"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는다는 학생은 남자 중학생이 7.5%로 가장 많았다.

<표 Ⅲ-14>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없다	한 학기에 1-2번	한 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4번	매일	전 체
여학생	중학생	81 (41.8)	30 (15.5)	36 (18.6)	23 (11.9)	20 (10.3)	4 (2.1)	194 (100.0)
	고등학생	96 (28.2)	73 (21.5)	67 (19.7)	63 (18.5)	29 (8.5)	12 (3.5)	340 (100.0)
	전체	177 (33.1)	103 (19.3)	103 (19.3)	86 (16.1)	49 (9.2)	16 (3.0)	534 (100.0)
남학생	중학생	110 (48.5)	40 (17.6)	42 (18.5)	12 (5.3)	20 (8.8)	3 (1.3)	227 (100.0)
	고등학생	113 (32.3)	76 (21.7)	77 (22.0)	52 (14.9)	23 (6.6)	9 (2.6)	350 (100.0)
	전체	223 (38.6)	116 (20.1)	119 (20.6)	64 (11.1)	43 (7.5)	12 (2.1)	577 (100.0)
전 체		400 (36.0)	219 (19.7)	222 (20.0)	150 (13.5)	92 (8.3)	28 (2.5)	1,111 (100.0)

<표 Ⅲ-14>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기합을 받은 학생선수는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많으며, 매일 기합을 받는 학생도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합을 받는 빈도는 한 학기에 1-2번이나 한 달에 1-2번이 39.7%로 가장 많다.

<표 Ⅲ-15>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없다	한 학기에 1-2번	한 달에 1-2번	1주일에 1-2변	1주일에 3-4번	매일	전 체
여학생	중학생	90 (46.2)	25 (12.8)	18 (9.2)	25 (12.8)	28 (14.4)	9 (4.6)	195 (100.0)
	고등학생	106 (31.1)	59 (17.3)	53 (15.5)	67 (19.6)	30 (8.8)	26 (7.6)	341 (100.0)
	전체	196 (36.6)	84 (15.7)	71 (13.2)	92 (17.2)	58 (10.8)	35 (6.5)	536 (100.0)
남학생	중학생	112 (49.1)	25 (11.0)	46 (15.8)	27 (11.8)	17 (7.5)	11 (4.8)	228 (100.0)
	고등학생	151 (42.9)	56 (15.9)	52 (14.8)	46 (13.1)	28 (8.0)	19 (5.4)	352 (100.0)
	전체	263 (45.3)	81 (14.0)	88 (15.2)	73 (12.6)	45 (7.8)	30 (5.2)	580 (100.0)
전 체		459 (41.1)	165 (14.8)	159 (14.2)	165 (14.8)	103 (9.2)	65 (5.8)	1,116 (100.0)

<표 Ⅲ-15>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듣는 학생선수는 여자 고등학생이 68.9%로 가장 많으며, “매일” 경험하는 학생은 전체의 5.8%로 이 가운데 여자 고등학생이 7.6%로 가장 많았다.

<표 Ⅲ-16>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없다	한 학기에 1-2번	한 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4번	매일	전 체
여학생	중학생	102 (52.6)	30 (15.5)	33 (17.0)	12 (6.2)	16 (8.2)	1 (0.5)	194 (100.0)
	고등학생	168 (49.6)	52 (15.3)	52 (15.3)	38 (11.2)	22 (6.5)	7 (2.1)	339 (100.0)
	전체	270 (50.7)	82 (15.4)	85 (15.9)	50 (9.4)	38 (7.1)	8 (1.5)	533 (100.0)
남학생	중학생	124 (53.9)	26 (11.3)	45 (19.6)	23 (10.0)	7 (3.0)	5 (2.2)	230 (100.0)
	고등학생	175 (49.9)	79 (22.5)	44 (12.5)	35 (10.0)	15 (4.3)	3 (0.9)	351 (100.0)
	전체	299 (51.5)	105 (18.1)	89 (15.3)	58 (10.0)	22 (3.8)	8 (1.4)	581 (100.0)
전 체		569 (51.1)	187 (16.8)	174 (15.6)	108 (9.7)	60 (5.4)	16 (1.4)	1,114 (100.0)

<표 Ⅲ-16>에서 훈련과 관련하여 맞은 적이 있는 학생선수는 48.9%로 나타난다. 체벌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 학기에 1-2번이 16.8%, 한 달에 1-2번이 15.6%이며, 일주일에 1-2번이 9.7%, 일주일에 3-4번이 5.4%로 나타난다.

<표 Ⅲ-17>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코치	감독	친구	선후배	기타	유효수
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23 (41.8)	6 (10.9)	2 (3.6)	29 (52.7)	0 (0.0)	55
		고등학생	62 (35.0)	19 (10.7)	3 (1.7)	114 (64.4)	3 (1.7)	177
	남학생	중학생	29 (32.6)	12 (13.5)	7 (7.9)	52 (58.4)	4 (4.5)	89
		고등학생	63 (36.8)	23 (13.5)	7 (4.1)	103 (60.2)	5 (2.9)	171
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99 (87.6)	14 (12.4)	0 (0.0)	21 (18.6)	0 (0.0)	113
		고등학생	162 (66.1)	38 (15.5)	0 (0.0)	86 (35.1)	0 (0.0)	245
	남학생	중학생	92 (79.3)	18 (15.5)	0 (0.0)	25 (21.6)	2 (1.7)	116
		고등학생	153 (64.6)	40 (16.9)	1 (0.4)	89 (37.6)	2 (0.8)	237
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78 (75.0)	30 (28.8)	0 (0.0)	23 (22.1)	2 (1.9)	104
		고등학생	146 (62.7)	51 (21.9)	4 (1.7)	87 (37.3)	3 (1.3)	233
	남학생	중학생	81 (69.8)	22 (19.0)	3 (2.6)	30 (25.9)	1 (0.9)	116
		고등학생	122 (61.6)	46 (23.2)	2 (1.0)	70 (35.4)	4 (2.0)	198
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82 (88.2)	11 (11.8)	0 (0.0)	14 (15.1)	0 (0.0)	93
		고등학생	140 (82.4)	28 (16.5)	0 (0.0)	15 (8.8)	2 (1.2)	170
	남학생	중학생	80 (76.2)	19 (18.1)	0 (0.0)	20 (19.0)	3 (2.9)	105
		고등학생	111 (63.8)	30 (17.2)	0 (0.0)	60 (34.5)	1 (0.6)	174
8-5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7 (87.5)	0 (0.0)	0 (0.0)	2 (25.0)	0 (0.0)	8
		고등학생	9 (52.9)	1 (5.9)	0 (0.0)	10 (58.8)	0 (0.0)	17
	남학생	중학생	5 (29.4)	2 (11.8)	0 (0.0)	10 (58.8)	0 (0.0)	17
		고등학생	16 (47.1)	7 (20.6)	0 (0.0)	16 (47.1)	1 (2.9)	34

* 복수응답 허용

<표 Ⅲ-17>은 응답자와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된 폭력 행위자는 코치와 선후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선후배 간에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훈련을 빙자한) 체벌이나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특히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 선배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운동현장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선후배 간의 폭력이 심각하며, 앞으로 운동부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와 '군기 잡기' 등 비공식적인 형태의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 폭력의 주 행위자가 코치나 감독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8-5)"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선후배가 코치나 감독보다 더 주요한 폭력 행위자로 나타난다. 이 문항은 폭력이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의 형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감독 등 지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선후배가 더 주요한 폭력 행위자임을 보여준다.

<표 III-18> 폭력 발생 장소

단위: 명(%)

구 분			합숙 장소	시합 장소	훈련 장소	이동 차량	락커룸	코치실	뒷풀이 장소	한적한 곳	기타	유효 수
8-1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8 (34.0)	3 (5.7)	33 (62.3)	0 (0.0)	6 (11.3)	0 (0.0)	0 (0.0)	2 (3.8)	7 (13.2)	53
		고등학생	103 (58.5)	13 (7.4)	63 (35.8)	3 (1.7)	5 (2.8)	3 (1.7)	3 (1.7)	2 (1.1)	28 (15.9)	176
	남학생	중학생	34 (39.5)	4 (4.7)	37 (43.0)	3 (3.5)	4 (4.7)	0 (0.0)	4 (4.7)	2 (2.3)	14 (16.3)	86
		고등학생	70 (41.7)	13 (7.7)	63 (37.5)	6 (3.6)	17 (10.1)	4 (2.4)	4 (2.4)	3 (1.8)	30 (17.9)	168
8-2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0 (8.9)	7 (6.3)	107 (95.5)	0 (0.0)	6 (5.4)	1 (0.9)	1 (0.9)	3 (2.7)	3 (2.7)	112
		고등학생	53 (22.5)	12 (5.1)	184 (78.0)	1 (0.4)	6 (2.5)	3 (1.3)	3 (1.3)	1 (0.4)	13 (5.5)	236
	남학생	중학생	18 (15.5)	5 (4.3)	94 (81.0)	1 (0.9)	1 (0.9)	0 (0.0)	1 (0.9)	1 (0.9)	4 (3.4)	116
		고등학생	39 (17.0)	7 (3.0)	179 (77.8)	2 (0.9)	20 (8.7)	0 (0.0)	3 (1.3)	6 (2.6)	15 (6.5)	230
8-3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6 (15.4)	7 (6.7)	99 (95.2)	7 (6.7)	8 (7.7)	2 (1.9)	2 (1.9)	3 (2.9)	4 (2.8)	104
		고등학생	41 (18.1)	14 (6.2)	190 (84.1)	3 (1.3)	4 (1.8)	3 (1.3)	2 (0.9)	0 (0.0)	12 (5.3)	226
	남학생	중학생	19 (17.1)	6 (5.4)	95 (85.6)	2 (1.8)	3 (2.7)	0 (0.0)	1 (0.9)	0 (0.0)	2 (1.8)	111
		고등학생	30 (15.2)	14 (7.1)	161 (81.7)	4 (2.0)	17 (8.6)	3 (1.5)	1 (0.5)	2 (1.0)	16 (8.1)	197
8-4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6 (6.6)	1 (1.1)	87 (95.6)	0 (0.0)	4 (4.4)	0 (0.0)	1 (1.1)	1 (1.1)	3 (3.3)	91
		고등학생	16 (9.8)	6 (3.7)	147 (90.2)	3 (1.8)	3 (1.8)	2 (1.2)	1 (0.6)	0 (0.0)	4 (2.5)	163
	남학생	중학생	21 (20.6)	3 (2.9)	86 (84.3)	1 (1.0)	2 (2.0)	0 (0.0)	1 (1.0)	1 (1.0)	2 (2.0)	102
		고등학생	25 (15.0)	5 (3.0)	133 (79.6)	0 (0.0)	20 (12.0)	1 (0.6)	1 (0.6)	4 (2.4)	12 (7.2)	167
8-5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7 (87.5)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8
		고등학생	4 (23.5)	4 (23.5)	9 (52.9)	1 (5.9)	2 (11.8)	1 (5.9)	1 (5.9)	0 (0.0)	4 (23.5)	17
	남학생	중학생	9 (52.9)	3 (17.6)	10 (58.8)	1 (5.9)	1 (5.9)	0 (0.0)	1 (5.9)	1 (5.9)	2 (11.8)	17
		고등학생	6 (18.2)	0 (0.0)	21 (63.6)	0 (0.0)	5 (15.2)	0 (0.0)	1 (3.0)	2 (6.1)	4 (12.1)	33

* 복수응답 허용

<표 Ⅲ-18>은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다.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훈련장소이다. 그러나 문항 8-1은 훈련과 관련이 없는 폭력의 경우에도 그 발생장소가 주로 합숙장소나 훈련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학생선수들이 운동 중에 체벌의 형태나 훈련과 상관이 없는 폭력 둘 다를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②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와 대처 방식

<표 Ⅲ-19>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별 느낌이 없다	7 (3.6)	5 (1.5)	12 (2.2)	29 (12.7)	28 (8.1)	57 (9.9)	69 (6.2)
② 우울하다	21 (10.7)	37 (10.9)	58 (10.8)	27 (11.8)	23 (6.7)	50 (8.7)	108 (9.7)
③ 화가 난다	80 (40.8)	158 (46.5)	238 (44.4)	89 (38.9)	175 (50.9)	264 (46.1)	502 (45.3)
④ 무섭다	30 (15.3)	35 (10.3)	65 (12.1)	18 (7.9)	15 (4.4)	33 (5.8)	98 (8.8)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135 (68.9)	221 (65.0)	356 (66.4)	100 (43.7)	170 (49.4)	270 (47.1)	626 (56.4)
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	39 (19.9)	87 (25.6)	126 (23.5)	26 (11.4)	63 (18.3)	89 (15.5)	215 (19.4)
⑦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는다	13 (6.6)	22 (6.5)	35 (6.5)	33 (14.4)	32 (9.3)	65 (11.3)	100 (9.0)
⑧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30 (15.3)	46 (13.5)	76 (14.2)	73 (31.9)	74 (21.5)	147 (25.7)	223 (20.1)
⑨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	31 (15.8)	53 (15.6)	84 (15.7)	47 (20.5)	73 (21.2)	120 (20.9)	204 (18.4)
⑩ 기타	4 (2.0)	10 (2.9)	14 (2.6)	10 (4.4)	19 (5.5)	29 (5.1)	43 (3.9)
유효케이스 수	196	340	536	229	344	573	1,109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1>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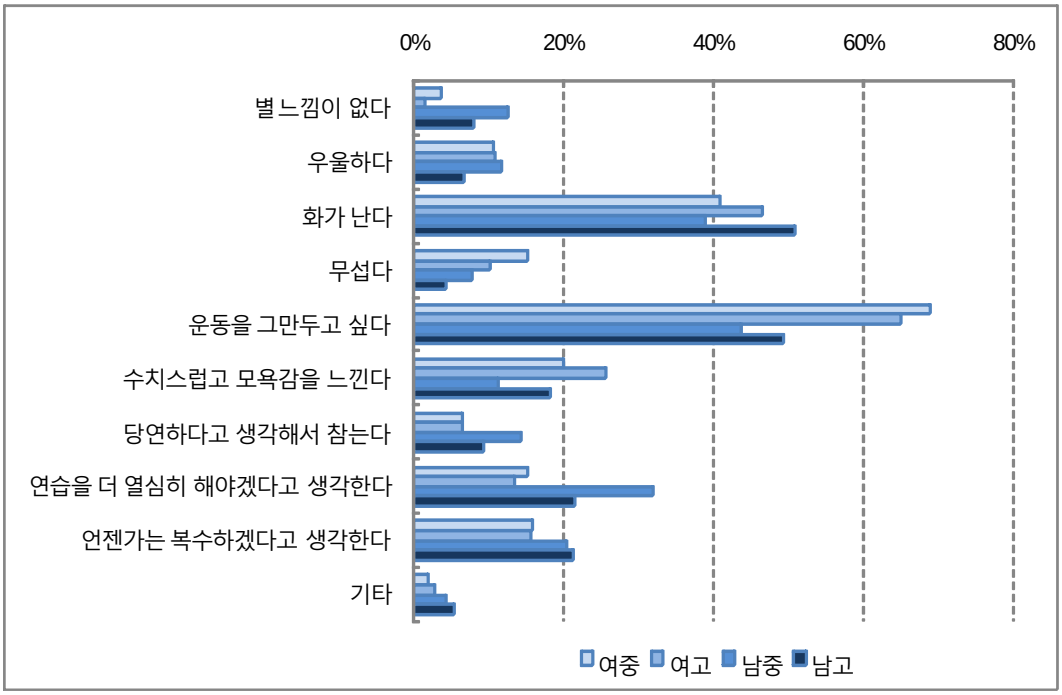

<표 Ⅲ-19>와 <그림 Ⅲ-1>은 폭력 행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6.4%)"와 "화가 난다(45.3%)"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66.4%)",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23.5%)", "무섭다(12.1%)"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남학생의 경우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25.7%)",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20.9%)",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는다(11.3%)", "별 느낌이 없다(9.9%)"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으며, 남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낮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여 운동부 내 폭력문화의 재생산이 우려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성별 차이에 비하면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

<표 III-20> 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적 대처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	81 (41.3)	126 (37.1)	207 (38.6)	101 (44.3)	151 (44.2)	252 (44.2)	459 (41.5)
②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18 (9.2)	54 (15.9)	72 (13.4)	57 (25.0)	67 (19.6)	124 (21.8)	196 (17.7)
③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83 (42.3)	110 (32.4)	193 (36.0)	55 (24.1)	119 (34.8)	174 (30.5)	367 (33.2)
④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18 (9.2)	44 (12.9)	62 (11.6)	39 (17.1)	55 (16.1)	94 (16.5)	156 (14.1)
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51 (26.0)	117 (34.4)	168 (31.3)	68 (29.8)	92 (26.9)	160 (28.1)	328 (29.7)
⑥ 그냥 넘어간다	29 (14.8)	61 (17.9)	90 (16.8)	63 (27.6)	89 (26.0)	152 (26.7)	242 (21.9)
⑦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83 (42.3)	139 (40.9)	222 (31.4)	43 (18.9)	56 (16.4)	99 (17.4)	321 (29.0)
⑧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8 (4.1)	6 (1.8)	14 (2.6)	11 (4.8)	9 (2.6)	20 (3.5)	34 (3.1)
⑨ 기타	12 (6.1)	13 (3.8)	25 (4.7)	12 (5.3)	24 (7.0)	36 (6.3)	61 (5.5)
유효케이스 수	196	340	536	228	342	570	1,106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2> 폭력 행위에 대한 개인적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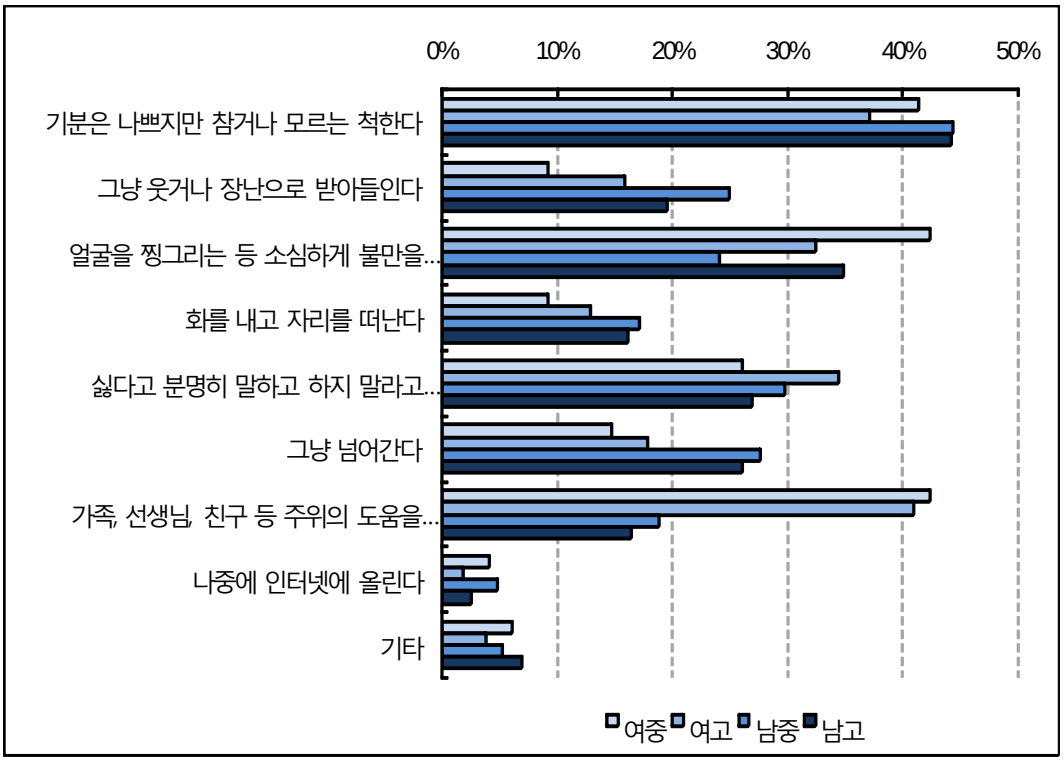

<표 Ⅲ-20>은 폭력에 대한 개인적 대처 방법이다.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41.5%)”는 응답이 대체로 가장 많지만, 대처 방법 역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31.4%)”,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36.0%)”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44.2%)”, “그냥 넘어간다(26.7%)”,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21.8%)” 등의 응답이 여학생보다 많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1> 성별 · 학교급별 대처의 정도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소극적 대처(①+②+③+⑥)	211	351	562	276	426	702	1,264
적극적 대처(④+⑤+⑦+⑧)	160	306	466	161	212	373	839

* 복수응답 허용

<표 Ⅲ-21>은 폭력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얼굴을 찌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그냥 넘어간다”(①+②+③+⑥)를 ‘소극적 대처’로, “화를 내거나 싫다고 분명히 말한다”, “주위의 도움을 구하거나 인터넷에 올린다”(④+⑤+⑦+⑧)를 ‘적극적 대처’로 나누어보았다.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남학생이 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폭력을 통해 나타나는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남성들의 순응적 태도를 반영한다. 물론 학생선수들은 코치나 선배 등과의 권력관계에서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지만, 특히 남학생들은 모르는 척 하는 등 폭력에 대한 회피를 통해 권력관계에 순응하고 폭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처 방식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폭력 경험이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더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상처나 학습된 무기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성폭력 실태 및 대처

다음에서는 성폭력 경험 및 빈도, 발생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등 피해 실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선수들의 대처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살펴본다.

① 성폭력 실태: 경험, 빈도, 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장, 시합장, 학습 공간, 기숙사, 합숙소 등의 공적인 장소부터 사적인 장소에서의 '의사에 반한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적 언동' 등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성희롱부터 성추행을 모두 포함하며, 맥락에 따라 이들 개념을 혼재하거나 병렬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성폭력 개념과 범위 하에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옴' 등의 행위부터 강간까지 11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유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문항들에서 '노크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오는 행위(11-1)', '내 몸을 쳐다보는 행위(11-2)', '무릎 위에 앉거나 몸을 기대는 행위(11-7)'의 세 유형은 성폭력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황적 맥락에 따라 친밀함의 표현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미흡한 예의의 문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일상을 반영하는 성폭력 관련 경험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에 포함시켰다.

단, 이들 행위가 실제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성폭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성(폭력) 경험"이라는 범주[24]로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한편(<표 III-22>), 이 세 항목을 제외 하고 성폭력 개념에 근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항목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III-23>).

23) 사실 이러한 성폭력 개념과 범위의 문제는 성폭력을 둘러싼 주요 논쟁지점의 하나이다. 특히 단체생활 속에서 몸의 노출이나 접촉이 일상적인 스포츠계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연구에서는 Ⅱ장의 주요 개념에서 제시한 성폭력에 대한 조작적 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하되, 스포츠 문화와 관련해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유보한다.

24) 여기서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어떤 행위들이 상황에 따라 성폭력으로 해석,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성적 행위 혹은 성폭력이 아닌 행위 등으로 해석되거나 판단될 수 있다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임을 밝혀둔다.

<표 III-22> 성(폭력) 경험

단위: 명(%)

성(폭력) 경험 실태	경험 있음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500(43.9)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248(21.8)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666(58.5)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109 (9.6)
11-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121(10.6)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128(11.2)
11-7 나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214(18.8)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223(19.6)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72 (6.3)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9 (1.7)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12 (1.1)
전 체	818(71.8)

* '1=전혀 없다'를 제외한 응답자 수. 즉 전체 응답자 1,139명 중 11-1항부터 11-11까지 성폭력을 한 가지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1,139명 중 818명이다. 예를 들어 문항 11-1과 11-2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에서는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계산되었다.

위의 표 <III-22>에서 어떠한 종류이건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1,139명 중 818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위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보다 객관적 지표를 위해 명백히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형만을 대상으로(11-1, 11-2, 11-7 항목 제외) 성폭력 피해를 분석하였다. 이를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강제추행, 성관계 요구, 강간으로 재분류해 보면 성폭력 피해율은 전체 1,139명중 725명, 즉 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3>).

<표 III-23> 성별에 따른 유형별 성폭력 피해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언어적 성희롱(11-3)	347(64.6)	309(52.9)	656(58.5)
시각적 성희롱(11-4, 11-5)	70(12.8)	121(20.4)	191(16.8)
강제추행(11-6, 11-8, 11-9)	149(27.3)	140(23.6)	289(25.4)
강제적 성관계 요구*(11-10)	7 (1.3)	10 (1.7)	17 (1.5)
강간(11-11)	5 (0.9)	6 (1.0)	11 (1.0)
전 체	371(68.1)	354(59.8)	725(63.8)

* '성관계 요구'라는 문항을 언어적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항목에 포함시키기보다 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인 10대에게 강제적 성관계 요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림 III-3> 성별에 따른 유형별 성폭력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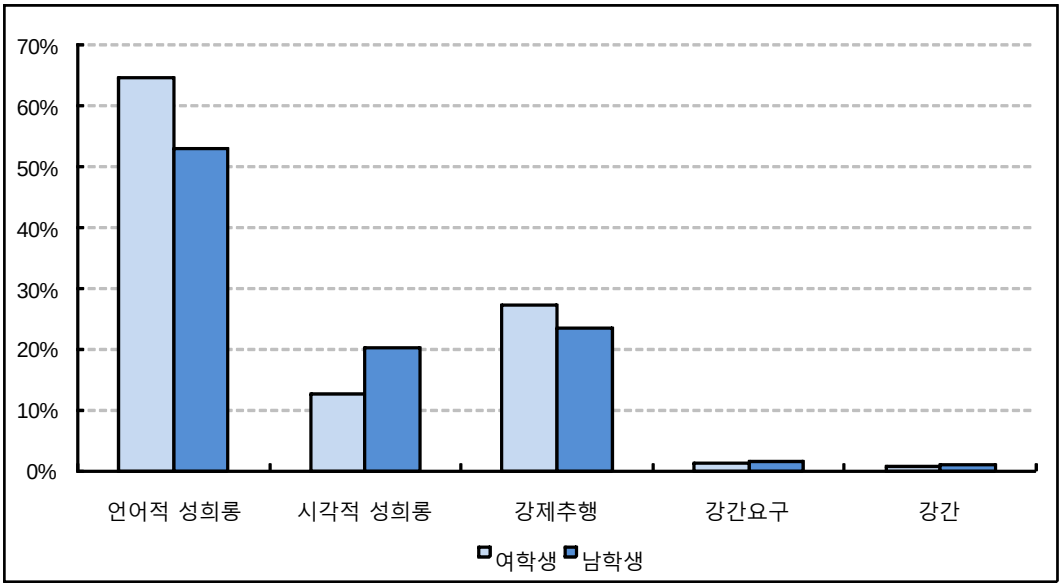

위의 <표 III-23>과 <그림 III-3>은 성별 및 유형에 따라 살펴본 성폭력 피해 실태를 보여준다. 우선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전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한다. 강제추행으로는 '뽀뽀 등의 강요나 강제 키스(11-6)'와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짐(11-8)' 항목이 분류되었다. 친밀한 사이에서

뽀뽀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허락 없이 뽀뽀하거나 몸을 만지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관계 요구나 강간의 경우 '부녀자'가 아닌 남성에 대한 강간은 법적인 강간의 의미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법적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논거에 기반 해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강제적 성관계 요구'는 1.5%(17명), '강간'의 경우 1.0%(11명)로 나타나는데, 비율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 응답자 수로 본다면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결과이다.

다음의 <표 Ⅲ-24>부터 <표 Ⅲ-34>는 성별・학년별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별로 성폭력 경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Ⅲ-24>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72(36.7)	164(48.0)	236(43.9)
남학생	82(35.7)	172(48.9)	254(43.6)
전 체	154(36.2)	336(48.4)	490(43.8)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24>의 11-1문항 성폭력 경험자 수(490명)가 <표 Ⅲ-22>의 11-1 경험자 수(500명)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Ⅲ-24>의 경우 성별 및 학령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이나 학교급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경험자 수이기 때문이다. <표 Ⅲ-25>부터 <표 Ⅲ-34>까지의 경험자 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표 Ⅲ-22>와 차이를 보인다.

<표 Ⅲ-24>의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43.8%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고등학생(48.4%)이 중학생(36.2%)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누군가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오는 행위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성폭력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항은 단체생활에서의 예의에 관한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례로 설문조사를 할 당시 몇몇 학생들이 "내 방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단체생활이 일상화된 학생선수들에게 기존의 성폭력 기준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다.[25] 그러나 여자선수들의 방을 남자코치가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다든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방문을 갑자기 열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든가 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표 Ⅲ-25>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40(20.5)	98(28.7)	138(25.7)
남학생	35(15.2)	67(19.0)	102(17.5)
전 체	75(17.6)	165(23.8)	240(21.4)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25>는 시각적 성폭력의 한 유형일 수 있다. 누군가 내 몸을 훑어보거나 쳐다보는 경험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자 중 21.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17.5%)보다 여학생(25.7%)에게서, 중학생(17.6%)보다 고등학생(23.8%)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학생선수들 같은 경우 방을 함께 사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 특별한 의식 없이 서로의 몸을 쳐다볼 수 있다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몸을 계속 응시하거나 쳐다봄으로 인해 내가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표 Ⅲ-26>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03(52.8)	244(71.3)	347(64.6)
남학생	116(50.2)	193(54.7)	309(52.9)
전 체	219(51.4)	437(62.9)	656(58.5)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25) 실제로 이 항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37.3% 정도에 불과하다(<표 III-54> 성폭력에 대한 인식 참고).

<표 Ⅲ-26>은 언어적 성폭력의 한 유형이다. 몸이나 외모에 대한 농담이나 놀림 등의 피해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58.5%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성폭력 유형이기도 하다. 여학생(64.6%)이 남학생(52.9%)보다, 고등학생(62.9%)이 중학생(51.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성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대방이나 타인의 몸 또는 외모를 소재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등의 행위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언어적 성희롱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들 10대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27>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9(4.6)	28 (8.2)	37 (6.9)
남학생	20(8.7)	47(13.4)	67(11.5)
전 체	29(6.8)	75(10.8)	104 (9.3)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27>은 시각적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 중 9.3%가 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남학생(11.5%)이 여학생(6.9%)보다, 고등학생(10.8%)이 중학생(6.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숙생활을 하며 락커룸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생선수들의 문화에서 타인이 있는 상황에서 옷을 벗거나 타인의 몸을 보게 되는 행위는 빈번할 수 있지만, 위의 항복처럼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 준다”는 항목은 분명하게 행위자의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응답율이 9.3%에 불과하다는 것은 응답자 역시 이 문항에 내포된 성폭력의 의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금

기시되어왔으며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상황과 주체에 따라 권력적 행위도 될 수 있고 금기가 되기도 한다. 고의로 몸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은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된다.

<표 III-28> 11-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4(7.1)	27 (7.9)	41 (2.6)
남학생	20(8.7)	57(16.1)	77(13.2)
전 체	34(8.0)	84(12.1)	118(10.5)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28>은 공공장소에서 포르노를 보거나 성적 그림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의 10.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고등학생(12.1%)이 중학생(8.0%)보다, 남학생(13.2%)이 여학생(2.6%)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포르노 등을 함께 보는 것 자체를 성폭력/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판단은 맥락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공간과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포르노를 보거나 야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법적 분류에서도 성희롱 개념에 포함된다.

<표 III-29>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2 (6.1)	45(13.2)	57 (2.2)
남학생	33(14.3)	33 (9.4)	66(11.3)
전 체	45(10.5)	78(11.3)	123(11.0)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29>는 신체적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전체의 1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학생/남학생, 중학생/고등학생 간의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에서 논의되겠지만, 뽀뽀나 키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지도자나 선후배가 학생선수에게, 혹은 동료들 간에 '장난'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처럼 포장되어 나타나지만, 행위의 속성상 명백하게 성폭력의 일환이다.

<표 Ⅲ-30> 11-7 "나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30(15.4)	78(22.9)	108(20.1)
남학생	45(19.5)	55(15.6)	100(17.1)
전 체	75(17.6)	133(19.2)	208(18.6)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30>에서 누군가 "나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1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무릎 위에 앉히거나 몸을 기대는 등의 행위는 훈련 중 휴식이나 여간 시간 등에 동료나 선후배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발생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된다. 즉 맥락이나 관계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친밀성을 나타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학생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이러한 행위를 더 많이 하지만 남학생은 중학생 때 여학생보다 이러한 행위를 더 많이 하다가 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31>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33(16.9)	84(24.6)	117(21.8)
남학생	36(15.6)	67(19.0)	103(17.6)
전 체	69(16.2)	151(21.7)	220(19.6)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31>은 신체적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조사대상자의 19.6%가 피해를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21.8%)이 남학생(17.6%)보다 더 많고, 고등학생(21.7%)이 중학생(16.2%)보다 더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이나 운동 중에 몸에 대한 접촉은 매우 일상적이지만, 단순히 운동 중 발생한 몸의 접촉과 "누군가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졌다"는 상황 간에는 분명히 맥락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접촉은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성폭력 기준 적용 시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예방 매뉴얼 제작을 고려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성폭력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32>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7 (3.6)	15(4.4)	22(4.1)
남학생	23(10.0)	24(6.8)	47(8.0)
전 체	30 (7.0)	39(5.6)	69(6.1)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32>에서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는 상황은 명백한 신체적 성폭력으로 조사대상자 중 6.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학생(8.0%)이 여학생(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3(1.5)	4(1.2)	7(1.3)
남학생	6(2.6)	4(1.1)	10(1.7)
전 체	9(2.1)	8(1.2)	17(1.5)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34>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여학생	1(0.5)	4(1.2)	5(0.9)
남학생	5(2.2)	1(0.3)	6(1.0)
전 체	6(1.4)	5(0.7)	11(1.0)

* ‘1=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 수.

<표 Ⅲ-33>과 <표 Ⅲ-34>는 각각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받거나(1.5%)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1.0%)을 나타낸다.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집단별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1.0%의 학생선수들이 강제적인 성관계, 즉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다른 문항과 달리 두 문항 모두 남학생들에게서 응답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할 과제로 남는다.

<표 Ⅲ-35> 성폭력 경험 빈도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중 고		전체
	중	고	전체	중	고	전체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1.76	2.15	2.01	1.89	2.39	2.19	1.83	2.27	2.10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1.32	1.48	1.42	1.48	1.60	1.55	1.39	1.54	1.48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2.30	2.33	2.32	2.34	2.83	2.65	2.32	2.58	2.48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1.22	1.32	1.28	1.07	1.20	1.15	1.15	1.26	1.22
11-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1.14	1.39	1.29	1.17	1.18	1.18	1.15	1.28	1.23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1.34	1.27	1.30	1.15	1.34	1.27	1.25	1.31	1.29
11-7 나를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1.40	1.39	1.39	1.34	1.55	1.47	1.38	1.47	1.43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1.31	1.45	1.39	1.32	1.61	1.50	1.31	1.53	1.45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1.19	1.17	1.18	1.05	1.07	1.07	1.13	1.12	1.13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05	1.03	1.04	1.04	1.04	1.04	1.05	1.03	1.04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1.04	1.01	1.02	1.02	1.02	1.02	1.03	1.02	1.02
전 체	1.38	1.47	1.44	1.34	1.51	1.45	1.36	1.49	1.44

* '1=전혀 없다'부터 '5=매우 많다'까지 5점 척도의 평균.

<표 Ⅲ-35>는 성폭력 경험 빈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을 성별・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노크 없이 들어옴'(11-1), '내 몸을 쳐다봄'(11-2), '몸이나 외모로 놀림'(11-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다. '고의로 몸을 보여줌'(11-4)은 여학생(1.28)이 남학생(1.15)보다, 고등학생(1.26)이 중학생(1.15)보다 높으며, '공공장소에서 포르노를 보는 행위 등'(11-5)은 고등학생(1.28)이 중학생(1.15)보다 높다. '강제키스'(11-6)나 '무릎에 앉히는 등 접촉'(11-7)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허락 없이 몸을 만짐'(11-8)은 고등학생(1.53)이 중학생(1.31)보다 높으며, '옷을 벗기려는 행동'(11-9)은 여학생(1.18)이 남학생(1.07)보다 높다. '강제적 성관계 요구'(11-10)와 '강간'(11-11)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체 평균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이것은 기숙, 합숙 등의 운동부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표 Ⅲ-24>부터 <표 Ⅲ-34>까지의 성폭력 경험과 <표 Ⅲ-35>의 성폭력 빈도가 집단별로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폭력 경험과 빈도 모두 높았으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는 종종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 빈도는 높지 않거나 또는 성폭력 발생에 대해 민감할 수 없거나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의 <표 Ⅲ-36>은 성폭력 경험과 발생 빈도를 집단별로 비교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성별 빈도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6> 성폭력 경험과 빈도의 차이

단위: %

구 분		경 험		빈 도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43.8	▪ 고등학생>중학생	▪ 남학생>여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21.4	▪ 여학생>남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 남학생>여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58.5	▪ 여학생>남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 남학생>여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9.3	▪ 남학생>여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 여학생>남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5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10.5	▪ 여학생>남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11.0	▪ 집단별 차이 없음	▪ 집단별 차이 없음
11-7	나를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18.6	▪ 집단별 차이 없음	▪ 집단별 차이 없음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19.6	▪ 여학생>남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 고등학생>중학생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6.1	▪ 남학생>여학생	▪ 여학생>남학생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5	▪ 집단별 차이 없음	▪ 집단별 차이 없음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1.0	▪ 집단별 차이 없음	▪ 집단별 차이 없음

<표 III-37> 성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코치	감독	친구	선후배	기타	유효수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2 (17.6)	11 (16.2)	25 (36.8)	30 (44.1)	8 (11.8)	68
		고등학생	35 (22.9)	13 (8.5)	69 (45.1)	68 (44.4)	11 (7.2)	153
	남학생	중학생	16 (20.3)	3 (3.8)	44 (55.7)	30 (38.0)	4 (5.1)	79
		고등학생	31 (18.6)	8 (4.8)	96 (57.5)	98 (58.7)	4 (2.4)	167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4 (36.8)	14 (36.8)	6 (15.8)	13 (34.2)	4 (10.5)	38
		고등학생	24 (27.9)	6 (7.0)	30 (34.9)	41 (47.7)	9 (10.5)	86
	남학생	중학생	4 (12.1)	3 (9.1)	17 (51.5)	10 (26.3)	4 (12.1)	33
		고등학생	6 (9.8)	4 (6.6)	35 (57.4)	35 (57.4)	5 (8.2)	61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34 (35.1)	17 (17.5)	31 (32.0)	41 (42.3)	3 (3.1)	97
		고등학생	65 (28.5)	24 (10.5)	110 (48.2)	133 (58.3)	5 (2.2)	228
	남학생	중학생	11 (10.3)	5 (4.7)	66 (61.7)	43 (40.2)	2 (1.9)	107
		고등학생	23 (12.9)	7 (3.9)	100 (56.2)	126 (70.8)	2 (1.1)	178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 (12.5)	0 (0.0)	3 (37.5)	5 (62.5)	1 (12.5)	8
		고등학생	2 (7.1)	0 (0.0)	5 (17.9)	20 (71.4)	3 (10.7)	28
	남학생	중학생	0 (0.0)	0 (0.0)	8 (38.1)	13 (61.9)	1 (4.8)	21
		고등학생	5 (11.1)	0 (0.0)	20 (44.4)	30 (66.7)	0 (0.0)	45

11-5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6 (46.2)	7 (53.8)	4 (30.8)	13
		고등학생	2 (9.5)	1 (4.8)	14 (66.7)	9 (42.9)	0 (0.0)	21
	남학생	중학생	0 (0.0)	0 (0.0)	9 (50.0)	9 (50.0)	1 (5.6)	18
		고등학생	0 (0.0)	0 (0.0)	40 (74.1)	28 (51.9)	0 (0.0)	54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3 (27.3)	3 (27.3)	1 (9.1)	0 (0.0)	5 (45.5)	11
		고등학생	14 (32.6)	6 (14.0)	7 (16.3)	15 (34.9)	4 (9.3)	43
	남학생	중학생	3 (9.1)	0 (0.0)	11 (33.3)	18 (54.5)	1 (3.0)	33
		고등학생	2 (6.3)	1 (3.1)	8 (25.0)	20 (62.5)	3 (9.4)	32
11-7 나를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3 (10.3)	6 (20.7)	12 (41.4)	13 (44.8)	1 (3.4)	29
		고등학생	15 (20.3)	3 (4.1)	30 (40.5)	32 (43.2)	6 (8.1)	74
	남학생	중학생	3 (6.7)	0 (0.0)	25 (55.6)	22 (48.9)	1 (2.2)	45
		고등학생	2 (4.0)	0 (0.0)	20 (40.0)	33 (66.0)	3 (6.0)	50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4 (12.9)	7 (22.6)	9 (29.0)	15 (48.4)	5 (16.1)	31
		고등학생	24 (29.3)	8 (9.8)	28 (34.1)	27 (32.9)	6 (7.3)	82
	남학생	중학생	2 (5.9)	0 (0.0)	21 (61.8)	15 (44.1)	1 (2.9)	34
		고등학생	5 (7.7)	2 (4.1)	34 (52.3)	44 (67.7)	2 (3.1)	65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1 (14.3)	0 (0.0)	5 (71.4)	1 (14.3)	7
		고등학생	2 (15.4)	2 (15.4)	3 (23.1)	10 (76.9)	0 (0.0)	13
	남학생	중학생	0 (0.0)	2 (8.7)	4 (17.4)	18 (78.3)	0 (0.0)	23
		고등학생	5 (23.8)	1 (4.8)	2 (9.5)	15 (71.4)	0 (0.0)	21

11-10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고등학생	0 (0.0)	0 (0.0)	3 (75.0)	1 (25.0)	0 (0.0)	4
	남학생	중학생	0 (0.0)	0 (0.0)	1 (14.3)	5 (71.4)	1 (14.3)	7
		고등학생	0 (0.0)	0 (0.0)	1 (20.0)	3 (60.0)	1 (20.0)	5
11-11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고등학생	0 (0.0)	0 (0.0)	1 (33.3)	2 (66.7)	0 (0.0)	3
	남학생	중학생	0 (0.0)	0 (0.0)	0 (0.0)	5 (83.3)	1 (16.7)	6
		고등학생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 복수응답 허용

<표 Ⅲ-37>은 응답자와 성폭력 행위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폭력의 주행위자가 코치나 감독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성폭력의 경우 행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친구, 선후배 등의 또래문화 안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관계 요구나 강간의 경우 주 관계는 선후배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강제적인 뽀뽀나 키스 경험은 코치, 감독이나 친구, 선후배의 비율이 유사하다. 코치나 감독이 친구 등의 또래보다 많은 항목은 여자 중학생의 시각적 성희롱뿐이다.

이처럼 성폭력이 선후배나 친구 등 또래문화 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은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성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온 일반의 통념이나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도자-선수 관계 역시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선후배 등 또래에서 발생하는 방식과 지도자의 권위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이 선후배나 친구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도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 Ⅲ-38>에서와 같이 성폭력이 발생되는 장소를 통해 확인된다.

<표 III-38> 성폭력 발생 장소

단위: 명(%)

구 분			합숙 장소	시합 장소	훈련 장소	이동 차량	락커룸	코치실	뒷풀이 장소	한적한 곳	기타	유효 수
11-1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32 (48.5)	0 (0.0)	11 (16.7)	1 (1.5)	20 (30.3)	0 (0.0)	0 (0.0)	0 (0.0)	5 (7.6)	66
		고등학생	100 (67.6)	9 (6.1)	12 (8.1)	0 (0.0)	25 (16.9)	0 (0.0)	0 (0.0)	0 (0.0)	18 (12.2)	148
	남학생	중학생	51 (64.6)	4 (5.1)	4 (5.1)	0 (0.0)	20 (25.3)	0 (0.0)	0 (0.0)	0 (0.0)	4 (5.1)	79
		고등학생	94 (57.3)	10 (6.1)	22 (13.4)	0 (0.0)	45 (27.4)	0 (0.0)	0 (0.0)	2 (1.2)	22 (13.4)	164
11-2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1 (29.7)	2 (5.4)	23 (62.2)	0 (0.0)	5 (13.5)	0 (0.0)	0 (0.0)	0 (0.0)	3 (8.1)	37
		고등학생	37 (44.6)	0 (0.0)	39 (47.0)	0 (0.0)	7 (8.4)	0 (0.0)	0 (0.0)	1 (1.2)	13 (15.7)	83
	남학생	중학생	18 (60.0)	1 (3.3)	5 (16.7)	0 (0.0)	5 (16.7)	0 (0.0)	0 (0.0)	0 (0.0)	3 (10.0)	30
		고등학생	29 (48.3)	0 (0.0)	11 (18.3)	0 (0.0)	16 (26.7)	0 (0.0)	0 (0.0)	1 (1.7)	10 (16.7)	60
11-3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36 (40.9)	6 (6.8)	53 (60.2)	8 (9.1)	7 (8.0)	1 (1.1)	0 (0.0)	0 (0.0)	13 (14.8)	88
		고등학생	105 (48.8)	9 (4.2)	111 (51.6)	5 (2.3)	20 (9.3)	3 (1.4)	4 (1.9)	7 (3.3)	35 (16.3)	215
	남학생	중학생	54 (53.5)	3 (3.0)	29 (28,7)	1 (1.0)	18 (17.8)	0 (0.0)	4 (4.0)	1 (1.0)	13 (12.9)	101
		고등학생	105 (61.4)	7 (4.1)	40 (23.4)	8 (4.7)	32 (18.7)	3 (1.8)	7 (4.1)	5 (2.9)	28 (16.4)	171
11-4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4 (50.0)	0 (0.0)	4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고등학생	11 (39.3)	1 (3.6)	10 (35.7)	0 (0.0)	3 (10.7)	0 (0.0)	1 (3.6)	0 (0.0)	6 (21.4)	28
	남학생	중학생	11 (55.0)	1 (5.0)	7 (35.0)	0 (0.0)	4 (20.0)	0 (0.0)	0 (0.0)	0 (0.0)	1 (5.0)	20
		고등학생	19 (44.2)	0 (0.0)	14 (32.6)	0 (0.0)	9 (20.9)	0 (0.0)	0 (0.0)	2 (4.7)	5 (11.6)	43
11-5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6 (60.0)	2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 (10.0)	10
		고등학생	6 (28.6)	4 (19.0)	5 (23.8)	1 (4.8)	2 (9.5)	1 (4.8)	1 (4.8)	3 (14.3)	5 (23.8)	21
	남학생	중학생	9 (52.9)	1 (5.9)	0 (0.0)	0 (0.0)	1 (5.9)	0 (0.0)	0 (0.0)	2 (11.8)	4 (23.5)	17
		고등학생	26 (51.0)	1 (2.0)	5 (9.8)	0 (0.0)	7 (13.7)	0 (0.0)	0 (0.0)	4 (7.8)	12 (23.5)	51

11-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 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4 (40.0)	0 (0.0)	5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0
		고등학생	14 (35.0)	1 (2.5)	18 (45.0)	1 (2.5)	1 (2.5)	1 (2.5)	1 (2.5)	6 (15.0)	5 (12.5)	40
	남학생	중학생	14 (45.2)	1 (3.2)	6 (19.4)	0 (0.0)	6 (19.4)	0 (0.0)	0 (0.0)	0 (0.0)	5 (16.1)	31
		고등학생	12 (38.7)	1 (3.2)	4 (12.9)	0 (0.0)	3 (9.7)	0 (0.0)	0 (0.0)	6 (19.4)	6 (19.4)	31
11-7 나를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1 (44.0)	2 (8.0)	9 (36.0)	3 (12.0)	1 (4.0)	0 (0.0)	1 (4.0)	1 (4.0)	3 (12.0)	25
		고등학생	32 (49.2)	3 (4.6)	25 (38.5)	3 (4.6)	2 (3.1)	1 (1.5)	1 (1.5)	3 (4.6)	9 (13.8)	65
	남학생	중학생	20 (46.5)	1 (2.3)	6 (14.0)	5 (11.6)	7 (16.3)	0 (0.0)	1 (2.3)	0 (0.0)	7 (16.3)	43
		고등학생	25 (52.1)	0 (0.0)	9 (18.8)	3 (6.3)	5 (10.4)	0 (0.0)	1 (2.1)	5 (10.4)	8 (16.7)	48
11-8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11 (42.3)	2 (7.7)	13 (50.0)	1 (3.8)	3 (11.5)	0 (0.0)	0 (0.0)	0 (0.0)	5 (19.2)	26
		고등학생	39 (53.4)	2 (2.7)	36 (49.3)	1 (1.4)	4 (5.5)	1 (1.4)	0 (0.0)	3 (4.1)	7 (9.6)	73
	남학생	중학생	18 (58.1)	0 (0.0)	4 (12.9)	0 (0.0)	5 (16.1)	0 (0.0)	1 (3.2)	1 (3.2)	6 (19.4)	31
		고등학생	36 (59.0)	3 (4.9)	20 (32.8)	0 (0.0)	9 (14.8)	0 (0.0)	1 (1.6)	3 (4.9)	11 (18.0)	61
11-9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4 (50.0)	0 (0.0)	2 (25.0)	0 (0.0)	1 (12.5)	0 (0.0)	0 (0.0)	0 (0.0)	2 (25.0)	8
		고등학생	8 (66.7)	2 (16.7)	2 (16.7)	1 (8.3)	1 (8.3)	1 (8.3)	1 (8.3)	0 (0.0)	1 (8.3)	12
	남학생	중학생	13 (59.1)	0 (0.0)	6 (27.3)	0 (0.0)	3 (13.6)	0 (0.0)	0 (0.0)	0 (0.0)	2 (9.1)	22
		고등학생	7 (38.9)	1 (5.6)	7 (38.9)	0 (0.0)	1 (5.6)	0 (0.0)	0 (0.0)	1 (5.6)	4 (22.2)	18
11-10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2
		고등학생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0 (0.0)	4
	남학생	중학생	3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50.0)	6
		고등학생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3 (60.0)	5
11-11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고등학생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3
	남학생	중학생	3 (6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40.0)	5
		고등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2

* 복수응답 허용

<표 Ⅲ-38>에 따르면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장소로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은 합숙장소이다. 학생선수들의 생활공간은 주로 훈련장소와 합숙장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합숙소나 기숙사 생활이 또래 간 폭력이나 성폭력의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숙소나 기숙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와 대처

다음의 <표 Ⅲ-39>는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Ⅲ-39>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별 느낌이 없다	8 (4.1)	12 (3.6)	20 (3.8)	33 (14.5)	53 (15.7)	86 (15.2)	106 (9.7)
② 우울하다	17 (8.7)	25 (7.4)	42 (7.9)	17 (7.5)	16 (4.7)	33 (5.8)	75 (6.8)
③ 화가 난다	71 (36.2)	132 (39.3)	203 (38.2)	119 (52.4)	181 (53.6)	300 (53.1)	503 (45.9)
④ 무섭다	41 (20.9)	68 (20.2)	109 (20.5)	20 (8.8)	19 (5.6)	39 (6.9)	148 (13.5)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124 (63.3)	167 (49.7)	291 (54.7)	90 (39.6)	131 (38.8)	221 (39.1)	512 (46.7)
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	79 (40.3)	188 (56.0)	267 (50.2)	65 (28.6)	126 (37.3)	191 (33.8)	458 (41.8)
⑦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는다	1 (0.5)	4 (1.2)	5 (0.9)	9 (4.0)	6 (1.8)	15 (2.7)	20 (1.8)
⑧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4 (2.0)	2 (0.6)	6 (1.1)	15 (6.6)	4 (1.2)	19 (3.4)	25 (2.3)
⑨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	29 (14.8)	39 (11.6)	68 (12.8)	57 (25.1)	73 (21.6)	130 (23.0)	198 (18.0)
⑩ 기타	14 (7.1)	24 (7.1)	38 (7.1)	17 (7.5)	35 (10.4)	52 (9.2)	90 (8.2)
유효케이스 수	196	336	532	227	338	565	1,097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4>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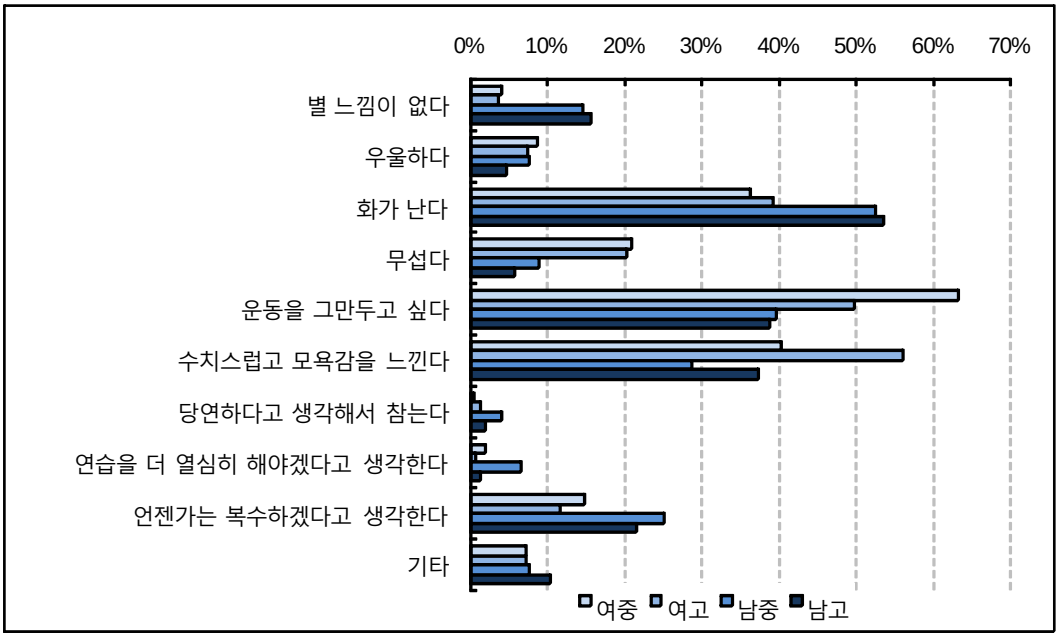

<표 Ⅲ-39>와 <그림 Ⅲ-4>는 성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46.7%)"와 "화가 난다(45.9%)"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더라도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50.2%)"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며 남학생보다 훨씬 더 높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63.3%)"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은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화가 난다(53.1%)"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23.0%)", "별 느낌이 없다(15.2%)"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아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느낌에서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25.7%)"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성폭력과는 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3.4%). 이는 학생선수들이 폭력과 성폭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폭력과 달리 성폭력에 대해서는 운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한 통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0> 다른 선수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한 느낌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별 느낌이 없다	7 (3.6)	13 (3.8)	20 (3.7)	37 (16.1)	59 (16.9)	96 (16.6)	116 (10.4)
② 그 선수가 뭔가 당할 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13 (6.6)	25 (7.4)	38 (7.1)	43 (18.7)	46 (13.2)	89 (15.4)	127 (11.4)
③ 화가 난다	61 (31.1)	148 (43.5)	209 (39.0)	68 (29.6)	127 (36.4)	195 (33.7)	404 (36.2)
④ 우울하다	8 (4.1)	8 (2.4)	16 (3.0)	9 (3.9)	9 (2.6)	18 (3.1)	34 (3.0)
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17 (8.7)	25 (7.4)	42 (7.8)	44 (19.1)	49 (14.0)	93 (16.1)	135 (12.1)
⑥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96 (49.0)	198 (58.2)	294 (54.9)	82 (35.7)	158 (45.3)	240 (41.5)	534 (47.9)
⑦ 무섭다	39 (19.9)	62 (18.2)	101 (18.8)	24 (10.4)	20 (5.7)	44 (7.6)	145 (13.0)
⑧ 그 선수는 운동을 그만둘 것 같다고 생각한다	89 (45.4)	121 (35.6)	210 (39.2)	93 (40.4)	115 (33.0)	208 (35.9)	418 (37.5)
⑨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	44 (22.4)	50 (14.7)	94 (17.5)	26 (11.3)	54 (15.5)	80 (13.8)	174 (15.6)
⑩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3 (1.5)	6 (1.8)	9 (1.7)	8 (3.5)	5 (1.4)	13 (2.2)	22 (2.0)
⑪ 기타	9 (4.6)	18 (5.3)	27 (5.0)	17 (7.4)	26 (7.4)	43 (7.4)	70 (6.3)
유효케이스 수	196	340	536	230	349	579	1,115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5> 다른 선수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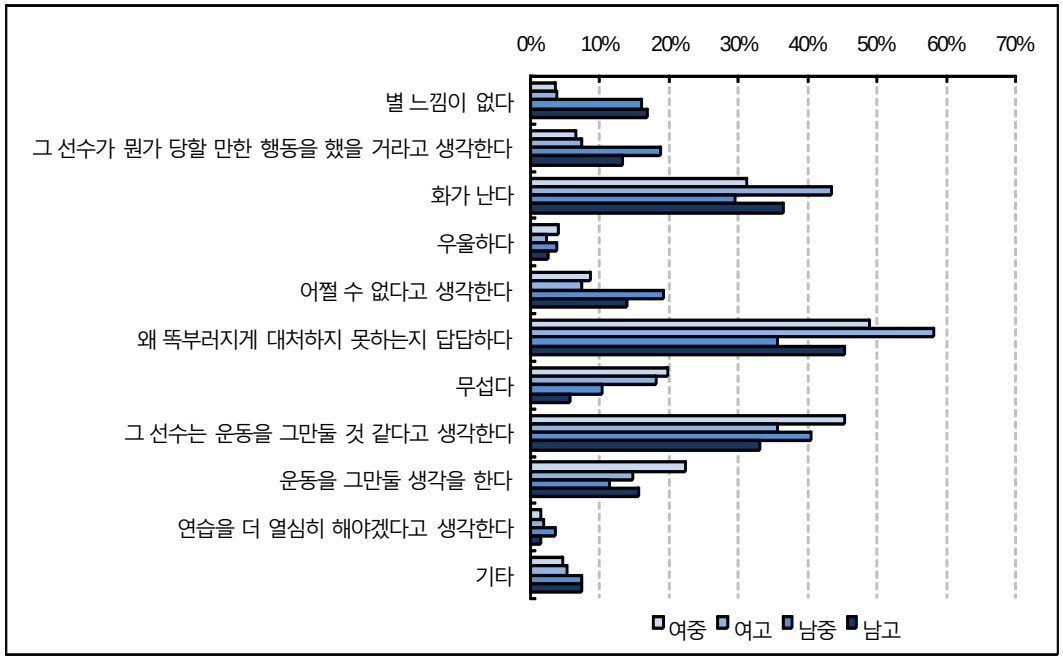

<표 Ⅲ-40>과 <그림 Ⅲ-5>는 다른 선수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느낌을 나타낸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47.9%)”, “그 선수는 운동을 그만둘 것 같다고 생각한다(37.5%)”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54.9%)”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무섭다(18.8%)”,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17.5%)”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다른 동료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16.1%)”, “그 선수가 뭔가 당할 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15.4%)”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다른 친구의 성폭력 경험을 보고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2.0%)”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Ⅲ-41> 성폭력에 대한 대처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	24 (12.2)	32 (9.4)	56 (10.4)	46 (20.0)	51 (14.7)	97 (16.8)	153 (13.7)
②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10 (5.1)	23 (6.7)	33 (6.1)	37 (16.1)	57 (16.4)	94 (16.3)	127 (11.4)
③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34 (17.3)	53 (15.5)	87 (16.2)	41 (17.8)	61 (17.6)	102 (17.7)	189 (17.0)
④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41 (20.9)	105 (30.7)	146 (27.1)	66 (28.7)	124 (35.7)	190 (32.9)	336 (30.1)
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116 (59.2)	236 (69.0)	352 (65.4)	117 (50.9)	196 (56.5)	313 (54.2)	665 (59.6)
⑥ 그냥 넘어간다	8 (4.1)	7 (2.0)	15 (2.8)	28 (12.2)	40 (11.5)	68 (11.8)	83 (7.4)
⑦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125 (63.8)	189 (55.3)	314 (59.4)	78 (33.9)	91 (26.2)	169 (29.3)	483 (43.3)
⑧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11 (5.6)	13 (3.8)	24 (4.5)	16 (7.0)	14 (4.0)	30 (5.2)	54 (4.8)
⑨ 기타	15 (7.7)	20 (5.8)	35 (6.5)	22 (9.6)	35 (10.1)	57 (9.9)	92 (8.3)
유효케이스 수	196	342	538	230	347	577	1,115

* 복수응답 허용

<표 Ⅲ-41>과 아래의 <그림 Ⅲ-6>은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나타낸 것이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59.6%)"의 비율이 높았으나, 성폭력 대처 방식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드러난다. 대체로 자기주장표현과 주위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많이 응답하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 63.8%, 고등학생 55.3%가 성폭력에 대한 대처로 주위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 33.9%, 고등학생 26.2%가 주위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응답하여 2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들은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의 한 방법으로써 그 순간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여학생들은 의사표현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65.4%), 의사표현 못지않게 주위의 도움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59.4%). 그러나 모르는 척하거나 장난, 소심하게 반응하는 비율은 여학생의 경우 30%가 넘으며 남학생의 경우 50% 내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피해를 겪어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6> 성폭력에 대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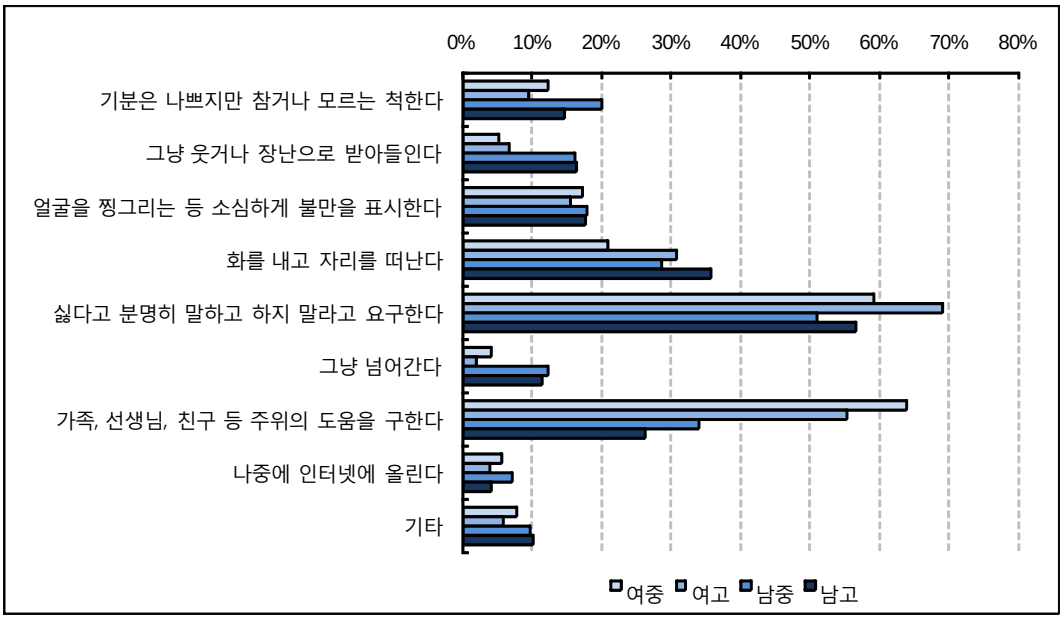

다음의 <표 Ⅲ-42>는 앞의 <표 Ⅲ-21> 폭력 대처 방법과 같은 표이다. <표 Ⅲ-43>의 성폭력 대처 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재구성하였다. 분류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등 "소극적 대처(①+②+③+⑥)"와, 싫다고 말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④+⑤+⑦+⑧)"로 분류하였다.

<표 Ⅲ-42> 폭력 대처 방법의 정도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소극적 대처(①+②+③+⑥)	211	351	562	276	426	702	1,264
적극적 대처(④+⑤+⑦+⑧)	160	306	466	161	212	373	839

* 복수응답 허용

<표 Ⅲ-43> 성폭력 대처 방법의 정도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소극적 대처(①+②+③+⑥)	76	115	191	152	209	361	552
적극적 대처(④+⑤+⑦+⑧)	293	543	836	277	425	702	1,538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7> 폭력과 성폭력 대처 방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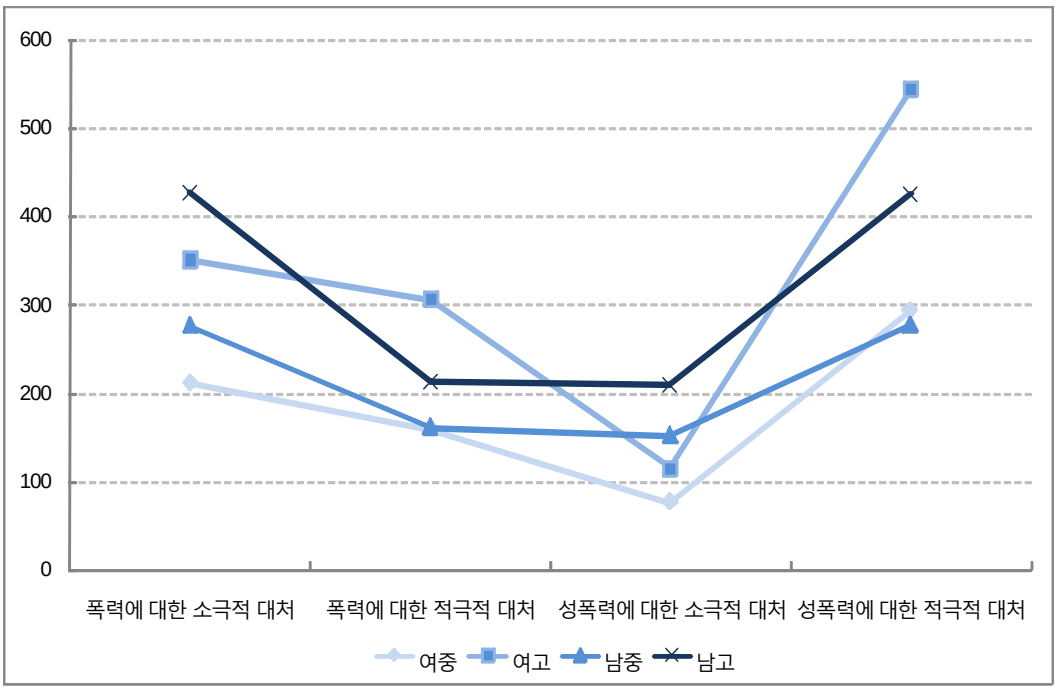

<표 Ⅲ-43>의 성폭력 대처 방법은 <표 Ⅲ-42>의 폭력 대처 방법에 비해 적극적이다. 폭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비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학생들이 3배나 많다. 폭력은 체벌로 인식하지만 성폭력은 체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이 강간 등의 심각한 일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양으로 자신의 실제 태도와 무관하게 설문지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이 폭력과 성폭력을 다르게 인식하며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학생뿐 아니라 대처하지 않겠다는 학생들 역시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아래의 <표 Ⅲ-44>와 <그림 Ⅲ-8>은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를 성별과 학교급별로 살펴본 것이다.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불만을 말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이다. 유사한 이유인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16.3%)”를 같은 범주로 본다면, 성폭력에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운동선수로서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요인인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29.7%),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29.5%)는 실제 피해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이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설사 문제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표 Ⅲ-44>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72 (36.7)	135 (39.7)	207 (38.6)	54 (23.6)	93 (27.1)	147 (25.7)	354 (31.9)
②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66 (33.7)	122 (35.9)	188 (35.1)	54 (23.6)	87 (25.4)	141 (24.7)	329 (29.7)
③ 불만을 말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69 (35.2)	118 (34.7)	187 (34.9)	85 (37.1)	96 (28.0)	181 (31.6)	368 (33.2)
④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12 (6.1)	54 (15.9)	66 (12.3)	25 (10.9)	37 (10.8)	62 (10.8)	128 (11.6)
⑤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9 (4.6)	25 (7.4)	34 (6.3)	30 (13.1)	42 (12.2)	72 (12.6)	106 (9.6)
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7 (3.6)	11 (3.2)	18 (3.4)	22 (9.6)	31 (9.0)	53 (9.3)	71 (6.4)
⑦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50 (25.5)	98 (28.8)	148 (27.6)	64 (27.9)	115 (33.5)	179 (31.3)	327 (29.5)
⑧ 그 사람이 협박해서	35 (17.9)	30 (8.8)	65 (12.1)	32 (14.0)	46 (13.4)	78 (13.6)	143 (12.9)
⑨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34 (17.3)	36 (10.6)	70 (13.1)	53 (23.1)	58 (16.9)	111 (19.4)	181 (16.3)
⑩ 성폭력(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18 (9.2)	18 (5.3)	36 (6.7)	4 (1.7)	8 (2.3)	12 (2.1)	48 (4.3)
⑪ 기타	10 (5.1)	17 (5.0)	27 (5.0)	21 (9.2)	39 (11.4)	60 (10.5)	87 (7.9)
유효케이스 수	196	340	536	229	343	572	1,108

* 복수응답 허용

<그림 Ⅲ-8>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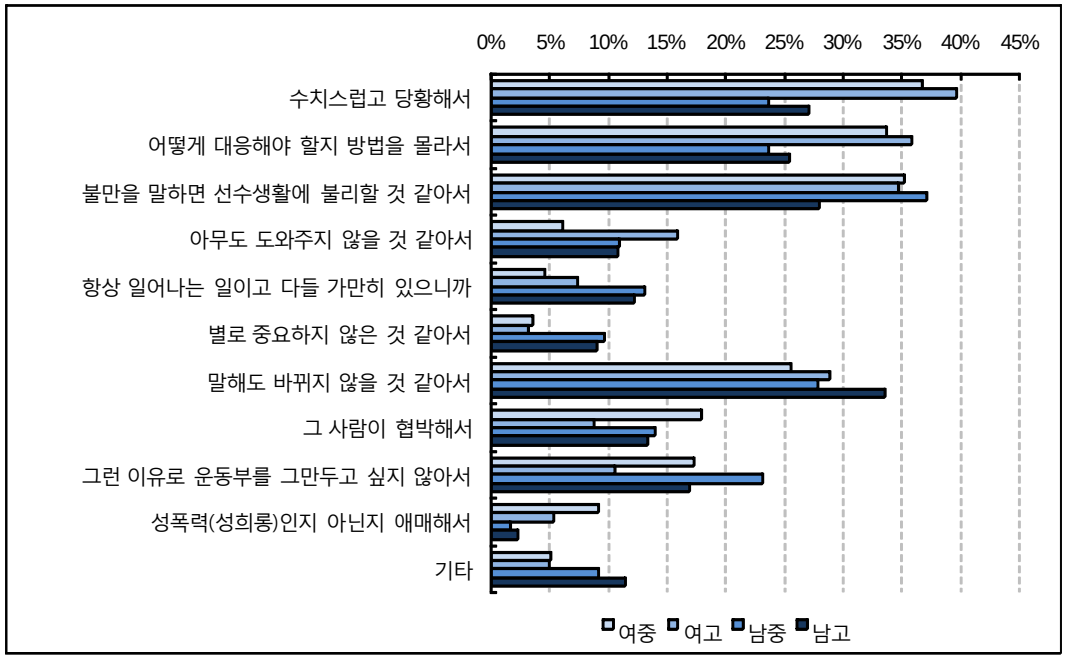

성폭력 대처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도 발견되는데, 수치스럽고 당황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여학생이 38.6%, 남학생이 25.7%로 상당한 성별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여학생이 더 큰 수치심을 느끼며, 이로 인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항상 일어나는 일이어서”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에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이 일상생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이 여학생보다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성폭력을 일상적인 일로 본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항목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그림 Ⅲ-8>을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응답 율이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 역시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45> 자신이 소속된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유무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없다	1,008	88.5	92.1	92.1
	있다	86	7.6	7.9	100.0
	합계	1,094	96.0	100.0	
결측		45	4.0		
합계		1,139	100.0		

<표 Ⅲ-45>는 자신이 소속된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학생들의 성폭력 경험과 학생들의 성폭력 인식 (즉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운동부 내 성폭력 발생 비율로 볼 수는 없다.

3)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 인식

다음에서는 폭력에 대한 수용성, 폭력에 대한 인식(무엇을 폭력으로 인식하는가), 폭력과 체벌의 관계,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무엇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등 폭력과 성폭력 전반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가. 체벌로서 폭력의 수용성

아래의 <표 Ⅲ-46>은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폭력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은 체벌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 Ⅲ-46>에서 보는 것처럼,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때린다"에 대해 91.8%가 폭력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쁠 때 때리거나 욕하는 것에 대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빈도는 그보다 낮다.

이것은 훈련을 이유로 한 폭력, 즉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46>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유효			결측	합계
	폭력이 아니다	폭력이다	합계		
1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때린다	41 (8.2)	458 (91.8)	499 (100.0)	1	500
1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준다	378 (52.2)	346 (47.8)	724 (100.0)	1	725
1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다	232 (34.7)	437 (65.3)	669 (100.0)	1	670
1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때린다	178 (32.0)	379 (68.0)	557 (100.0)	1	558
18-5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준다	22 (28.2)	56 (71.8)	78 (100.0%)	1	79

* 8번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수를 모집단으로 분석 (단, 괄호 안은 유효 퍼센트)

<그림 III-9>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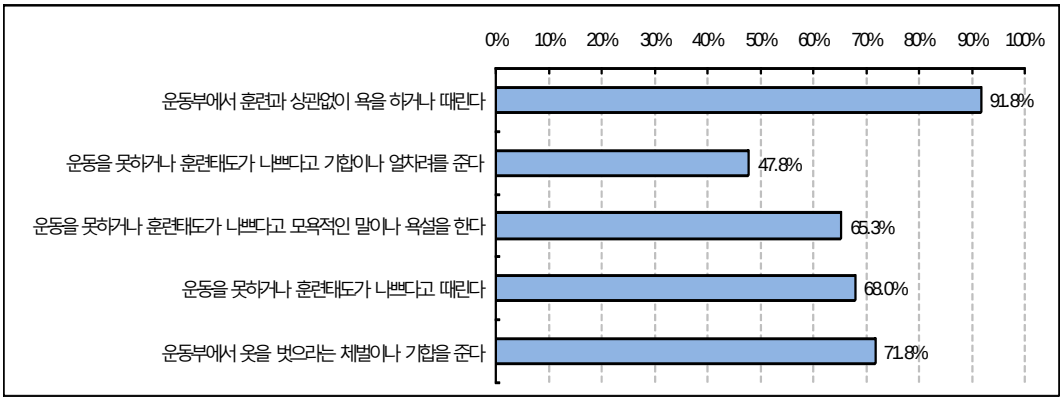

학생들은 훈련과 상관없이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생각하는

인식이 높았으나 훈련과 상관있는 체벌의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대체로 훈련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욕하거나 기합을 주는 것보다 '때리는 것 자체'를 대체적으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8-4 항목 68.0%).

<표 III-47> 성별에 따른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체		p-value
	폭력 아님	폭력	폭력 아님	폭력	폭력 아님	폭력	
1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때린다	14	221	27	235	41	456	.102
1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준다	178	184	199	161	377	345	.102
1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다	123	198	109	237	232	435	.073
1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때린다	73	196	105	182	178	378	.018
18-5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준다	6	20	16	36	22	56	.597

<표 Ⅲ-47>은 성별에 따른 폭력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 유형의 폭력 중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때린다(18-4)"의 경우만 성별로 차이가 있으며,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8> 학교급에 따른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p-value
	폭력 아님	폭력	폭력 아님	폭력	폭력 아님	폭력	
18-1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때린다	18	120	23	323	41	443	.029
18-2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준다	140	90	232	248	372	338	.002
18-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다	91	130	139	296	230	426	.024
18-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때린다	76	122	100	246	176	368	.028
18-5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준다	7	18	15	36	22	54	1.000

반면 학교급에 따른 폭력 인식은 대체로 차이를 보인다.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준다”(18-5), “훈련 중에 누군가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는다”(18-6) 등 성폭력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준다”(18-2)에 대해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각 문항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일수록 혹은 운동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학생선수들이 체벌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체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49>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49> 체벌 인식의 평균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N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17-1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체벌도 참아야 한다(recoding)	3.38	1.207	1,118	.490
17-2 선배 말은 하늘이다(recoding)	3.21	1.293	1,118	.528
17-3 전체 팀웍과 훈련을 위해서는 단체기합이나 얼차려도 필요하다(recoding)	3.15	1.173	1,118	.482
17-4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체벌은 필요하다(recoding)	2.84	1.163	1,118	.498
17-5 옷을 벗기는 것도 체벌이다	2.04	1.618	1,118	.640
17-6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 (recoding)	3.90	1.137	1,118	.599
17-7 나는 맞으면 운동하기가 싫다	3.66	1.284	1,118	.591

<표 Ⅲ-49>에 따르면,[26] "옷을 벗기는 것도 체벌이다"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성적을 위해서는 체벌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3.38,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가 3.90이라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운동으로 인한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Ⅲ-50>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26) 체벌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방향인 문항과 부정적인 방향인 문항이 섞여 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5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몇몇 문항을 역으로 리코딩 하였다. 즉 리코딩 한 문항은 예를 들어 '1'을 '5'로, '5'를 '1'로 리코딩 한 것이다. 뒤에서 다룰 '성역할 의식'과 '운동 전후 변화'에 대한 문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리코딩 하였다.

<표 III-50> 성별에 따른 체벌 인식 평균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17-1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체벌도 참아야 한다(recoding)	3.34	3.40	3.38
17-2 선배 말은 하늘이다(recoding)	3.28	3.15	3.21
17-3 전체 팀웍과 훈련을 위해서는 단체기합이나 얼차려도 필요하다(recoding)	3.22	3.08	3.15
17-4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체벌은 필요하다(recoding)	2.94	2.75	2.84
17-5 옷을 벗기는 것도 체벌이다	1.93	2.14	2.04
17-6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 (recoding)	3.94	3.85	3.90
17-7 나는 맞으면 운동하기가 싫다	3.74	3.58	3.66
전 체	3.20	3.14	3.17

체벌이 폭력이라기보다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위의 <표 Ⅲ-50>에서도 분석된다. 경기성적, 전체 팀웍과 훈련을 위해서 단체기합, 얼차려 등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옷을 벗기는 것이 체벌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평균이 2.0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다.

<표 III-51> 체벌 인식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588	.611	7

<표 Ⅲ-51>은 17번의 체벌 인식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가 0.6~0.7 이상일 때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체벌 인식의 크론바흐 알파는 0.588로 어느 정도 응답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옷을 벗기는 것도 체벌이다(17-5)'의 문항을 삭제한다면 크론바흐 알파가 0.640으로 증가한다. 이는 체벌 인식에서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체벌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응답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Ⅲ-52>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여학생	중학생	3.39	1.104	195
	고등학생	3.57	.918	342
	합계	3.51	.993	537
남학생	중학생	2.99	1.134	229
	고등학생	3.25	1.084	350
	합계	3.15	1.111	579
합계	중학생	3.17	1.137	424
	고등학생	3.41	1.018	692
	합계	3.32	1.070	1,116

그렇다면 체벌에 동의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표 Ⅲ-52>에서 보는 것처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운동부 내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운동성적을 위해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력이 심해지는 현실 인식이라고 해석된다.

<표 Ⅲ-53> 폭력 대책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합숙을 없애거나 줄인다	60 (30.8)	133 (39.1)	193 (36.1)	92 (40.2)	128 (37.1)	220 (38.3)	413 (37.2)
② 체벌을 못하게 한다	60 (30.8)	107 (31.5)	167 (31.2)	90 (39.3)	179 (51.9)	269 (46.9)	436 (39.3)
③ 단체기합을 못하게 한다	40 (20.5)	77 (22.6)	117 (21.9)	60 (26.2)	131 (38.0)	191 (33.3)	308 (27.8)
④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	92 (47.2)	163 (47.9)	255 (47.7)	76 (33.2)	125 (36.2)	201 (35.0)	456 (41.1)
⑤ 성교육을 한다	15 (7.7)	25 (7.4)	40 (7.5)	29 (12.7)	30 (8.7)	59 (10.3)	99 (8.9)
⑥ 가해자는 코치나 감독이 될 수 없게 한다	63 (32.3)	96 (28.2)	159 (29.7)	52 (22.7)	82 (23.8)	134 (23.3)	293 (26.4)
⑦ 수업에 빠질 경우 보충수업을 해준다	34 (17.4)	37 (10.9)	71 (13.3)	25 (10.9)	15 (4.3)	40 (7.0)	111 (10.0)
⑧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학생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한다	79 (40.5)	138 (40.6)	217 (40.6)	72 (31.4)	94 (27.2)	166 (28.9)	383 (34.5)
⑨ 학교, 대한체육회 등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72 (36.9)	99 (29.1)	171 (32.0)	54 (23.6)	89 (25.8)	143 (24.9)	314 (28.3)
⑩ 운동시설이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다	63 (32.3)	112 (32.9)	175 (32.7)	108 (47.2)	120 (34.8)	228 (39.7)	403 (36.3)
⑪ 기타	5 (2.6)	16 (4.7)	21 (3.9)	17 (7.4)	19 (5.5)	36 (6.3)	57 (5.1)
유효케이스 수	195	340	535	229	345	574	1,109

* 복수응답 허용

<표 Ⅲ-53>은 학생선수들이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이다. 일단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고기관, 인권교육, 전담팀이 일차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주변의 도움, 즉 시스템의 마련이 폭력 대책의 중요한 과제로 요구된다. 이것은 성폭력의 대처에 대한 응답

에서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기합이나 체벌 금지를 꼽은 남자 고등학생들의 비율(46.9%)이 높다는 것은 앞의 문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체벌이나 기합을 폭력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특징적이다. 즉 운동성적을 위해 체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Ⅲ-10> 폭력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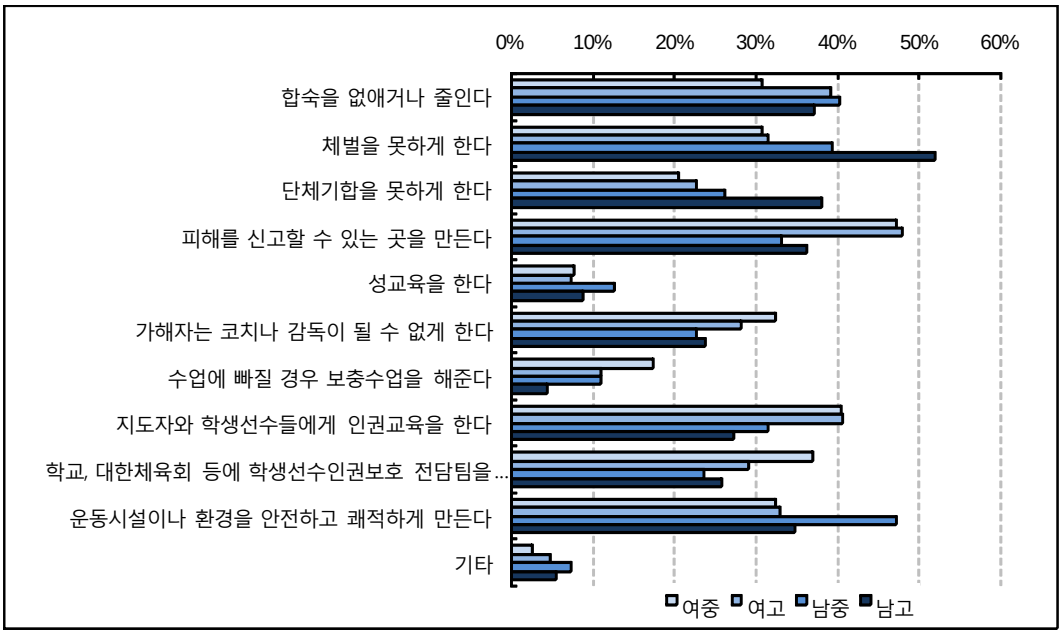

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표 Ⅲ-54>는 성(폭력)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표 Ⅲ-22>)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폭력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계속 내 몸을 쳐다봄' 72.2%, '고의로 자신의 몸을 보여줌' 78.7%, '강제 키스' 81.9%, '허락 없이 몸을 만짐' 87.4%, '옷을 벗김' 84.5%,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 94.7%, '성관계' 83.3% 항목이다. 그러나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옴'은 62%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담하거나 놀림' 항목도 59.2%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무릎 위에 앉

히거나 허락 없이 몸을 기댐'도 53.9%의 학생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은 자신들의 일상이나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지수를 나타내주는 것일 수도 있다.

<표 III-54>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유효			결측	합 계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합계		
19-1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다	313 (62.7)	186 (37.3)	499 (100.0)	1	500
19-2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다	69 (27.8)	179 (72.2)	248 (100.0)	0	248
19-3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다	394 (59.2)	271 (40.7)	665 (100.0)	1	666
19-4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다	23 (21.3)	85 (78.7)	108 (100.0)	1	109
19-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는다	65 (53.7)	56 (46.3)	121 (100.0)	0	121
19-6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키스한다	23 (18.1)	104 (81.9)	127 (100.0)	1	128
19-7 무릎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몸에 기댄다	119 (55.9)	94 (44.1)	213 (100.0)	1	214
19-8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다	28 (12.6)	194 (87.4)	222 (100.0)	1	223
19-9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다	11 (15.5)	60 (84.5)	71 (100.0)	1	72
19-10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1 (5.3)	18 (94.7)	19 (100.0)	0	19
19-11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2 (16.7)	10 (83.3)	12 (100.0)	0	12

* 11번 문항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수(단, 괄호 안은 유효 퍼센트).

<그림 Ⅲ-11>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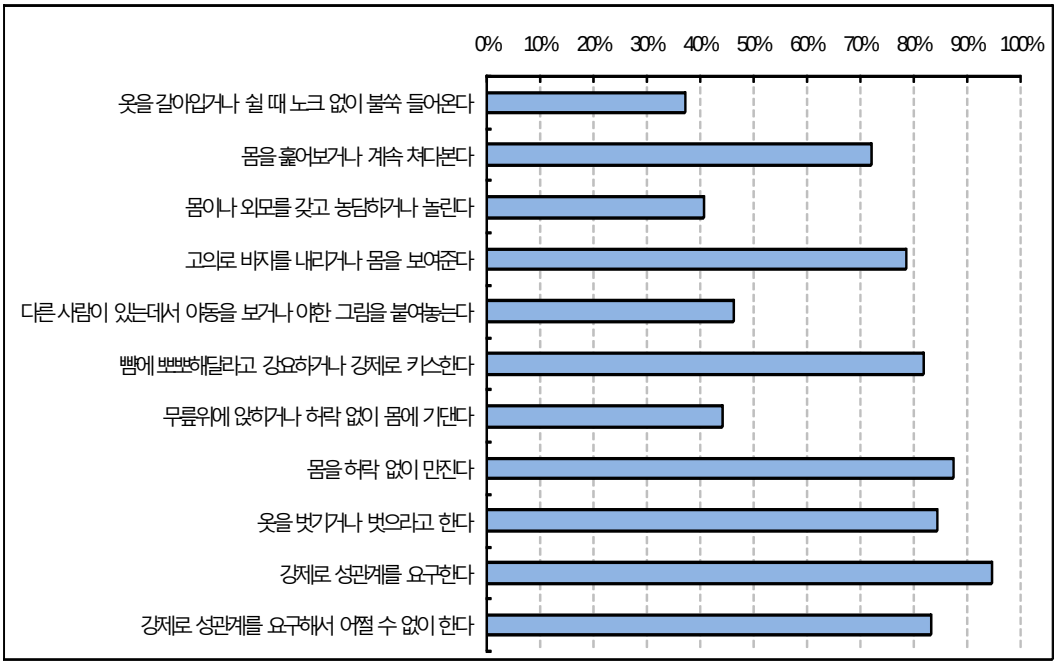

아래에 제시한 <표 Ⅲ-55>와 <표 Ⅲ-56>은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을 성별과 학교급별 나타낸 것이다. <표 Ⅲ-55>에서는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19-10)와 강간(19-11)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성희롱은 여학생이, 시각적 성희롱은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며 강제추행은 여학생이 조금 더 높다. 그러나 강간이나 성관계 요구를 성폭력으로 본다는 인식은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19-11)"에 2명의 학생이 그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은 흥미롭다.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이지만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비일관적인 응답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56>은 어떠한 문항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III-55>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체		p-value
	성폭력 아님	성폭력	성폭력 아님	성폭력	성폭력 아님	성폭력	
19-1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다	115	124	197	62	312	186	.000
19-2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다	16	123	52	56	68	179	.000
19-3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다	188	164	205	106	393	270	.001
19-4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다	0	38	23	46	23	84	.000
19-5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는다	16	25	48	31	64	56	.033
19-6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키스한다	4	54	19	48	23	102	.002
19-7 무릎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몸에 기댄다	45	66	73	27	118	93	.000
19-8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다	4	113	24	79	28	192	.000
19-9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다	0	22	11	36	11	58	.013
19-10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0	7	1	11	1	18	1.000
19-11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1	4	1	6	2	10	1.000

<표 III-56> 학교급에 따른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p-value
	성폭력 아님	성폭력	성폭력 아님	성폭력	성폭력 아님	성폭력	
19-1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다	89	66	219	117	308	183	.108
19-2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다	20	56	46	120	66	176	.877
19-3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다	141	78	251	185	392	263	.108
19-4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다	9	21	14	61	23	82	.295
19-5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는다	16	18	47	37	63	55	.420
19-6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키스한다	12	33	11	67	23	100	.097
19-7 무릎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몸에 기댄다	47	28	70	63	117	91	.191
19-8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다	11	58	17	133	28	191	.385
19-9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다	6	24	5	33	11	57	.518
19-10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0	9	0	8	0	17	.
19-11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0	6	2	3	2	9	.182

아래의 <표 Ⅲ-57>은 운동부 내의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성별과 학교급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과 마찬가지로 여학생(3.07)이 남학생(2.33)보다 그리고 고등학생(2.76)이 중학생(2.57)보다 운동부 내 성폭력이 심

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Ⅲ-57> 운동부 내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여학생	중학생	2.92	1.112	194
	고등학생	3.16	.980	341
	합계	3.07	1.035	535
남학생	중학생	2.27	1.168	229
	고등학생	2.37	1.082	349
	합계	2.33	1.117	578
합계	중학생	2.57	1.186	423
	고등학생	2.76	1.105	690
	합계	2.69	1.140	1,113

<표 Ⅲ-58>은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 사이의 상관계수이다.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은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학생선수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높을 것이다.

<표 Ⅲ-58>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21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	3.33	1,128	1.070	.032	.559	.000
22 운동부 내 성폭력 심각성	2.70	1,128	1.147	.034		

그러나 운동부 내에서는 성폭력보다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다. 이것은 소위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말해지는 강간 등은 나의 일이라기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심각한 성폭력 등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이상의 문항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적인 문화로 성폭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Ⅲ-59> 운동부 내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 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1 운동부의 폭력심각성) - (22 운동부의 성폭력 심각성)	.630	1.043	.031	.569	.691	20.290	1127	.000

폭력 심각성과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부 내 폭력(3.33)이 운동부 내 성폭력(2.70)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Ⅲ-60>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단위: 명(%)

구 분		없다	있다	전 체
여학생	중학생	167(88.4)	22(11.6)	189(100.0)
	고등학생	289(86.8)	44(13.2)	333(100.0)
	전체	456(87.4)	66(12.6)	522(100.0)
남학생	중학생	214(98.2)	4 (1.8)	218(100.0)
	고등학생	327(96.5)	12 (3.5)	339(100.0)
	전체	541(97.1)	16 (2.9)	557(100.0)

<표 Ⅲ-6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운동부 내 성폭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여학생(12.6%)이 남학생(2.9%)에 비해 더 많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성폭력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인식이나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학생에게 강간이나 성관계 요구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남학생들도 성폭력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차적으로는 강간이 아닌 시각적 성폭력의 경우 남학생들 간의 빈번한 포르노의 공유 등과 같은 문화가 원인으로 고려된다. 뿐만 아니라 합숙소 등의 장소에서 선후배나 친구 등 또래가 행위자로 지목된다는 것은 동성 간

의 성(폭력)적인 행위들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행위나 경험으로 질문했을 때는 빈도가 높게 나오지만 성폭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성폭력이라는 직접적 개념을 사용해서 질문할 때와 일상적인 행위로 구분해서 질문할 때 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성역할 의식

성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사회문화적인 역할을 말한다. 성의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떻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표 Ⅲ-61>은 여학생의 평균(3.57)이 남학생(3.32)보다 높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61> 성별에 따른 성의식 평균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20-1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므로 보호해줘야 한다(recoding)	2.04	2.03	2.03
20-2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나 농담도 성폭력(성희롱)이다	4.17	3.83	3.99
20-3 성폭력(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recoding)	3.21	3.02	3.11
20-4 성경험을 자랑하는 친구가 부럽다(recoding)	4.86	4.18	4.50
20-5 임신을 피하는 것(피임)은 여자가 해야 한다(recoding)	3.80	3.58	3.68
20-6 나는 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다	2.18	2.44	2.32
20-7 성관계는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recoding)	3.53	3.23	3.37
20-8 남자는 여자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성관계를 가지면 된다(recoding)	4.79	4.29	4.53
전 체	3.57	3.32	3.44

<표 Ⅲ-61>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므로 보호해야 한다”(20-1)는 문항을 제

외하고는 모두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피임법을 알고 있다"(20-6)는 항목을 제외하고 여학생의 성의식이 남학생의 성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2> 성의식 평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여학생	중학생	3.5705	.37672	196
	고등학생	3.5799	.40080	342
	합계	3.5765	.39148	538
남학생	중학생	3.4450	.49858	230
	고등학생	3.2449	.43184	350
	합계	3.3242	.46938	580
합 계	중학생	3.5027	.45011	426
	고등학생	3.4105	.44896	692
	합계	3.4456	.45143	1,118

<표 Ⅲ-63> 성의식의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221	.269	8

<표 Ⅲ-63>은 성의식을 묻는 20번 문항의 신뢰도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크론바흐 알파는 0.221로 이 문항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비일관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같은 질문에 다시 응답하더라도 얼마든지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선수들이 일반적인 성의식이나 성별의식에 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학생선수들이 피임 등 성에 대한 정보나 성교육, 성별의식 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학생선수들이 성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과 같은 학습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4) 운동부 경험과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다음에서는 운동의 소질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운동부 활동 전후의 변화, 운동 중단 의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학생선수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Ⅲ-64>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 소질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여학생	중학생	3.05	.856	194
	고등학생	2.97	.912	341
	합계	3.00	.892	535
남학생	중학생	3.37	.957	227
	고등학생	3.19	1.037	351
	합계	3.26	1.010	578
합 계	중학생	3.23	.925	421
	고등학생	3.08	.983	692
	합계	3.14	.964	1,113

<표 Ⅲ-64>는 남학생(3.26)이 여학생(3.00)보다 스스로 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며, 중학생(3.23)이 고등학생(3.08)보다 스스로 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운동에 소질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운동에 대한 학생선수 개개인의 성별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가능성을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생이 될수록 자신이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객관화하고 평가하게 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학원체육의 현장이 학생선수들의 잠재성을 최대한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즉 개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함으

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춰나가도록 지원하기보다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평가 받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면,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점차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다.

<표 Ⅲ-65> 운동부 전후 변화의 평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여학생	중학생	3.1363	.65158	196
	고등학생	2.8967	.57051	342
	합계	2.9840	.61169	538
남학생	중학생	3.3561	.58123	228
	고등학생	3.0007	.59018	351
	합계	3.1406	.61149	579
합 계	중학생	3.2545	.62374	424
	고등학생	2.9494	.58246	693
	합계	3.0652	.61625	1,117

<표 Ⅲ-65>는 남학생(3.1406)이 여학생(2.9840)보다, 중학생(3.2545)이 고등학생(2.9494)보다 운동부가 된 후의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66> 운동부 전후 변화에 대한 신뢰도 검정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646	.644	9

<표 Ⅲ-66>은 7번 문항의 운동부 전후 변화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크론바흐 알파는 0.646으로 문항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표 III-67> 성별에 따른 운동부 전후 변화의 평균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 체
7-1 운동이 더 즐거워졌다	2.53	2.95	2.75
7-2 학교수업에 더 흥미를 느낀다	2.76	2.47	2.61
7-3 운동에서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2.98	3.44	3.22
7-4 성적이 떨어졌다(recoding)*	2.27	2.49	2.38
7-5 친한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3.37	3.51	3.44
7-6 운동부가 아닌 친구와 멀어졌다(recoding)*	2.92	3.26	3.09
7-7 운동부에 고립되는 것 같다(recoding)*	2.61	2.72	2.67
7-8 나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4.01	4.06	4.04
7-9 많이 맞거나 때리거나 거칠어졌다(recoding)*	3.38	3.32	3.34
전 체	2.98	3.13	3.06

* 리코딩한 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적이 떨어졌다(7-4)”, “운동부가 아닌 친구와 멀어졌다(7-6)”를 리코딩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운동부가 아닌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 Ⅲ-67>에서 리코딩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면 성별에 따른 운동부 전후의 변화 경향이 파악된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운동이 더 즐거워졌다”(7-1), 또는 “운동에서 진로를 찾았다”(7-3)고 보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성적이 떨어졌다”(7-4), “운동부가 아닌 친구와 멀어졌다”(7-6)고 응답한 율이 높다. 나머지 항에서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아 인식이나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III-68>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없다	150	13.2	13.8	13.8
	있다	938	82.4	86.2	100.0
	합계	1,088	95.5	100.0	
결측		51	4.5		
합계		1,139	100.0		

<표 Ⅲ-69> 성별에 따른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

단위: 명(%)

구 분		없다	있다	전 체
여학생	중학생	24(12.6)	166(87.4)	190(100.0)
	고등학생	22 (6.7)	306(93.3)	328(100.0)
	전체	46 (8.9)	472(91.1)	518(100.0)
남학생	중학생	60(27.6)	157(72.4)	217(100.0)
	고등학생	42(12.4)	296(87.6)	338(100.0)
	전체	102(18.4)	453(81.6)	555(100.0)

<표 Ⅲ-69>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응답자 중 86.2%가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운동 중단 의사와 관련한 성별 차이는 운동선수로의 성장과정에서 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 문화와 구조 자체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남성선수보다 여성선수에 대한 주변의 지지와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표 Ⅲ-70>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여학생			남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①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 싫어서	54 (30.9)	72 (22.2)	126 (25.3)	73 (41.7)	106 (33.4)	179 (36.4)	305 (30.8)
② 성폭력(성희롱) 때문에	1 (0.6)	1 (0.3)	2 (0.4)	0 (0.0)	1 (0.3)	1 (0.2)	3 (0.3)
③ 학교성적이 떨어져서	8 (4.6)	5 (1.5)	13 (2.6)	3 (1.7)	4 (1.3)	7 (1.4)	20 (2.0)
④ 운동성적이 떨어져서	21 (12.0)	79 (24.4)	100 (20.0)	21 (12.0)	83 (26.2)	104 (21.1)	204 (20.6)
⑤ 진로문제 때문에	21 (12.0)	39 (12.0)	60 (12.0)	14 (8.0)	43 (13.6)	57 (11.6)	117 (11.8)
⑥ 운동이 힘들어서	94 (53.7)	160 (49.4)	254 (50.9)	65 (37.1)	136 (42.9)	201 (40.9)	455 (45.9)
⑦ 가족의 반대 때문에	3 (1.7)	5 (1.5)	8 (1.6)	4 (2.3)	1 (0.3)	5 (1.0)	13 (1.3)
⑧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7 (9.7)	46 (14.2)	63 (12.6)	7 (4.0)	25 (7.9)	32 (6.5)	95 (9.6)
⑨ 기타	13 (7.4)	28 (8.6)	41 (8.2)	11 (6.3)	15 (4.7)	26 (5.3)	67 (6.8)
유효케이스 수	175	324	499	175	317	492	991

* 복수응답 허용

<표 Ⅲ-70>과 <그림 Ⅲ-12>는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어 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어 한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이 힘들어서(45.9)”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 싫어서(30.8%)”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항목들은 “운동성적이 떨어져서(20.6%)”와 “진로문제 때문(11.8%)”에 운동부를 그만두려고 했던 것보다 더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운동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운동의 어려운 현실과 폭력이 학생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선수의 삶 자체가 그들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의 훈련 방식이나 현행 학원체육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Ⅲ-12>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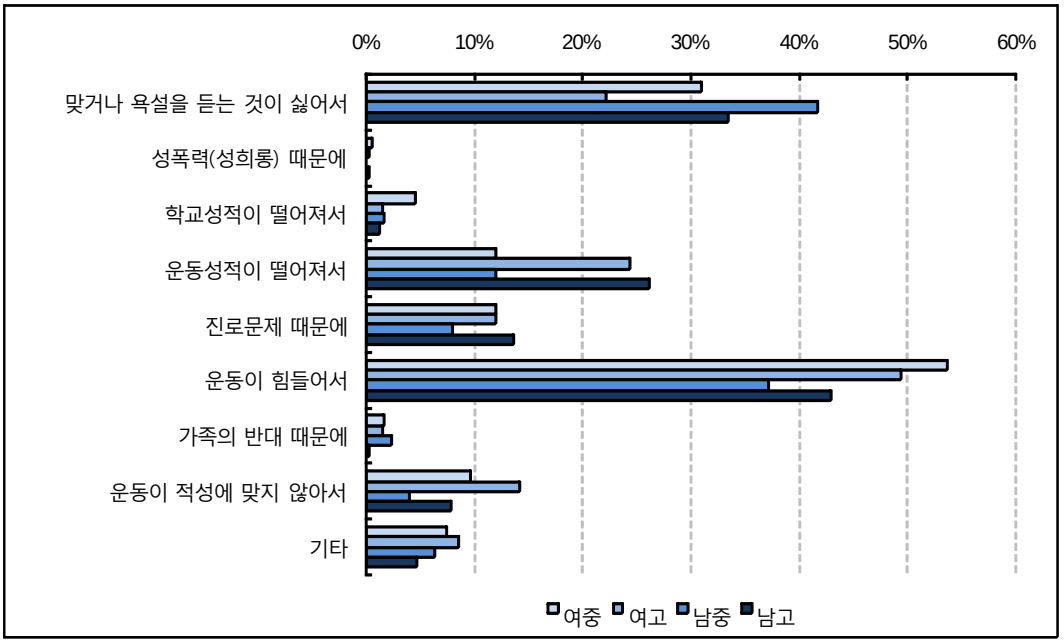

<표 Ⅲ-71> 운동부 중단 의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별	-.701	.225	9.722	1	.002	.496
운동지속기간	.153	.048	10.297	1	.001	1.165
폭력 경험_있음	-.767	.231	11.063	1	.001	.464
성폭력 경험_있음	-.871	.220	15.665	1	.000	.418
운동전후_평균	-1.184	.197	36.056	1	.000	.306
폭력심각성	.231	.102	5.087	1	.024	1.259
상수	5.462	.839	42.347	1	.000	235.540

* 종속변수: 운동전후 변화의 평균

** Nagelkerke R^2= .312

<표 Ⅲ-71>은 운동부 중단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Nagelkerke R^2는 0.312로 이 모형은 전체의 31.2%를 설명하고 있다.

성별의 Exp(B)는 0.496으로서 남학생의 운동부 중단 의사는 여학생의 0.496배이다. 즉 여학생의 운동부 중단 의사는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frac{1}{0.496}$ =2.016배), 또한 운동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도 늘어난다(1년에 1.165배).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든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운동부 중단 의사가 높게 나타나며($\frac{1}{0.464}$ =2.155배),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운동부 중단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frac{1}{0.418}$ =2.392배). 또한 운동전후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적으며, 운동부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1,139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538명(48%), 남성 584명(52%),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427명(38%), 고등학생 695명(62%)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권 침해 및 대처

학습권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가의 문제를 단순히 학습시간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운동선수가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기본적인 학습시간과 보충시스템의 마련 여부는 학습권의 기본 조건이다. 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선수들은 시합이 있을 때는 정규수업에 평균 약 2시간 참여하며 시합이 없을 때는 4.4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보충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82.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여학생 76.8%, 남학생 87.0%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충을 받는 경우에도 선생님이 보충해주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실질적으로 학습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폭력 실태 및 대처

폭력 실태 및 대처와 관련하여 보면, 조사대상자 중 어떠한 종류이건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898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폭력의 주 행위자는 코치나 감독으로 나타나며, 폭력 발생 장소는 주로 훈련 장소이다.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에는 선배가 주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의 유형을 보면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64.3%)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59.1%),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49.3%)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훈련과 상관없이 약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며, 매일 경험하는 학생들도 5%로 나타난다. 훈련과 상관없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폭력의 빈도 상으로 보면 "매일"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는다는 학생은 남자 중학생이 7.5%로 가장 높게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생선수들이 훈련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구타나 욕설 등의 폭력 경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체벌에 대한 일반적 통념, 즉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은 어쩔 수 없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체벌 등 폭력 경험으로 인해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한 반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응답은 56.4%에 이른다. 특히 폭력 피해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성별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응답해, 성별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드러난다. 대처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등의 소극적인 대처가 "싫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등의 적극적인 대처보다 지배적이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소극적인 대처 경향을 나타내며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③ 성폭력 피해와 대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성폭력 주 행위자는 폭력행위자와 달리 지도자보다 선후배나 친구들로 나타나며, 피해 장

소는 주로 합숙장소나 기숙사로 나타난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의 58.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한다. 친밀한 사이에서 소위 '뽀뽀'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허락 없이 뽀뽀하거나 몸을 만지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포함시켰다. 강간 및 성관계 요구가 약 2.5%라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27]

성폭력 역시 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피해 경험 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46.7%)"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화가 난다(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41.8%)"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성별 간 차이가 분석되는데, 남학생이 "화가 난다(53.1%)"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폭력에 비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등 적극적 대처의 의지를 보이는 비율이 59.6%로 높게 나타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 "대응방법을 몰라서(29.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④ 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처

폭력,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폭력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서 폭력보다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성폭력 대처와 인식 고양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단순히 폭력보다 성폭력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처한다고 보기보다는 "성폭력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대답한 결과일 수 있거나, 심각한 강간(약 1.1%)과 같은 극단적 사례만 성폭력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대답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성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을

27) 성관계 요구나 강간의 경우, 현행법상 '부녀자'가 아닌 남성에 대한 강간은 강간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적 성희롱/성폭력의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의거해 남성의 피해 경험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폭력, 성폭력에 대한 인식

학생선수들의 폭력에 대한 수용도는 폭력 행위를 체벌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선수들의 경우,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훈련과 관련되는 체벌의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훈련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욕하거나 기합을 주는 것보다 '때리는 것 자체'를 대체적으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 경험이 많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폭력 대책에 대한 응답에서 체벌 금지가 52%, 단체기합 금지가 3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폭력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체벌이나 기합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응답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학생선수들이 현실적으로 운동과정에서의 체벌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벌 역시 폭력의 일종이며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력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 결과를 보면, 성폭력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성적 행위들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강요나 고의적인 행위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난다. 즉 운동선수들이 성폭력으로 인식한 것은 계속 쳐다봄(72.2%), 몸을 보여줌(78.7%), 강제키스(81.9%), 만짐(87.4%), 벗김(84.5%), 성관계 요구(94.7%), 성관계(83.3%) 항목이고, 다른 한편 이들 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쑥 들어온다"는 62%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농담하거나 놀린다"는 59.2%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무릎 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몸에 기댄다"는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도 53.9%이다. 성폭력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이러한 응답은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10대에 속하는 학생선수들의 성문화를 반영하거나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운동선수들의 문화 모두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민감성이 매우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성폭력 발생 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결과는 향후 학생선수들에 대해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반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⑥ 운동부 전후의 변화 및 운동 중단 의사

학생선수들이 어떤 계기로든 운동 중단 의사를 갖는다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자존감과 사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이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적으며, 운동부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6.2%가 운동 중단 의사를 가졌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선수가 남성선수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운동이 힘들다는 것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맞거나 욕설 등 폭력 경험 때문(30.8%)인 것으로 나타난다. 운동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이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주는 긍정적 의미가 아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폭력이 운동 중단 의사를 갖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폭력이 학생선수들의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박탈이나 폭력, 성폭력 피해 등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학생선수들에게 운동 중단 의사를 갖게 하는 주요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인권 침해의 개선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훈련방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성적 언동들이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현상들,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등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과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나 피해가 미치는 영향 등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 운동을 하게 된 후 여성선수들이 남성선수에 비해 자신의 소질 등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점 등의 결과는 여성선수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세력화) 지원 정책과 같은 성인지적 체육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면접조사 결과: 인권 침해 발생 구조를 중심으로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총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여학생 21명, 남학생 9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6명이다. 종목별로는 단체종목이 16명, 개인종목이 14명이며, 이들 중 현재 체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10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지역 6명, 충청지역 8명, 강원지역 5명, 부산지역 5명, 전라도지역 4명, 경상도 지역 2명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기타 인권 침해 관련 경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 Ⅲ-72> 사례 개요표와 같다.

<표 Ⅲ-72> 인터뷰 사례 개요표

번호	이름(가명)	성별	종목	학년	운동경력	인권 침해 관련 경험
1	손미나	여	개인(골프)	고2	3년	학습권 문제, 운동부 내 심한 고립감 토로
2	엄지숙	여	개인 (배드민턴)	고2	8년	6개월 전 골프로 전환. 지도자와 선배폭력과 심각한 학습권 문제, 운동부 그만둘 때의 어려움을 말해줌
3	김아연	여	개인(수영)	고1	6-7년	체고/ 주변의 다양한 폭력, 성폭력 사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함
4	안미수	여	개인(양궁)	고1	8년	지도자 폭력, 경미한 성폭력 경험
5	나은혜	여	개인(레슬링)	고3	4년	체고/ 학생들 간의 심한 언어적 성폭력
6	이성하	여	개인(양궁)	고1	-	체고/ 선배의 괴롭힘으로 힘들어 함
7	심미란	여	개인(양궁)	고1	8년	체고/ 선배 괴롭힘으로 힘들어 함
8	서지영	여	단체(농구)	고3	8년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고3이지만 운동으로 진학하지 않고 일반대학 진학을 고려 중
9	설민정	여	단체(축구)	고2	5년	학습권 문제와 심한 기합으로 힘들어 함
10	김희주	여	단체(핸드볼)	고3	7년	특이사항 없음
11	강남식	남	개인(수영)	고3	8년	체중·체고/ 수영선수 생활

12	김범상	남	개인(태권도)	고3	3년	체고/ 여러 종목을 시도하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3년 됨
13	정한수	남	개인(육상)	고2	7년	체고/ 중학교 때 코치 폭력으로 갈등이 있었음. 현재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음
14	구영철	남	단체(수구)	고2	8년	체고/ 수영 6년, 수구 2년(중1때 운동을 잠시 쉼), 잦은 폭력 및 훈련 위주의 생활이 싫어서 고3까지만 운동을 하기 원함
15	오석훈	남	단체(농구)	고3	9년	학습권, 선배의 폭력, 지도자의 폭력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16	김아랑	여	개인(체조)	중1	4년	체중
17	김연희	여	개인(양궁)	중2	4년	선배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음. 현재 운동을 중단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상담치료 중
18	정안나	여	개인(골프)	중3	1년	학습권 문제와 경미한 선배 폭력 문제
19	정이선	여	개인(양궁)	중3	5년	특이사항 없음
20	박주연	여	단체(농구)	중3	5년	전형적인 운동선수의 생활
21	박해숙	여	단체(핸드볼)	중2	5년	코치 폭력, 선배 폭력 심각함 감독에 의한 성희롱 경험
22	이미숙	여	단체(핸드볼)	중2	7-8개월	선배 폭력, 심한 기합. 운동 그만두길 원함
23	임빛나	여	단체(농구)	중3	7년	지도자 폭력 경험
24	장유미	여	단체(농구)	중3	5년	선배 폭력 경험
25	채은혜	여	단체(농구)	중1	4년	선배 폭력 · 심한 기합 경험
26	최유나	여	단체(축구)	중1	2년	특이사항 없음
27	신순재	남	개인(근대3종)	중3	8년	체중
28	민창선	남	단체(배구)	중2	3년	지도자 및 선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희롱 경험
29	전진서	남	단체(럭비)	중3	3년	같은 지역 고등학교 럭비부 감독의 자녀, 모범답안에 가까운 평이한 이야기만 함
30	황명식	남	단체(럭비)	중2	2년	운동 시작하면서부터 동성 선배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과 폭력을 경험함

2) 학습권 침해와 대안 부재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습권 침해 문제는 학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주요한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김신일, 1999). 학습권 침해는 단지 학생선수들이 운동 때문에 시간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물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운동 이외에 다른 학습 영역에서의 능력이나 다른 성장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즉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는 이들이 미래의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운동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생활인으로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선수들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정명, 1999).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절에서는 첫째, 면접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의 구체적인 맥락과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학습권 침해 문제가 학생선수들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폭력, 성폭력 발생의 물리적 토대로 작용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 규정되는 존재

한국사회 엘리트 체육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선수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중학생 시절부터는 마치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동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중·고등학교 운동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선수들이 비록 운동선수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저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체육계 내부나 관계당국의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 역시 마련되어 시행되어 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4월 “학교체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의 내실화 및 지원 체제의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체육 혁신 방안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각급 학교 학기 중 상시 합숙을 금지하고, 전국단위 규모 대회의 출전을 제한하는 것(3회까지 출전 가능)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는 그러한 규정이나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유명무실하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은 여전히 무시된 채 학생이 아닌 전문 운동선수로서 운동에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시합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수업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은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운동으로라도 밀어붙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간다.

> 거기에서 5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5학년 때 소년체전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중요한 시합이에요. 거길 붙으면 그 전부터 막 한 달 전부터 몇 달... 한 달 반 정도... 그 전부터 OO(지역) 사람들 모여가지고 합동훈련하고 막 적응훈련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수업을 빠지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전에는 수업을 안 빠지는데... 점점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운동이라도 해서 그걸루 밀어붙이고 나가라. 이러구...
>
> (안미수, 여고1, 양궁)

초등학교 시절부터 양궁을 시작한 안미수 학생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지, 학습권 보장의 일상적인 경험은 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을 수반하게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 교육의 치열한 경쟁구조 안에서 그것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반복적인 수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성적 저하를 가져오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학생선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좌절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체육 엘리트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체육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체육 중・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뒷받침하기 어려운 학습과 운동의 양면을 구조적으로 보완해줄 거라는 인식과 달리, 일반수업의 배제나 운동 중심의 수업시간 배정을 통해 더 공공연하게 학습권 침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체육고 학생들이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한다기보다는 졸려서... 오히려 자라고, 피곤하니까. 요전에 한 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 너네 피곤해 보인다. 프린트물 이만큼 갖고 와서 수행평가 한다고 했는데 한 놈만 이러고 있고 나머지 다 진짜 코 골면서 자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피곤한가 보구나, 놔둘 테니 피곤하면 자라, 여기 선생님이 쓰고 나갈 테니까 이거 수행평가 해 와라, 칠판에 적어놓고 나가시고... 진짜 선생님 좋으세요.
>
> (김범상, 남고3, 태권도)

태권도 선수인 김범상 학생은 고3이라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답답해하고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의 주요한 비중은 체육 훈련에 가 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운동하기 전 휴식 시간으로 일반수업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 학생이 다니는 체고의 경우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이 훈련 때문에 피곤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업시간을 아예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관행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각 학년에서 전 과목을 배우는 반면, 체고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일부 과목만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아뇨... 1학년 때는 국어도 안 배우고, 일본어도 안 배우고, 국사도 안 배우고 (그럼 뭐 배워요?) 영어, 과학, 육상 이런 거, 체육과목 그런 거랑, 사회, 도덕 음악... 수업을 많이 안 들으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없어요.
>
> (김아연, 여고1, 수영)

다음의 사례는 운동으로 인한 부분적 수업 결손이 결국은 개인 학생의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짐으로써 구조적인 학습권 침해를 야기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아래 박해숙 학생의 경우 1년에 시합에 5번 정도 참여하는데, 시합이 있어도 4교시까지는 수업을 들어가지만 전지훈련을 가면 아예 수업을 다 빼고 가서 오전 9시나 9시 반부터 저녁 7시나 8시까지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업진도를 놓치게 되고 결국 수업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애들과 놀거나 컴퓨

터를 하는 등 수업 중에 딴 짓을 하게 된다.

> 전지훈련만 수업 빼고... 그러면 갔다 오면요, 막 교과서 보면 10장씩 넘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다 공부 안하고.. 앞에 부분을 모르니까 뒷부분도 모르고. 그냥 자고... 애들이랑 놀고...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 그니까 1교시는 안 들어가고 2, 3, 4교시 들어가고요, 거의 컴퓨터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터넷 싸이월드 그런 거, 홈피 그런 거 하고, 딴 애들은 수업 진도를 나가고. 따라를 못 하니까.
>
> (설민정, 여고2, 축구)

축구를 하는 설민정 학생의 경우, 장래 꿈이 축구 국가대표이고 선수 생활이 끝난 후에는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수업도 많이 못 들어가고 시합 때는 아예 수업을 들어가지도 않으며 심지어 "아예 교과서도 없고" 수업도 거의 못 듣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상적인 수업 결손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훈련이나 시합으로 인한 수업 결손 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거나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선수들은 전지훈련, 시합 준비에 따른 일상적인 오후 수업 결강 등으로 전체 수업 일수의 절반 이상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강된 수업에 대한 보강이나 보충학습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거나 진도를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생선수는 "학생"이기보다 "운동선수"로서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즉 학생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학습 권리를 보장받기보다는 운동선수로서 좋은 성적과 최고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최대한 투여하는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양궁선수인 아래 김연희 학생의 경우는 학습권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커녕 개인적으로 모자란 학습능력을 보충하려 해도 지도자들이 이를 싫어해서 눈치를 보느라 공부하기 어려운 운동현장의 실상을 밝혀준다.

> 근데 그래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과외 같은 거. 근데 코치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요. 못했어요. 만약에 운동시간 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 운동 다 끝나고 밤에 하면 잠 안 자고 내일 아침 때문에 그런다고 또 눈치를 주니까 솔직히 못해요. 선생님들 때문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
> (김연희, 여중2, 양궁)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수업 보충은 철저히 개인적인 노력 혹은 부모님의 지원이라는 개별적 방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겨우 가능할 뿐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고 졸업 후 일반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아래의 학생은 개인적으로 보충학습에 주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 주말에 집에 가서 과외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수학 했어요. 일본어는 학습지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학도 없거든요, 1학년에. 2학년 때부터 배운대요. 수학 안 하고 영어만 배워요.
>
> (김아연, 고1, 수영)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는 보충학습은 본인의 강한 의지뿐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혼자의 의지만으로 힘든 운동과 학업보충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실적 구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적으로 단순히 양적인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작 운동현장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구조적인 편법을 조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학습권과 관련해서 관계당국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학교체육 혁신 방안>을 통해 학교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학습권 침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경쟁 구조와 대회 방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수업결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없는 형식적 학습권의 준수는 일선의 학생선수들에게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 강원도 애들은 제가 연락을 한 번씩 하면은, 아씨~ 우리 뉴스 그것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가야 된다고. (하하) 운동 안 하는 건 좋은데 공부까지 시킨다고 죽

> 을 것 같다고 이라대요. “느근 좋은 거다” 이랬는데. 또 문제는 막상 학교 가면 할 게 없어요.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골프)

즉 학생선수들에게 수업시간에 대한 양적인 학습권 확보를 권장한다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일반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따라 갈 수 없을 때, 수업 참여는 또 다른 짐일 뿐이다. 엄지숙 학생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유명무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나. 폭력·성폭력 발생의 물리적 토대로써 학습권 침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로 인한 학습 능력의 상실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 엄습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역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습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극단적으로 “덧셈 뺄셈도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삶에서 운동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운동선수 생활 중에 학교와의 갈등이나 선후배간의 문제, 지도자와의 충돌 등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드러내거나 문제시하기보다 혼자 참거나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학부모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해도 별다를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꼼짝없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묶어 놓은 돼지”라는 자조 섞인 학부모의 토로는 학생선수들의 절박한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이 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거나 묵인해 버리는 경험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운동선수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드민턴을 8년간 하다가 6개월 전 골프로 전환을 한 엄지숙 학생은 운동종목을 전환하면서까지 운동을 지속해야 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니까 운동 배드민턴은 그냥 그만뒀는데 운동

> 선수가 솔직히 운동을 끊으면 할 게 없잖아요. 머리도 공부를 잘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애들 보통 보면 알바 다니고 학교 안 다니면서, 알바 다니고 좀 있으면 좀 심해지면 나이트 일도 하고... 나이트 보조하는 거 그런 애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 골프)

엄지숙 학생은 지금까지 운동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다고 가정할 때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친구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였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그만두고 학업을 통한 사회 진출을 고려했지만, 골프로 운동 종목을 변경하게 되는 과정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엄지숙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한 결과 본인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제가 저번에 과외를 했었는데요.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다고 이랬거든요. 되게 쪽팔렸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더하기 빼기를 중학교 때 하면, 몇 학년이냐고 교재를 가져올께... 더하기 빼기 이랬어요.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어요. 이해를 못 해요. 니가 무슨 더하기 빼기 하냐고. "저 더하기 빼기 잘 못 해요" 이래도. 분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안 믿고. 그래도 수준이 낮은 분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분수 모르거든요. 뭔데 이거 몰라요. 더하기 빼기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어요. 더하기 빼기 잠깐 하다가 안 하시더라구요.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 골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칙연산도 제대로 하기 힘든 학생선수들의 학습능력은 아무리 힘든 폭력 혹은 성폭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로 장래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박해숙 학생의 경우, 처음 운동을 시작한 1년 동안 운동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지도자의 체벌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 한 대 맞고 계속 아파서 우는데요. 아파서 울면요, 더 때려가지고 그래서 참아요. 너무 힘들어서 운동하기 싫고... 안 한다고 하니까요, 운동 안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계속 해라고 했어요... 그 때

>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하니까 공부를 그 때 안 해서 계속 운동 안 하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때 안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몇 학년이었어?) 중 1때. 벌써 4년을 공부를 못했으니까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위의 학생은 지도자의 심한 체벌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경험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우 유사하게 경험하는 과정이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시간마다 반복되는 지속적인 폭력과 체벌에 힘들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로 인해 운동 이외의 선택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인식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 해 운동을 지속하거나 혹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박탈로 이어진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운동선수로 살아남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두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인식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박탈이자 현재 자신의 삶이나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폭력을 겪고도 드러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꼽히는데, 이는 선수생활의 지속이 그 어떤 문제보다 절실하다고 보는 학생선수들의 현실적인 판단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볼 때 학생선수들의 양적, 질적 학습권 보장의 침해는 단순한 학습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둘 경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길을 막는 미래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고, 또한 자기 몸에 대한 타인의 폭력, 성폭력을 감수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인 토대이다.

3)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 구조의 재생산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체벌을 넘어선 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생선수 선후배 간의 폭력 등이 스포츠계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운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종종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 또한 언론을 통해 종종 보

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스포츠계에서도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실태를 문제제기할 뿐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오고 있다(강신욱, 1998; 김석희, 2007).

다음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겪는 지도자에 의한 체벌 및 폭력의 일상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한 선후배 간 폭력의 구조적 재생산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스포츠계 폭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 지도자의 일상적 폭력과 폭력의 묵인

지도자들의 체벌이나 체벌을 빙자한 폭력은 훈련을 받는 학생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도자들은 흔히 기량 부족, 노력 부족, 행동 및 태도 불량의 이유로 학생선수들의 체벌을 통한 훈련을 정당화한다(유광욱·원유병, 2007). 학생선수들 역시 체벌을 넘어선 폭력 수준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을 하는 문화 내에서 체벌의 상시화, 일상화에 대해 크게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 묵인하는 것이 현실이다. 면접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지도자에 의한 체벌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능력 향상"을 위한 체벌의 정당화

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의 기량 부족과 노력 부족, 그리고 불량한 태도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 많은 경우 학생선수들 자신 역시 이러한 체벌을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지도자의 체벌이 정당한 체벌이라기보다는 다소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거나 체벌이 운동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체고에 다니는 김아연 학생의 경우 수영부 선배언니가 없기 때문에 선배로부터 기합을 받는 일은 없지만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은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선생님의 체벌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파서 울죠, 일단. 너무 많이 아프면 울고. 진짜 하기 싫어서 아예 포기할 때

> 도 있는데, 맞으면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맞으면 더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맞으면 더 잘 하고...
>
> (김아연, 여고1, 수영)

> 근데 가끔 보면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못하니까 차라리 때려서라도 실력을 키워줘라, 진짜 이런 때도 있죠. (근데 맞으면 운동이 더 잘 돼요?) 잘은 안 되더라도 맞기 싫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
> (김범상, 남고3, 태권도)

김범상 학생은 학생선수들이 선생님의 폭력이나 체벌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한다. 체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체벌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도자들의 체벌 이유로 이해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관행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임을 피력하고 있다.

지도자의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이다. 즉 운동 실력 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도자의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체벌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들게는 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운동 능력 향상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심한 체벌의 경험은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 네, 엄청 맞아봤죠. 초등학교 때는 진짜 50대 이상까지 맞아봤어요, 한 번에... 이제 기록이 안 나오면요, 어떤 선생님은 때리는 걸루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구요. 어떤 선생님은 말로 하시는 선생님...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때리는... (50대 맞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했죠, 진짜. 원래 맷집이 약해가지구요. 그거를 이렇게 맞으면서도 좀 쉬었다 맞고 쉬었다 맞고 막 이러면서 좀 피하다가 맞고 막 이러면서 하고. 저 땜에 다른 애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제가 좀 피하고 그러니까 니 안 맞으면 얘네 맞는다... 끝까지 저는 피했어요. 그래서 애들 맞고...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진짜 수십 번 그만둔다고 했는데,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작전을 짜서 집을 쳐들어와서 저를 끌고 가서 운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
> (안미수, 여고1, 양궁)

지금 고등학생이고 수영을 하고 있는 강남식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절의 체벌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저는 맞으면 더 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
> (강남식, 남고3, 수영)

이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절엔 운동을 계속하려면 그런 경험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더 심한 체벌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운동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핸드볼을 하는 안미수 학생은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친구관계에서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부 생활 중 가장 힘든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지도자의 심한 체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미수 학생의 경험은 학생선수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감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현실과 더불어 폭력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 지도자들의 권유와 설득, 강압으로 운동을 그만두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학생 역시 체벌로 인한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체벌에 대한 심리적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 그냥... 맞고요... 막 짜증나고 그러면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또 맞거나 기합 받으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네... 짜증나서 (연습을) 더 하니까... 근데 아무리 성적이 좋아져도 체벌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요.
>
> (이미숙, 여중2, 핸드볼)

성적 향상과 체벌이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체벌을 정당화하는 지도자들의 입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더구나 실력 향상과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와 별도로 지도자의 체벌은 폭력의 한 형태이자 인권 침해로서 학생선수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음에서 분석할 지도자의 감정적인 체벌의 일상화라는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지도자의 체벌이 학생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다.

② 체벌이 아닌 감정적 폭력의 일상화

지도자들은 자신의 폭력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체벌로 규정하지만, 학생선수들은 지도자들의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체벌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의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중학교 핸드볼 선수인 박해숙 학생의 지도자는 기혼여성으로 본인이 가정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학생들을 마치 자기 문제의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그냥 자기가 기분 안 좋을 때는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요, 걔가 뭐 좀 아프거나 그러면 좀 더 예민해져서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요, 못하게 하고 때리고... 그 때, 한 이 정도 되는 각목 같은 걸로요, 들어가서 엉덩이 계속 맞고요, 싸대기 맞고 발로 차고...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이와 같은 체벌은 학생들에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생선수들의 인성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도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학생들에게 화풀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게 된다. 농구를 하고 있는 여중생 임빛나 학생은 동계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기 한계를 못 넘으면 선생님께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때리시는데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 알면서 왜 때리는지 모르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빰을 때려요. 여자쌤도 뺨 때리고 남자쌤도 뺨 때리고... 피부가 약하다 보면 손자국이 나요. 멍 들어가지고. 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연속으로 8대나 때리고. 남자쌤이 때리면 아프잖아요. 저는 코뼈가 약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면 코뼈가 나간단 말이에요. 손도 크잖아요. 코뼈가 나간 건 아니고 나가기 직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 있거든요. 피하다가 고막이 나가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러면 안 때려야 되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삼일 지났다가 또 때려요... 비온 뒤에 땅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면 왜 미끄러지냐고 때리고,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또 맞아요. 등교하고 있는 애들 앞에서 발로 차고 뺨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애들이 왜 저러냐면서 너무 하다고 막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운동 마치고 한 마디씩 하거든요. 내가 너희

> 를 때려서 코치 자격이 짤려도 상관없지만, 너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될 것 아니가. 지가 때리는 것은 상관 안 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 더 맞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
> (임빛나, 여중3, 농구)

위 지도자의 경우 학생선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 위와 같이 닥치는 대로 얼굴, 엉덩이 등을 마구 구타한다고 한다. 임빛나 학생의 말처럼 기본적인 체력의 한계 때문에 되지 않는 점프 실력이 맞는다고 향상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체벌은 학생들에게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하게 한다.

즉 위의 두 사례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경기 실력 향상과는 무관한 지도자 개인 감정 변화에 따른 폭력의 일상화 혹은 군기 잡기 명목의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학생선수들은 꼭 필요한 체벌이 아닌 불합리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은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도자들의 학생선수들에 대한 감정적인 언어폭력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다. 아래와 같은 언어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은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운동 기술을 알려주면서 설명한대로 학생들이 움직여 주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욕설을 퍼 붓는다고 한다.

> 시발년아 니 그럴 거면 꺼지라면서, 그리고 니는 뭐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막 뭐라고... 진짜 싫고...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중학교에서 배구를 하는 민창선 학생은 하루 중 제일 힘든 시간이 운동할 때라고 할 정도로 현재 본인의 학생선수 생활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특히 훈련 중 선생님이 1대 1로 공을 아무렇게나 던지면서 받으라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이 때 잘 못 잡으면 “씹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계속하고” 종종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이 경험한 지도자의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은 지도자들의 체벌이 사실상 폭력과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과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운동 기술을 가르쳐 주고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경험에서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마치 지도자의 명령이나 의지대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기계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행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지도자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기술 지도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에는 소홀하면서 대신 체벌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아무리 선수라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고 막 때렸어요.
>
> (임빛나, 여중3, 농구)

농구를 하는 오석훈 학생은 오랜 기간 운동을 해왔지만 운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지도자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학생의 경우도 임빛나 학생이 말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운동이 힘들어질 때 못 뛰고 그러면 좋게 말하기보다 욕을 하거나 때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는 때리시고. 그러다보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요, 재미를 떠나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 하다가 거기서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만 두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한두 번 먹히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그걸 많이 쓰시고... 근데 코치선생님은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노동직이잖아요. 그니까 그 팀의 성적은 바로 코치의 그 학교에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 (자리...) 올해 당장 계약이 끝나느냐 바로 그 타격을 먹는 사람이 코치이기 때문에 그 학교 감독선생님보다는 코치선생님이 오히려 가장 많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잠이 들거나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서워요. (음?) 무서워요. 또 다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
> (오석훈, 남고3, 농구)

팀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코치의 고용 안정과 연계되는 구조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적 향상보다는 체벌을 통한 정신 무장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지도자들의 생각은 학생선수들을 일상적인 폭력으로 몰아가는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30명의 학생선수들을 인터뷰 한 결과 대부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유형 역시 매우 극단적이며 다양하게 드러난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10대들에게 따귀 때리기는 기본이고,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경험을 하는 학생도 다수이며, 발로 차고 밟는 등 소위 체벌의 경계를 넘어서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의 폭력적인 양태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의 폭력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그만두는 사례도 직, 간접적으로 분석된다. 9년의 운동 경력을 가진 오석훈 학생이 토로하듯이 “아침이 무섭다”는 표현은 일상화된 지도자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학생들의 삶을 피폐화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지도자의 일상적인 폭력의 명목 상 이유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의 현실화된 교수법의 부재, 스포츠계의 폭력을 통한 의사 소통 방식의 관행 등과 맞물려 지도자 개인의 감정을 분출하는 수준의 체벌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자의 폭력은 학생선수들에게 폭력의 서열화와 위계화를 학습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③ 지도자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구조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의 체벌을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불합리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회피한다. 학생선수들이 지도자 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체벌이나 신체적 폭력도 불가피하다는 한국 체육계의 왜곡된 관점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학생선수들 역시 정신 집중을 위한 단체기합,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혹은 실수로 경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가해지는 지도자의 체벌에 대해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영선수인 김아영 학생은 선생님께서 제대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데, 맞으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며 따라서 폭력이 효과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너무 풀어 놓으면 애들이 열심히 안하니까. 어느 정도 해줘야 애들이 막 맞으면 맞고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 낫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
> (김아연, 여고1, 수영)

농구선수인 서지영 학생은 체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운동시간에 집중하지 않거나 애들끼리 사이가 나빠질 때 체벌을 받으며, 체벌은 주로 체력운동의 횟수나 강도를 높이라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가끔씩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한다.

> 동의라기보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선생님들한테 혼이 나고 이렇게 해서 또 애들이 열심히 더 안 맞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를 지나치면 안 되겠죠.
>
> (서지영, 여고3, 농구)

"도를 지나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서지영 학생의 체벌에 대한 인식은 지도자의 체벌이나 폭력을 받아들이는 체육계의 일반적 관행과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도 "운동하다가 일방적으로 쪼아 붙이는 것"은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도자에게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인상을 쓴다던지 대답을 안 한다던지 저항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벌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체벌에 학생선수들이 대응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체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 전에는 해본 적 있는데요. 근데 해도 돌아오는 건 보복이라거나 (보복? 어떻게 보복?) 오히려 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더 체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뛰는 걸 더 오히려 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시키거나...
>
> (오석훈, 남고3, 농구)

반항하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러죠. 더 맞거나 더 운동량 많아지거나...
(구영철, 남고 3, 수구)

오석훈 학생은 오랜 기간 운동을 해오면서 폭력은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일상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부당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항해 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또 다른 체벌과 운동량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영철 학생 역시 오석훈 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위계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저항은 또 다른 폭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지도자의 폭력에 대항하라는 어설픈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선수들은 인격적인 모욕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지도자에 대한 폭력 근절의 요구는 곧 운동을 그만두는 것과 연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종종 부모님에게 지도자 폭력에 대해서 알리고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지도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대개는 학생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옮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체벌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체벌로 인식하도록 설득할 때, 지도자에게 자기 자식을 맡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곤란한 상황은 학생선수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체벌이 운동 실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라는 의식 전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본다.

나. 학습된/허용된 선배의 폭력과 위계 구조의 재생산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을 지도자의 폭력을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하고 내면화할 뿐 아니라, 폭력 문화를 학습하게 되고, 피해자인 학생선수들은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어 폭력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폭력의 재생산은

지도자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보다 때로는 더 심각한 운동선수들 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심층면접에 응한 여중 2학년 김연희 학생선수의 경우 선배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한 이성하, 심미란 학생은 본 연구팀의 홍보 자료를 보고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사례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위 사례 모두 여학생들이라는 점, 그리고 모두 양궁을 하는 선수들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아래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지도자의 폭력을 어떻게 학습하게 되고, 지도자에 의한 폭력과 선배에 의한 폭력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반응과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① 지도자로부터 학습된 선배의 폭력

주로 선배들이 후배 선수들에게 폭력이나 기합을 주는 경우는 지도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직후 후배들에게 화풀이 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도자들은 기합이나 체벌을 가한 후 운동부의 주장 혹은 가장 높은 학년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체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체벌의 방식을 통하여 폭력의 서열화와 위계화가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두 사례는 지도자를 대신한 선배들의 공식적인 기합과 체벌의 일상적인 관행에 관해 말하고 있다. 지도자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받은 선배들은 그들의 분노를 후배들에 발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운동 분위기가 안 좋거나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선배들이 집합하라고 하고...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 골프)

> 선생님한테 선배가 혼났을 때 정말 선생님하고 똑같이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 발로 밟고 그러지요.
>
> (오석훈, 남고3, 농구)

위의 오석훈 학생은 본인은 현재 고3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선배들로부터 폭력, 체벌, 기합을 받는 일 등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났

다고 밝히고 있다. 선생님에게 체벌 혹은 기합을 받은 경우 후배 학생선수들은 일종의 가중체벌로써 선배들에게 지도자로부터 받았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체벌을 또 경험하게 된다. 한편 지도자들의 이유 없는 감정적인 체벌의 형태가 선후배 관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해숙, 장유미 학생은 구기 단체 종목을 하기 때문에 선배들과 훈련 및 시합 때 자주 부딪히게 된다. 그런 경우 종종 자기 혼자 게임이 잘 안 풀려 인상을 쓰거나 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경우 선배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그것이 체벌 혹은 기합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 너 운동할 때 왜 인상 썼어. 이러면 뭐 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요, 언니들도 막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가져와서 막 때리고 운동장 뛰게 하고...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 운동할 때 처음에 잘못했다가 계속 잘못 주거나 그리고 또 얼굴 인상 찌그린다던가 말 안 듣거나 그러면은 저 혼자 인상 찌그리는 걸 언니들이 보기 때문에...
>
> (장유미, 여중3, 농구)

또한 지도자들이 운동 기술 지도를 수행할 때도 선배 중심, 실력이 월등한 아이 중심으로 지도하고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방식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공식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엄지숙 학생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가 아닌 선배들이 뒤처진 후배들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선후배 간의 폭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배들 훈련을 못 시켰다고 일차적으로 지도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주장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 머리 때리는 선배도 있고. 그냥 아무 데나 때려요. 온 몸이 무기에요. 몽둥이 갖고 때리는데,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울컥해서 선배들이 울면서 때릴 때가 있거든요. (울컥?) 저희 땜에 맞았을 때. 저희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주장이니까 선생님이 일대일로 불러가지고...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 골프)

> 보통은요, 주장 언니가 많이 겁나고... 선생님께서 보통은 저희한테 직접 터치

> 를 하는 게 아니라 주장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시켜요.. 그래서 그런지 주장언니가 아무래도 잡죠. 이렇게 당번 같은 것도 잘 언니들이 정하고...
> (김희주, 여고3, 핸드볼)

김희주 학생 역시 엄지숙 학생과 유사하게 지도자로부터 후배 관리, 지도 등의 권력을 이양 받은 선배들에 의해 행해지는 후배에 대한 폭력은 지도자의 방조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제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위계 구조상의 폭력의 반복에 대해 오석훈 학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니들 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걸 똑바로 못하느냐. 그래갖고 올챙이가 개구리 돼서 올챙이 다시 괴롭히고. 그 올챙이가 다시 개구리가 되고 그 올챙이를 괴롭히고.
> (오석훈, 남고3, 농구).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도자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서열화가 폭력문화와 결합되는 경험을 한다. 피해자인 학생선수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로서 받은 고통을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로 변모함으로써 풀고 지도자로부터 쌓인 폭력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를 후배들에게 푸는 일종의 폭력의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서열화는 아무 이유 없이 후배들을 괴롭히는 선배 가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고교 선수 운동 집단의 사회화의 한 수단으로써 구타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있다(임수원, 2005).

실제로 본 심층면접 결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묻지마 폭력”의 반복이 지도자에 의한 폭력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공식적이고 공개된 훈련공간에서 어쨌든 “훈련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지도자 개인에 의해 학생선수 집단에게 가해지는 폭력보다 비공식적으로 선배개인이 후배개인에게 혹은 선배집단이 후배집단, 후배개인에게 반복적으로 가하는 폭력이 피해자 개인에게 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양궁 선수인 여중생 김연희 학생의 경우 선배의 아무런 이유 없는 반복적인 폭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고 지금은 운동을 그만 둔 상태이다.

> 막... 머리 이렇게 밀거나 심할 때는 발로 차고... 제 동기는 막 멍들고 정강이. 막 심할 때는 저랑 동기 2명 화장실 데려가서 막 때리고.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이렇게 잡고 막... (근데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 안했어요?) 그 언니가 학교에서 제일 잘했어요, 난 별로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 언니를 더 챙기니까.
>
> (김연희, 여중2, 양궁)

김연희 학생은 왜 한 선배가 본인은 체벌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에 지각하거나 언니들이 자신의 행실이 좋지 않다고 보아서라고 대답하고 있다. 김연희 학생과 유사하게 럭비를 하는 황명식 학생도 한명의 선배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체벌을 경험하였다.

> 노는 시간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요, 그걸 갖다 엄청 욕을 하고,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해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나고요. 1, 2학년들이 실수를 하면은 막 그걸 갖다가요 끝까지 계속 욕을 하고요, 욕. 끝나고 서도 막 욕을 해요 계속... 괜히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옷 갈아 입을라고 내려오면요 와서 때리기도 하고요, 못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어디를?) 교실에요, 수업하러 가야 하는데...
>
> (황명식, 남중2, 럭비)

황명식 학생은 집이 멀어서 합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선배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혔으며, 그 선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운동을 그만 두었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다. 황명식 학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중1 때부터 중2 때까지 한 선배로부터 반복적인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폭력을 수행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배에 의한 이유 없는 폭력은 아무리 일상적 폭력에 단련된 학생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참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김연희 학생의 자살 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운동계의 지도자에 의한 폭력은 실력 향상과 관련된다는 일종의 명분이 있는 폭력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선배로부터 받는 폭력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폭력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후배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다. 김연희 학생의 경우 다른 도움을 청하기보다 자살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나보다 실

력이 우수한 선배가 내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대응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해결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스포츠계의 경쟁주의와 서열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즉 본인이 한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지도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김연희 학생에게는 더욱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으며, 따라서 결국 자살 이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로부터 학습된 선배들의 일상적 폭력의 허용과 묵인은 학생선수들의 합숙, 기숙사 생활에서 선후배 간의 위계 서열화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복 재생산된다.

② 합숙생활 내 선후배 간 위계서열화

합숙을 통해 생활단위를 함께하는 학생선수들 간의 위계서열화와 일상적인 폭력의 반복은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의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일종의 군기 잡기라는 명목으로 위계 서열화를 통한 폭력과 강요된 임무 등이 후배 선수들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양궁선수인 이성하 학생은 선배의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리 연구팀에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여 본인의 경험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다.

> 만약에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막 이제 야간훈련도 끝나고 와서 되게 빨리 빨리 해요. 그러면 대충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막, 뭐라 그러지? 이거 방 쓴 거냐고, 닦은 거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구요... 사람들 있으면 훨씬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진짜 뭐 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빨래를 개서, 한참 장마철이니까 빨래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그냥 3학년 언니는 조용히 그냥 빨래통에 갖다 넣어주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근데 (2학년 언니는) 바닥에 집어 던지구요, 저한테 집어 던지구요, 빨래 냄새 난다고 막 그러구요, 그러면서 빨래 잘못 들어오면 그것도 던지구요, 막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
> (이성하, 여고1, 양궁)

심미란 학생 역시 이성하 학생과 선배의 폭력 때문에 괴롭다고 우리 연구팀에 직접 연락하여 인터뷰에 참여해 준 사례이다.

> 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고장나가지고 또 밀리는 거 빌려 주는 거 있잖아요.(벽으로 던진 게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서?) 네, 그니까 창틀에 그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어제 썼는데 왜 지금까지 안 치웠냐고 집어던졌어요.
>
> (심미란 여고1, 양궁)

미란 학생은 이렇게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선생님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하면 언니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학생선수들만이 생활하는 합숙 공간에서 선후배 학생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피해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묻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의 두 사례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진행된 인권교육 현장에서 본 연구팀이 배포했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 사례를 구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팀에 전화를 걸어 면접이 성사된 사례이다. 두 학생들은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라는 명목으로 선배들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 주어야 하는 후배 선수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신체적 폭력을 넘어서서 상해도 가능한 칼을 던지는 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육상선수인 정한수 학생의 경우 지도자들로부터 폭력은 거의 없는데 합숙 공간 내에서 선배들의 폭력이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

> 네. 진짜 억울하죠. 운동을 못해서 때리거나 운동할 때 개길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래서 맞는 거면 저는 그냥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샘한테 깨지고 나서 기분 안 좋은데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방에 가서 또 대가리 박고 있다가 또 그냥...
>
> (정한수, 남고3, 육상)

정한수 학생 역시 선배들이 왜 자신을 때리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신발을 빨거나 과자 사오는 것과 같은 심부름을 하지 않았을 때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박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운동과 무관한 선배들의 폭력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선수들은 선배들의 폭력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음 단락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③ 선배들의 폭력에 대한 후배들의 대응 양식

학생선수들은 지도자 폭력에 대한 묵인 혹은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배들에 의한 폭력의 부당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선배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제는 첫째, 선배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자 당사자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연결된다. 둘째, 선배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 꼭 운동 포기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부모들 역시 지도자 폭력보다는 선배의 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배 폭력에 대해서도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참고 넘기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배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청했던 이성하 학생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위한 대응 방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저희가 한 번은 이제 개기기로 했어요. 좀 말하는데도 막 이렇게(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어요. 막 하면서 그걸 다른 운동부 가서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부 언니한테 가서. 다른 부 언니들도 저희가 인사를 하면 인사 다 씹구요... 그냥, 그니까 조용히 말하면, 좋게 말하면 저희도 좋게 했구요, 막 되게 기분 나쁘게 하면 저희도 말을 안 하구요...
>
> (이성하, 여고1, 양궁)

황명식 학생은 중1 시절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던 중3 선배가 졸업하고, 그런 폭력을 보고 배운 중2 선배로부터 유사한 방식의 폭력을 또 경험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저번에요 힘 쎈 선배가 들어왔는데요, 싸움을 좀 했어요. 저한테요 때리고. 그런데도 눈을 맞아가지고 눈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부었어요. 그것 때문에 부

> 모님이 보시고 '왜 그랬냐?'고 말을 해서 그 선배 코치한테 말해서 혼나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요?) 아, 더하죠! (그래서요?) 네, 그냥 내비두는 거 때리면 맞고 끝나면 그냥... (근데 왜 코치님들이 그런 걸 컨트롤 하지 못하죠?) 없을 때, 몰래몰래 괴롭히니까 모르죠.
>
> (황명식, 남중2, 럭비)

위의 사례는 부모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경우인데, 피해자인 황명식 학생은 그로 인해서 선배가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미안한 맘이 들었다고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반복적인 괴롭힘에 또 다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황명식 학생을 괴롭히는 선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괴롭히던 선배가 졸업하더라도 또 다른 선배가 나타나는, 그리고 후배 괴롭힘을 보고 배운 또 다른 선배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지도자로부터 폭력을 배우는 과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합숙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후배 관계에서 역시 폭력이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이성하 학생의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선배의 부당한 대우에 맞대응을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황명식 학생의 사례는 상처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코치가 선배 학생에게 경고하는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개입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배들에 대한 집단 보복이 두려워 대응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도자들이 선배 폭력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조할 때 피해자 학생들이 가해자 선배에게 대응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배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김연희 학생의 선배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끌다 끌다가 결국 그 멍들 때 그 동기 어머니가 상처를 보셔서 감독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또 물어보셔가지고, 그 언니가 때렸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언니보고 니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르라고 너 또 때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또 하겠다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약을 먹고...
>
> (김연희, 여중2, 양궁)

김연희 학생은 본인의 경험을 학생선수 동료인 친구하고만 공유했고, 동료 부모님의 문제제기로 지도자가 선후배 간에 지속적인 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묵인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은 선후배 간의 폭력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폭력에 의한 눈에 보이는 상처로 학생의 부모가 폭력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자가 선후배 간의 폭력을 방지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본인들 역시 학생들에게 감정적이고 반복적인 체벌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선수 시절 경험한 스포츠계의 위계 서열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은 미비하다.

이상에서 지도자 폭력의 일상화와 묵인이 학생선수 선후배 간의 폭력의 위계서열화 및 일상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지도자로부터 폭력을 학습 한 피해자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고, 그 후배 피해자가 선배가 되면 또 다시 후배들에게 폭력을 수행하는 지도자-선배-후배 간의 폭력의 연속선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스포츠계 전체의 의식 변화와 체육 훈련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등과 같은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스포츠계에서 여자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성폭력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황정임, 2007)되면서, 학생선수들의 인권문제의 한 측면으로써 폭력과 함께 수반된 성폭력 문제의 구조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면접조사에서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배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 경험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극단적 성폭력(강간)을 직접적으로 경험

한 학생선수는 없었다. 하지만 훈련과정 상에서 빚어지는 지도자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 즉 운동을 위한 필요악으로 체벌을 받아들이듯 지도자의 성폭력 역시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받아들이거나 선후배간의 성폭력을 장난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묵인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또한 여자 학생선수들은 훈련과정에서 지도자들에 의한 체벌의 성격을 띤 성폭력을 주요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동성 선배에 의한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례로 유형화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아래에서는 성폭력에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학교운동부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러한 성폭력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훈련이나 체벌과 혼동되는 성희롱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흔히 훈련과정에서 체벌이나 훈련방식의 하나로 섞여서 발생한다. 남자 감독 혹은 코치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여자 학생선수들의 몸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만지는 사례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학생선수들은 성폭력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박해숙 학생은 지도자 중 코치(여성)의 심각한 폭력과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남자 감독 선생님의 폭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은 육체적인 성희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운동할 때 감독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수비는 이렇게 하라면서 한 명 이렇게 나가서 공격하고 감독 선생님이 수비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쩔 때 막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여기 만지고 가슴 만지고... (옆구리나 가슴을 만져?) 네. (수비 동작을 취하면서?) 수비 이렇게 하면서요. 만지는데 한 번 쯤은 우리가 실수로 만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할 때요, 계속... 정말 기분 나빠요.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박해숙 학생은 훈련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도자의 성폭력이 한 두 번이 아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폭력의 한 형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골프를 하는 엄지숙 학생은 선생님의 개인 컨디션에 따라 운동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희롱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 감독이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이제 쓰다듬는다거나 그런 게 있더라구요. 내가 "발로 차삐라" 면서. 우리 인제 모르니까 "발로 차삐라" "어찌 차는데" 이라면서...
>
> (엄지숙, 여고2, 배드민턴 & 골프)

위의 두 여학생 사례를 통해 훈련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의도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학생선수들은 분명히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도자가 학생의 운동 기능을 지도할 때, 어깨를 만지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몇몇 학생선수들은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거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행위-수인한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김아연 학생의 경우 성희롱이 무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운동 종목의 특성상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맨살을 꼬집는다든가 등짝을 때린다거나 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기분은 안 나빴는데요. 그냥 꼬집고 때릴 때도 많아요. 당연하다.. .(손으로? 아무 데나요?) 잘 좀 하라구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 그런 거니까. 그게 성희롱이라고는 안 느껴져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슴이나 엉덩이 이런 데...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팔 같은 경우는 괜찮다...) 다른 데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
> (김아연 여고1, 수영)

김아연 학생 입장에서 만약 지도자가 엉덩이나 가슴을 만졌다면 그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은밀한 육체적인 부위가 아닌 이상 만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에 의해서 맨살 부분이 꼬집히거나 맞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훈련을 위해

서 필요한 체벌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몸을 부딪치면서 운동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한편 지도자의 권위를 통해서 훈련 과정에서 뿐 아니라 합숙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성희롱을 가하는 지도자 역시 존재한다. 이런 경우 성희롱은 지도자와 학생선수들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면서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다. 즉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의 성희롱이 훈련의 일종인지 친밀함의 표현인지 성희롱인지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 부당하고 불편한 감정을 인식한다. 핸드볼 선수인 박해숙 학생은 감독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일상적으로 몸을 만지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감독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다양한 내용의 성희롱을 밝히고 있다.

> 우리가요, 밥을 학교에 있는 합숙 그런 곳에서 먹어요. 그렇게 먹고 있으면 감독 선생님 막 와서요. 막 우리 막 훑어보고 우리 무릎 위에 막 앉고. 그리고 막 좀 이상하게 막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우리 보고 막 흰머리 뽑아라. 다리 주물러라 어깨 주물러라. 우리가 운동 이 때까지 쉬는 날 없이 맨날 했단 말이에요. 일요일도. 그래서 맨날 했는데 오늘 하루만 (소풍) 가자고 그랬는데, 벚꽃 필 때 그때 가자고 했는데. 감독선생님이 그러면 다 뽀뽀를 하고... 뽀뽀를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볼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죠. 언니들이 다 해라 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좀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감독 선생님이 그럼 한 명씩 다 해라 그래서... 그때가 10명인가 그 정도 됐는데, 다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안 하려고 계속 있었는데 감독 선생님이 안 하면 안 간다... 안 하면은 운동 더 빡세게 야간까지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위의 지도자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선수들을 만나는 어떤 공간에서든 성희롱을 가하는 가해자로 볼 수 있다. 훈련 시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합숙 공간에서는 침대에 누운 채 흰머리를 뽑아라, 다리를 주물러라, 허리를 주물러라 하고 요구하거나 뽀뽀를 하지 않으면 훈련을 더 강도 높게 시키겠다며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성희롱은 여자 학생선수들이 매우 흔하게 겪는 경험이면서 학생선수 스스로 명백하게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지도자와 여자선수와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혹은 “아버

지와 딸"과 같은 관계로 규정되고, 지도자는 단순히 운동 지도자를 넘어서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이자 권위자로서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지도자의 신체 접촉 요구는 우리은행의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사례처럼 성폭력이 아니라 "딸 같아서" 한 친밀함의 표현으로 포장되고, 학생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는 느끼지만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선수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부당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성희롱 역시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운동선수로써 생활하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

나. 폭력을 수반하는 동성 간 성추행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자 학생선수들의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은 또 다른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남자 학생선수들은 합숙이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옷을 벗고 체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배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였던 럭비선수 황명식 학생이 겪은 동성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이다. 황명식 학생은 선배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훈련 후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성기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연구자로부터 구체적인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없다고 답하다가 인터뷰 말미에 본인이 당한 가장 심한 폭력 경험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성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는 점이다.

> 막, 이게 [잠시 멈춤] 거기를 막 잡아 뜯는다던가, 막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요[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막 쉬는 시간에 내가 누워있으면요, 와서 하고요. 장난치고 싶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반년이요.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뇨, 처음에는 잘 해주시다가요. 좀 아는 사이 되니까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되게 살살, 심하게 하지는 않고요. 장난으로 그냥 몇 번 (그럼 '심하게' 하고 '약하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랫동안 쎄게 한다든지 약한 거는 잠깐만 한다든지...
>
> (황명식, 남중2, 럭비)

동성 선배들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해 온 피해자 황명식 학생은 선배의 이유 없는 폭력과 성추행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황명식 학생에게 그 행위는 성추행이기보다는 선배가 본인에게 가하는 다양한 폭력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성폭력과 성에 대한 의식이 낮다는 점과 아울러, 동성 간에 성폭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동성 간의 성추행은 일종의 폭력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장난, 놀이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동성 간의 성추행은 선배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종종 지도자들 역시 성추행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남자학생들끼리 합숙생활을 하는 배구선수 민창선 학생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성추행 경험을 밝히고 있다.

> 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냥 몸 만지는데요. (어디를 만졌어요?) 여기 중요부위 같은데요. 아무 때나 쉴 때 와서 그러는데요. 아무 때나 그러는데요. 선배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전통인가요?) 네. (선생님은 아세요?) 선생님도 가끔씩 그러시는데요.
>
> (민창선, 남중 2, 배구)

위의 사례에서 남자 중학교 배구부의 전통적인 체벌의 한 방식으로써 성추행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자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조하거나 혹은 직접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군대와 교도소 등 남자들만이 격리되어 있는 집단에서 행해지는 동성 간의 성추행, 성폭력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양상(권인숙, 2006)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 간 발생하는 성추행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표현하기보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행위”로 무화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역으로 이는 자신의 경험이 분명 부당하고 참기 어려운 경험이었음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 양식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보다 성폭력에 대해 더 민감하며, 성폭력은 폭력보다 더 부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든 그들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에서 벗어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남자 감독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해서 여자 코치에게 상담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알리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인다. 박해숙 학생은 성희롱 경험에 대해서 같은 여자 코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다 말할 사람이요... 그걸 코치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코치 선생님이 그거 그냥 실수라면서요. 니네가 계속 감독 선생님이 니네 안으려고 하면은 니네가 막 피하라고... 언니들도요. 다 그냥 감독 선생님 부르면은 좀 떨어져서 있고, 계속 피해라고... 언니들이 말했어요. 그때 부모님들 다 욕하고 끝났어요.
>
> (박해숙, 여중2, 핸드볼)

코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독에게 문제를 알리거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감독의 성희롱을 받지 않도록 피하고 조심하라는 것을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도자, 감독/ 코치 사이의 위계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코치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윗사람인 그리고 남자인 감독에게 학생들의 성폭력과 관련한 개선안을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운동 지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은 이와 같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황명식 학생의 경우도 동성 선배로부터 받은 성추행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고 한다.

> 그걸로 안 되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코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코치님이 또 처벌을... 그냥 운동 못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돌려보내고 A4 용지에다 뭐했는지 꽉 채워서 가져오라고 그랬었어요. 아, 괜히 말해봤자 뒤에서 맞거나 보는 데서 또 욕 듣거나... 그런 거 없는 거 같은 데요. 방법이 없어서요. (방법이 없었어요?) 네, 잘 보일려고 해도 그러고 안 해도, 괴롭히는 건 똑같아요.
>
> (황명식, 남중2, 럭비)

지도자로부터 반성문을 쓰는 벌을 받은 가해자는 당분간은 황명식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없고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

성희롱 피해 학생인 박해숙 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자 코치나 선배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아서 피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속적인 성추행을 경험한 황명식 학생의 경우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코치를 통해 가해 학생을 처벌했지만, 가해 학생의 성추행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선수들 간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특별한 해결책이 없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선수 집단 내에서 성폭력과 폭력이 발생하는 권력 메커니즘은 유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즉 학생선수들의 집단 내 폭력과 성폭력은 시·공간적으로 연관적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폭력 가해자가 곧 성폭력 가해자 혹은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나타난다. 또한 운동 집단 내의 성폭력은 폐쇄적이고 위계권력이 작동하는 운동 집단의 폭력 문화와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박탈,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실태가 앞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더욱 생생한 피해의 경험을 들려준다. 또한 이 절에서 분석한 폭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유지 기제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현행 학원체육의 구조를 토대로 발생,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선수가 일차적으로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만 규정되는 구조 안에서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학습권 박탈과 학습능력 저하로 인한 삶의 제약과 대안 부재, 폭력과 성폭력 발생의 중층 구조 등이 분석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권 침해와 대안 부재

학생선수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 침해는 폭력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주요한 토대이자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배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즉 시합과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과 이에 대한 구조적 지원의 부재는 학생선수들의 학업 능력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이러한 현실은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이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학습권 박탈로 인해 야기되는 운동 이외 삶의 대안 부재는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또 다른 인권 침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② 폭력의 일상화와 위계 구조의 재생산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이 매우 일상적이며 이는 학생들의 훈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용인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험 속에서 그러한 폭력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력 향상과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사기나 자존심 저하를 초래하여 운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도자의 체벌은 명분상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종종 감정의 폭발이나 학생선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도자의 폭력은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운동 집단 내에 지도자-선배 학생- 후배 학생 간의 가해자-피해자 연결고리의 악순환이 재생산되고 있다.

③ 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구조

지도자와 학생선수, 그리고 학생선수들 간에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성폭력은 운동선수 집단의 위계화된 폭력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운동현장에서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훈련의 양상,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 선후배 간의 폭력이나 체벌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로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상호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는 지도자-학생 또는 선배-후배라는 위계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인하

여 매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 피해가 현행 체육정책과 제도라는 구조적 틀 안에서 발생,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역시 각각의 문제가 갖는 특성을 감안한 개별적 정책과제와 아울러 인권 침해 발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 연구

Ⅳ.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를 살펴본다. 각 나라별 지형,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맥락, 정치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권문제를 한국의 스포츠 인권상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스포츠와 인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문화에서 스포츠와 인권 이슈들의 공통된 형태에 대한 깊이 있는 비평적 비교 분석과 이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미국

1) NCAA의 사례

미국에는 현재 3,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으며 이 중 대교경기 프로그램을 운영, 지휘, 감독하는 조직체로 828개의 회원교를 지닌 NCAA(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규모면이나 기능 수준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NCAA에 가입된 학교들은 크게 디비전(division) 1, 2, 3으로 나뉜다. 보통 디비전 1의 대학들은 규모가 크고 거의 모든 운동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동성적도 좋은 편이다. 디비전 1에 비하면 2와 3은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운동 종목 역시 디비전마다 조금씩 다르다.

NCAA의 종목을 살펴보면 가을스포츠(크로스컨트리 남녀, 필드하키 여, 풋볼 남, 축구 남녀, 배구 여, 워터폴로 남), 겨울스포츠(농구 남녀, 볼링 여, 펜싱 남녀, 체조 남녀, 아이스하키 남녀, 소총 남녀, 스키 남녀, 수영&다이빙 남녀, 실내 트랙&필드 남녀, 레슬링 남), 봄 스포츠(야구 남, 골프 남녀, 라크로스 남녀, 조정 여, 소프트볼 여, 테니스 남녀, 실외 트랙&필드 남녀, 배구 남, 워터폴로 여) 등 23종이 있다. NCAA에 의하면 해마다 38만 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23개의 종목에서 1,280여개가 넘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진학하고 있다.

가. 학습권 관련 대책

NCAA 운영세칙 14조 3항는 운동선수의 재정적 원조 및 선수자격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항은 1983년 전미 NCAA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원래 이것은 NCAA 회의에서 48번째 제안이었기 때문에 48안(proposition 48)으로 불리게 된다. 48안의 내용은 운동선수들이 SAT에서 총 1,600점 중 700점 이상을 얻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점으로 치면 D 정도의 수준이다.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 첫 해인 1986년에는 거의 400명에 가까운 신입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구와 농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모든 신입생 중 축구 선수 10%, 농구 선수 중 13%가 새로운 규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부적격 선수들의 대다수(85%)는 흑인이었다.

그러나 48안이 많은 반대에 봉착했음에도 1989년 새로운 법안인 42안을 수정안으로 내놓게 된다. 42안은 과거 48안보다 학업적격성에 대한 판정기준을 훨씬 상향 조정한 것으로서 인종적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대학 대교경기의 인기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많은 선수들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 대교경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42안은 폐지되고 48안으로 다시 회기하게 된다.

48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면은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기 위한 ACT와 SAT 테스트의 사용이다. ACT(약 800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체육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단체)에 의한 조사는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115개의 전문대학과 대학을 개관하려고 시도했다. ACT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46곳만이 모아졌으며 이 연구결과는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NCAA 개혁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ACT 연구는 자주 인용되는 동시에 자료 분석의 부적절, 자료의 질 등 '심각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평점이 높고, 백인이 흑인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관련 운영세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세칙(operating bylaws)

14조. 자격: 학문적 성취와 일반적 요구
(Eligibility: Academic and General Requirement)

학생선수가 적용 가능한 내규로 규정된 자격 요구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서 그 학생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선수는 학업 성취에 있어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및 수준을 유지토록 한 규정이다.

17조. 시합과 연습 시즌(Playing and Practice Seasons)

체육특기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하여 방해되는 요인 즉 경기의 참여 한도와 경기 시즌의 기간, 정기 시즌의 경기의 수, 시기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목별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8년 8월 1일부터 NCAA에서는 Division 1, 2에 따라 각각 16개, 14개의 핵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DIVISION 1	DIVISION 2
16 핵심과목	14 핵심과목
영어 4년	영어 3년
수학 3년	수학 2년
자연과학 2년	자연과학 2년
영어, 수학, 과학 중 택일 추가 1년	영어, 수학, 과학 중 택일 추가 2년
사회과학 2년	사회과학 2년
이외 과목 선택하여 4년	이외 과목 선택하여 3년

시험점수 ACT(American College Testing)는 SAT와 같이 미국대학입학시험이다. ACT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적 사고력 시험 과목별 36점이 총점이고 4과목 점수의 총합이 68점을 넘어야 한다. SAT는 Writing을 제외한 Critical Reading, Math의 합 1,600만점 중 820점을 넘어야 한다. GPA(Grade Point Average)의 경우 Division 2는 2.0을 넘어야 한다. Division 1의 경우 SAT나 ACT의 점수에 따라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입학 기준만을 보면 누구나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만

큼 낮은 점수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기준이므로 학교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 측에서는 학업 성적은 뒤떨어지지만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할 경우 곧 성적 실패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하게 된다.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코치들은 그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NCAA와 더불어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Advisors for Athletics(N4A) 또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급별 프로그램으로 Albany대학교의 Individual study plan web report, career action plan program, progress report 프로그램과 Gonzaga대학교의 connection with freshman, establishing relationship/communication with Faculty 프로그램, Long Beach주립대학의 academic counseling services, encouraging graduation of former student-athletes 프로그램 등이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대학에 들어와 학점관리 및 학업계획 상담, 작문을 포함한 기초 보충수업 제공, 상담뿐 아니라 졸업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나.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대책

선수들 간에 괴롭힘(hazing)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수, 주장, 학교행정가, 코치, 단체 등의 협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선수들 간에 잠재적으로 괴롭힘의 위험이 있고, 폭력적인 운동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정책,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긍정적 팀빌딩(team building)이 필요하다. NCAA는 1,000곳이 넘는 학교 운동부에 학생선수들의 보다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을 만들어서 채택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외국에서도 그 시작은 올림픽 관련 스캔들 등이 언론매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야기되었다. 초창기 영국의 스포츠전문가 사이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져 몇몇 학생선수의 부모들은 성적 착취와 관련된 코치들에 대해 스포츠에서 퇴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Brackenridge et al., 2000).

미국 대법원과 교육부에서는 성희롱이 Title Ⅸ에 의해 금지된 성차별적 형태임

을 인식하고 2001년 1월 교육부는 “개정된 성희롱 안내서: 학교지도자, 다른 학생들, 혹은 제3자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을 출판하였다. Title 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별에 의해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데 제외되거나, 혜택을 제한한다거나 차별 받지 않을 것이다(1972년 교육개정안 901(a)항)

일반적으로 보상(예: 경기출장 시간의 증가)과 적대적 환경(예: 벤치시간의 증가)에 놓였을 때 성희롱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희롱의 다른 형태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로 발생한다.

·성적인 사진을 붙여놓는 경우 ·팀원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적’농담이나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 ·목소리가 들리는 근거리에서 학생들의 다른 스텝에 대한 성적인 언급을 하는 스텝이나 학생선수를 묵인하는 경우 ·팀원들이나 동료들을 묘사할 때 모욕이나 경멸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기 중 잦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성적의도가 없는 접촉이나 행위는 Title Ⅸ 금지조항에 성희롱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예) 골을 넣은 학생을 동료선수나 지도자가 껴안는 행위

또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생들의 교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행위인지 판단
· 행위의 형태, 빈도, 지속성
· 성희롱 의심을 받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정체성
· 연관되어있는 개개인의 숫자
·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 학교의 규모와 사건발생장소와 성희롱이 일어난 주변 맥락 파악
· 학교에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
· 성희롱이 아닌 Gender에 기초한 경우

2) NFHS의 사례

가. 학습권 관련 대책

미국의 NFHS(National Federal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전미 고등학교 스포츠 연맹)에서는 코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코치의 중요성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대회에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코치의 중요성은 학업의 중요성을 선수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공부와 운동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대학에 갈수 있다는 식으로 공부와 운동의 이분법적인 분리가 아닌 스포츠와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를 위해 학점 미달일 경우에는 시합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FHS에서부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온 학생선수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NCAA에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따라서 NCAA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선수상은 학업과 운동 두 가지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에게 수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주에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대책

NFHS는 괴롭힘(hazing) 관련 정의와 예시, 폭력상황에 대한 대처법, 폭력 발생

의 원인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도자용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학교운동부 현장에 보급하고, 신고할 경우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두고 있다. 또한 NFHS에서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Dr.Lee Green, Baker University Sportslaw Publishing.com/splnewsl.htm).

㉠ **성적 농담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 혹은 학생선수 앞에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언어 혹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를 포함한 어떠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 앞에서 명백한 성적 표현 혹은 음란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지나친 사적 대화를 피해야 한다.

㉣ **과도한 사적 편지, 선물 등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과도한 사적 편지, 이메일 혹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복장이나 구체적인 신체적인 특성과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

㉥ **신체 접촉 최소화**: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 **단둘의 차량 동승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를 집에 혼자 혹은 단체일지라도 차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 **학교 밖에서 1대1 만남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 밖(특히, 학생선수의 집)에서 학생선수와 1대1 만남을 피해야 한다.

㉨ **단체여행 시 보호자 동행**: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함께 단체 여행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성인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 **사적인 데이트 절대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와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

3) IMG 아카데미의 사례

미국의 IMG 아카데미는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스포츠 전문 교육 기관으로써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및 교육 시설을 바탕으로 뛰어난 운동선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카데미 캠퍼스 내에 두 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46개주, 외국 80여개 국가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등록학생은 매년 12,000명 이상이 된다.

IMG 아카데미는 1978년 운동 훈련과 교육을 통합한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 테니스 전문 기숙사 학교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1993년에 골프, 축구, 야구 그리고 농구 아카데미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총체적인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IMG 아카데미를 구성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개인종목(테니스, 골프), 단체종목(농구, 야구, 축구) 그리고 국제 수행 기관(International Performance Institute(IPI)과 교육기관 Pendleton 학교와 University of Miami이다. IMG 아카데미의 졸업생 중 85%가 대학에 진학을 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장학금을 수여한다.

학업생활에 있어서는 운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업 성취 및 발전을 중요시한다. IMG 아카데미의 학생은 IMG 아카데미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는 팬들튼 학교(Pendleton School), 근교에 있는 브래든튼 학교(Bradenton Preparatory Academy), 성스테반 감독학교(Saint Stephen Episcopal School) 중 한가지 학교를 선택하여 운동과 학업을 병행한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저녁 때 튜터링에 참여하고, 주당 4번의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졸업 후 과정(post graduate program)으로 University of Miami에서 영작, 경제학, 스포츠 경영 등의 대학교 과정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이들의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코치들은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과 매일 만나 학업 진도와 운동 수행에 대해 상담을 한다. 예를 들어, 펜들튼 학교는 학업과 훈련 스케줄이 조화를 갖추도록 교사와 코치의 협력이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900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쁜 경기 일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지도, 개인

상담, 경기 출전 시 수업 결석 동안 숙제 및 점검 등을 일일이 관리한다.

각 나라의 스포츠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각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 운동이 유기적인 관계로 작동하며 영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판별되었다 하더라고 일반학교의 정규 학교 교육을 이수하면서 스포츠영재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IMG아카데미는 입학 신청서부터 운동, 학교수업, 체력 훈련, 숙제 등을 모두 포함한 하루 일과를 서술하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IMG아카데미의 주목표가 최고의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과 빼어난 스포츠 훈련을 병행하여 운동능력계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발달도 균형적으로 이루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스포츠 지도자들은 다양한 교육 배경과 코칭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이 코치를 하는 대상은 최고 수준의 엘리트 프로선수 뿐 아니라 청소년 선수들도 포함하고 있었고 연령과 선수 경력에 제한 없이 잠재성을 가진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호주

앞서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포츠에서의 인권 논의가 학문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의 경향이다. 호주의 경우 1999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시드니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린 것이 스포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시초이다.

호주의 경우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 차원에서 스포츠와 인권논의를 주도하고 관련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스포츠와 인권관련 주 사업으로는 Play by the rules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호주평등위원회와 호주체육회가 2001년 8월부터 공동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많은 종목별 스포츠단체들

이 법적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종목별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구체적으로 신체접촉이나 언어사용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호주체육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스포츠에서 여성, 장애인, 토착원주민, 노인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스타들과 함께 스포츠조직이나 스포츠클럽에서의 차별, 괴롭힘, 욕설 등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Northern Territory지역의 경우, Brisbane Lions팀의 미식축구선수 Darryl White나 호주대표팀 하키골키퍼 Mark Hickman, ABC 스포츠해설자 Charlie King등이 적극적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 포럼(National Forum for the sports needs more women)을 개최하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 예로 2002년도에는 스포츠에서 임산부들의 스포츠에서의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요점은 임산부들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싶은 결정은 의학적 전문가들의 상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Fair Go For Officials"포럼을 개최하여 스포츠에서 심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욕설과 폭력의 문제에 대처하기위한 효율적인 전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호주체육회와 더불어 호주올림픽위원회(Australian Olympic Committee 이하,AOC)에서는 윤리행동 규범을 만들어 놓고 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중지 혹은 해고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이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보호, 명예회복 및 상담도 제공한다. 선수, 지도자, 임원은 훈련 시 혹은 경기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AOC가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 **직접적 차별(Direct Discrimination)**: 차별하는 사람(Discriminator)이 차별받는 사람(Aggrieved Person)의 장애여부, 인종, 성별, 결혼여부,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스포츠 환경 속에서 주변사람보다 덜 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것

· **간접적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차별하는 사람이 차별받는 사람의 장애여부, 인종, 성별, 결혼여부,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나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스포츠 환경 속에서 주변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 **괴롭힘(Harassment)**: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향해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 학대, 경시, 위협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을 가하는 것

· **욕설(Vilification)**: 사람의 장애, 인종, 성별, 결혼여부,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나이에 기초하여 그 사람을 증오, 경멸, 조롱하는 행동을 가하는 것

· **아동학대(Child Abuse)**: ① 경멸적인 혹은 부적절한 행동 ② 아동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③ 부적절한 접촉 ④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⑤ 아동의 문화적 혹은 종교적 차이에 대한 무감각

호주체육회의 특징은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감시하고 목격할 수 있는 스포츠 모니터링 프로그램(Good Sport Monitor/Play by the Rules Program)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강조하고 스포츠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행정가등이 협력하여 서로를 모니터링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1년도에 호주의 호주수영연합, 호주소프트볼협회, 호주체조연합, Surf Life Saving Australia 등 4개 단체에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중 스포츠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선수보호정책의 예로 수영단체 SLSA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영단체(Surf Life Saving Australia-SLSA)는 해양안전과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조직 중에 하나이다. 임무는 호주전역의 해안가와 해양 환경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호주체육회에 의해 채택된 회원보호정책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수영은 모든 회원들에게 특히, 괴롭힘, 따돌림, 아동학대등에 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하고 있다. 교육은 클럽단위에서부터 정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지역적 모임, 회의, 세미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7월말

에 호주수영연맹과 함께 최종 회원보호정책을 발표하고 포스터와 브로셔를 통해 정책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보호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클럽에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감시를 통한 회원의 보호, 둘째, 괴롭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은 반드시 공정하고 안전한 절차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영협회 회원예방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감시(screening)와 차별금지선언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 이하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 및 자원봉사자, 개별적으로 18세 이하 학생선수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차별금지선언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예방활동과 원만한 해결절차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는 2001년부터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차별, 아동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포츠 전략을 세우고,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매년 3차례에 걸쳐 소식지(Harassment-free Sport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소식지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스포츠퀴즈 문제가 실려 더욱 친근하게 폭력사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선수, 인종차별, 심판의 불공정행위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단위의 스포츠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뉴스레터에 소개하는 모습과 해외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코너 등 실제 학생선수, 스포츠지도자,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다.

호주체육회에서는 호주스포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rt)과도 연계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여학생선수 4명 중 한명, 남학생선수 8중 한 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 법정에 선 스포츠지도자들의 단지 10%정도가 그들의 삶 동안 70에서 100명 사이의 학생선수들에게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을 한 번 행한 지도자들이 다른 학생선수들에게도 반복해서 성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Trisha Leahy(2001)에 따르면, 370명의 선수를 엘리트스포츠와 클럽스포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31%의 여성선수와 21.3%의 남성선수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엘리트그룹 중 46.4%, 클럽그룹에서는 25.6%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호주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성희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폐해는 정서조작과 정서학대와 연관된 perpetrator strategies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185명의 엘리트선수 중 14%가 지도자 혹은 코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risha Leahy(2001)에 따르면 "나는 성희롱 가해자가 사용한 가장 주된 방법 중의 하나가 강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조작, 이 희생자들이 가해자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 New South Wales(2000)와 Queensland(2001) 지역의 아동보호에 대한 원칙은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집에서도 안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단체들은 정책의 범위, 실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한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보호정책의 채택: 아동학대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명확한 진술, 스포츠단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모음집 발간, 스포츠단체 내부 정관 및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법령 강화
- 모든 스포츠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를 위한 윤리규정 채택 및 서명을 필수화하고 정기적으로 이에 기초한 스포츠윤리선언을 발표
- 스포츠지도자들의 자격 이수 시 범죄여부 점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특히 성희롱, 폭력기록이 있거나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 속에서 훈련하는 스포츠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수립
- 폭력보호 담당자가 사례접수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예, 사건접수 후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격리)
- 스포츠지도자 및 학부모, 학생선수들에게 어떻게 아동학대를 인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적 교육 및 주변에 폭력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처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스포츠에서 괴롭힘(harassment)은 사람들에게 존중, 존엄,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스포츠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괴롭힘에 취약하다. 특별히, 코치들은 종정 그들의 선수와 자기존중감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는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모든 호주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경험할 권리
- 스포츠 참가를 위한 적절한 준비
- 그들의 신체적 성숙도와 운동 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권리
- 적절한 수준의 규칙과 가치에 따라 운동할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할 권리
-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능력과 리더십을 나눌 권리
- 성공적인 스포츠 활동 참가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또한, 호주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공정하고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책임
- 규칙에 의한 플레이
- 코치, 동료, 상대편과의 협동
- 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괴롭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스포츠전략(Harassment-free Sport Strategy)은 스포츠 환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스포츠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

발하고 스포츠에서의 괴롭힘과 학대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다루면서, 목표는 보다 안전하고 관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개인과 조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교육적 문서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단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 코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 행정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 선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 심판을 위한 가이드라인
  - 괴롭힘과 차별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
  - 공포와 성적차별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
  -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교육적 세미나
· 괴롭힘 접수 담당자를 위한 기술훈련코스
· 비폭력 회원보호정책 템플릿
· 교육활동(학술회의, 기사, 언론인터뷰)
· 연구물(호주선수의 괴롭힘에 대한 인식, 호주에서 성희롱
· 뉴스레터

국가 스포츠 단체 및 지도자들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정책에 대해 ① 장기적 계획, ② 청소년 참여, ③ 신체적 성장과 성숙, ④ 스포츠 진로, ⑤ 연결망 형성, ⑥ 실현시키기, ⑦ 코칭 자질, ⑧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⑨ 스포츠와 법 등 9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중 스포츠와 법 부분의 “학생선수 차별, 폭력 및 성폭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자 및 관리자용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학생선수 차별, 폭력 및 성폭력 체크리스트

주 제	실행한 일	해야 할 일	기 간	책임자
1. 차별과 성희롱				
당신은 어떻게 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누구와 함께 훈련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법적권리를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생선수들로부터 어떠한 불평을 제보 받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스포츠 폭력상황에서 중재하고 상담해줄 사람을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학생선수 보호				
당신은 모든 학생선수들에게 차별 및 성희롱, 폭력행동의 적절한 기준을 알려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생선수들을 가르칠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지도시의 폭력성, 성희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생선수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인식(서약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생선수들의 제보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괴롭힘과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담당자가 누구고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 지를 인식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보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3. 스포츠에서의 약물				
4. 직장건강안전(OHS) 위험관리				
5. 사생활보호				

또한, 호주 National Sporting Organizations(NSO, State Departments of Sport and Recreation)에서는 Member Protection Officers(MPO), Member Protection Mediators(MPM)등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들의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 Member Protection Officer(MPO)과정 폭력보호 담당관, 2일 교육
- Member Protection Officer:Children and Young People(MPOC)과정, 1일 교육
- Member Protection Mediator(MPM)과정, 1일 교육
- Refresher Course, 1일 교육

또한, 호주체육회는 지역별로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포츠 트레이닝코스(Harassment-free Sport Training Courses)를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지도자, 관리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2008년 주별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참여 유형 및 종목, 나이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Ⅳ-2> 호주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 지역 및 연령별 참여율

주별	참여율(%)	연령별	참여율(%)
ACT(수도권)	5.95	0-12	4.1
NSW(뉴사우스웨일스주)	25.6	13-18	20.3
NT(북연방)	3.7	19-25	16.0
QLD(퀸즈랜드주)	10.5	26-35	16.8
SA(남부호주)	31.1	36-45	21.3
TAS(타지매니아주)	2.3	46-55	16.3
VIC(빅토리아주)	13.9	56-65	3.3
WA(서부호주)	7.1	65세 이상	2.0

<표 Ⅳ-3> 호주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 종목 및 참여유형별 참여율

참여 유형	참여율(%)	10대 주요 교육 종목
행정가	16.5	농구
보조자	0.4	크리켓
보조코치	0.7	넷볼
진행위원	4.0	육상경기
코치	30.8	축구
매니저	0.2	럭비
공무원	2.9	하키
선수	16.6	조정
팀매니저	2.2	배드민턴
트레이너	2.1	야구
심판	9.0	-
기타	9.5	

오프라인상에서의 교육 이외에 온라인상으로도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하여 스포츠현장에서의 학대, 차별,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정도 소요되고, 법적인 문제, 차별의 예시, 스포츠스타로부터의 코멘트, 자주 묻는 질문, 링크사이트, 포럼 등으로 구성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Child Protection in Sport”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학생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스포츠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캠페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학생선수보호 가이드라인이 2002년 1판에 이어, 2006년 2판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코틀랜드 정부를 포함하여, 스포

츠클럽, 스포츠단체, 여가학과, 그리고 지역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작성되었다. 2판은 실행의 과정에 보다 초점을 주었다. 주 내용은 정책개발과 리뷰, 아동보호교육프로그램운영, 자료개발, 홍보 및 폭력 및 성폭력 사례소개이다.

기본적인 관점은 UNCRC(UN아동권리협약, 1989)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UNCRC(UN아동권리협약, 1989)은 모든 아동이 그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때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뒷받침한다. 스포츠에서 아동보호는 단지 스포츠를 통해 그들에게 해를 입힐지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뢰감을 주는 코치 혹은 지도자는 스포츠와 함께 집 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관심 있는 행동을 보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참여는 또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스코틀랜드 정부의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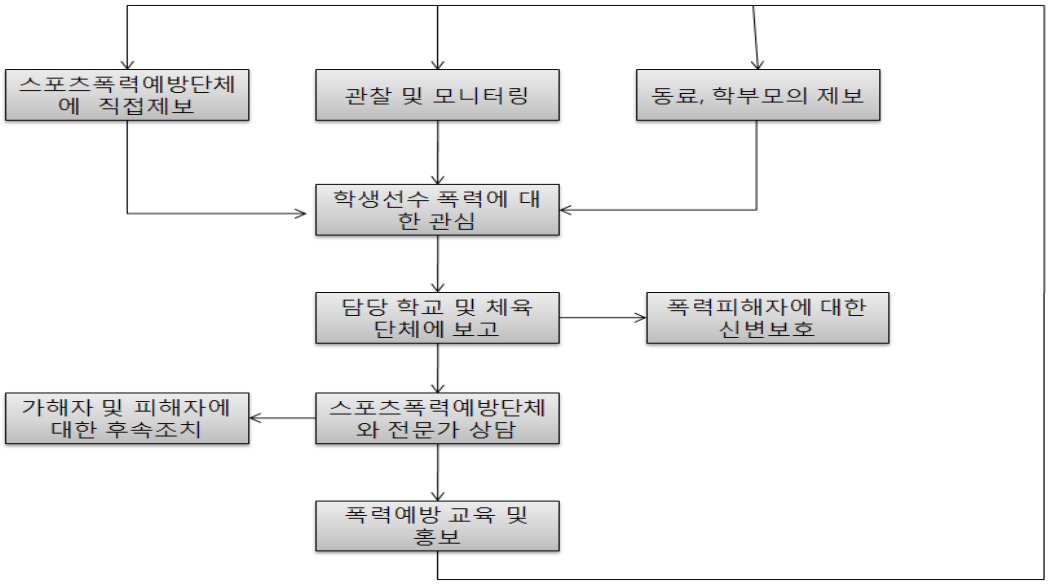

출처: 스코틀랜드 정부, 2006.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실행정책, 둘째, 아동보호정책의 사례, 셋째, 역할과 책임, 넷째, 정책실행절차, 다섯째, 관심에 대한 반응의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실행정책은 다음과 같은 7단계로 나뉜다.

◇ 1단계: 아동보호담당자를 임명하라.

- 아동보호담당자의 역할
·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한다.
·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관리 받는 방식에 민감성을 갖는다.
· 모든 멤버를 위한 아동보호의 의미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 스포츠를 통한 아동보호절차의 효율적 실행을 이끈다.
· 절차를 따를 수 있고 전문가조언이 필요할 때 자신의 판단으로 혼자 해결하지 않는다.
· 아동보호 정책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 회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지한다.

◇ 2단계: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용하라.

- 자신만의 아동보호 정책, 윤리규범, 지원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팸플릿을 사용하라.
- 아동보호 정책이 형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지를 확인하라.
- 다른 관련 정책들이 아동보호 정책과 절차와 일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라.

◇ 3단계: 행동규범과 절차,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라.

◇ 4단계: 적절한 훈련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일할 사람을 확보하라.

◇ 5단계: 절차를 따르라.

◇ 6단계: 관심에 대한 반응 혹은 정책위반에 대한 불평이 존재할 때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라.

◇ 7단계: 정책과 절차를 모니터하고 리뷰하라.

둘째, 아동보호정책 사례는 ①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신체적 상해, 신체적 무시, 성희롱 등의 범주에 드는 것을 말함) ② 약자를 괴롭히기(Bullying) ③ 인종차별 ④ 괴롭힘으로 나뉜다.

셋째, 역할과 책임감-정부가 해야 할 일과 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있

다.

넷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① 광고, ② 사전지원정보, ③ 지원과 자기선언서 작성, ④ 추천인, ⑤ 면접, ⑥ 직책 제공, ⑦ 스코틀랜드 자격 설명서, ⑧ 취임, ⑩ 수습기간, ⑪ 모니터링과 수행평가, ⑫ 보존 및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가 바로 관심에 대한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최소한 두 명의 지도자(한명의 남자, 한명의 여자)를 포함하여 훈련을 계획해야만 한다. 또한, 학생선수 지도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활동에 연관된 학생선수의 수
- 학생선수의 나이, 성숙도, 경험
- 아이들의 학습정도, 장애여부, 특이사항 숙지
- 운동종목에 따른 위험한 활동 및 환경의 고려
- 지도자의 경험과 자질수준
- 신체적 접촉
- 응급처치 및 상해치료
- 도전적인 행동 관리
- 학생선수 수송
- 대회참가를 위한 여행 시 학생선수보호 담당관을 동참, 위험요소 평가, 여행자 보험, 학생선수 10명 당 최소2명 이상 동행, 숙박, 출발 전 부모와 사전 회의 및 양식작성

3. 소결

앞서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로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3개국을 살펴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외국의 사례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선수 인권 향상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문화의 변화 역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고, 지금의 한국스포츠 환경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외국사례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미국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와 NCAA(미국대학체육연맹)에서는 선수 자격에서부터 학습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두고 있다. 일정 학업 능력이 되지 못하면 해당 학교에서 그 학생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학업 성취도에 방해되는 요인인 경기의 참여 한도와 경기 시즌의 기간, 정기 시즌의 경기의 수, 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대학에 들어와 학점관리 및 학업계획 상담, 작문을 포함한 기초 보충수업 제공, 상담뿐만 아니라 졸업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을 명시하고,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법, 폭력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도자용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학교운동부 현장에 보급하고, 신고할 경우 신원 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NFHS에서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지도자와 학생 간 서약서를 만드는 등 코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어 세계최고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지도하는 IMG아카데미의 경우에 졸업생 중 85%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호주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 차원에서 스포츠와 인권논의를 주도하고 관련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Play by the rules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종목별 스포츠단체들이 법적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자

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2001년도에 호주수영연합, 호주소프트볼협회, 호주체조연합, Surf Life Saving Australia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운동을 벌이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차별, 아동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포츠 전략을 세우고,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매년 3차례에 걸쳐 소식지(Harassment-free Sport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호주스포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rt)과도 연계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단체들은 정책의 범위, 실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호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선수 인권 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Member Protection Officer, Member Protection Mediator)를 따로 두고 있다.

③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우, “Child Protection in Sport"[28]를 별도로 만들어 학생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스포츠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캠페인이 대표적이며, 이를 위한 상세한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의 경우 스포츠와 인권을 바라보는 공통적 기본관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라나는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점검하고 항상 스포츠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혹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포함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학생선수를 전인적 인격으로 바로보고, 이에 기초해서 선수 인권 침해 담당자를 두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폭력예방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며 법적으로 사후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28)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의 설립은 2000년부터 시작된 영국(UK) 전체 프로젝트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protection in sport’의 일환으로 스코틀랜드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Sport England, SportScotland, Sports Council for Northern Ireland, The Sports Council for Wales, Children 1st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다.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학력기준을 두어 학생선수를 사회의 리더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지키고 훈련시간에 제한을 두는 모습은 단지 이들을 폭력 및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시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마인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정책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V. 정책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침해는 물론 심각한 폭력, 성폭력 경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밝혀준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폭력 경험이 78.8%,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경험이 63.8%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이 학생선수들의 사기와 미래의 꿈을 좌절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선수 인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체육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국회의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전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당국, 스포츠계, 학계로부터 이와 관련한 정책안들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아울러 이들 정책이 적절히 수립,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첫째, 학생선수 인권정책[29]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관장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30]의 정책안을 중심으로 최근의 정책동향을 분석·평가하고,[31] 둘째, 이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9) 이 연구에서 “학생선수 인권정책” 개념은 경쟁과 결과위주의 엘리트 체육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학원 체육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의미에서 학생선수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과 권리를 추구할 자유와 권리를 지원·보장하며, 소극적 의미에서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인권 친화적 체육정책, 학생선수 인권향상 정책 등의 개념과 혼용한다.

30)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안 수립 및 제시 시점에서의 관장 부처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을 사용한다.

31) 스포츠 영역의 인권 관련 정책은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아직 집행이 아닌 논의나 제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논의와 제언 수준, 즉 실질적 정책이 아닌 “정책 담론”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는 향후 정책 방향과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1. 학생선수 인권정책 동향과 그 평가

1) 학생선수 인권정책 최근 동향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 및 선수 구타, 성폭행 등 체육계의 비교육권,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개선 요구는 2007년 11월 안민석 의원 등의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후로 하여 중요한 정책 아젠더로 공론화 되었다. 이 결의안은 현행 “메달경쟁 위주”, “경쟁주의”의 학원체육을 비판하며, “청소년들이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체육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도록 기능하는 선진국형의 학원체육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체육대회 평일개최 금지, ② 최저학력제 도입, ③ 합숙소의 점진적 폐지, ④ 전국소년체전 개선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업무이관, ⑤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행을 주요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회 결의안은 입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현행 학원체육의 왜곡된 구조에 관심을 갖고 “학원체육의 정상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조광민 외, 2006)」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중 14.9%의 학생이 성추행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계 성폭력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7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같은 해 11월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간담회나 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 인권실태의 심각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의 부재, 학원스포츠 구성 주체들의 상황 및 문제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토대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 결의안 통과 시점에 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는 ①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강구, ②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및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③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④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마련, ⑤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학원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즉 현행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를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정적 효과로 보면서 인권 친화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인식과 정치적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국회의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2007년 11월 교육청, 체육회 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실무 T/F 팀”을 구성하고, ① 학교운동부의 제도 개선과 ②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점진적 폐지 및 안전관리 강화,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근절,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생참여 경기대회 운영방법 개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향상과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안)>을 마련한다.

2008년 2월,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가 체육계의 성폭력에 관한 이슈를 충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성계의 요구와 여론이 거세지자, 문화관광부의 연구용역인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결과(황정임 외, 2007)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스포츠성폭력 근절 대처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안의 주요내용은 ①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②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③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문화부-대한체육회), ④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⑤ 상시 합숙훈련 개선, ⑥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⑦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을 포함한다.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안)>이 국회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대책 수립 및 향후추진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스포츠성폭력 근절 대처방안>은 여론의 부정적 시각과 대책 촉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론에 발표된 “선언적 대책안”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들은 미완의 정책안이며 향후 실행과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책 의제와 세부과제를 정리·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스포츠 인권관련 부처별 정책 비교

정책과제/기관	국회 『학원체육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문화관광부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안』
1)학습권	①최저학력제도입	①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②체육특기자선발제도 개선 ③수업 결손 금지원칙 강력 제도화 및 튜터링 등 보충학습 프로그램 제공	①최저학력제 도입 검토 및 체육특기자제도 관련 연구 ②정규수업 이수 및 수업 결손 보충 의무화 ③전국단위 경기대회 연중참가 횟수제한 ④체육중 · 고등학교 및 전문계고 확대 권장
2)합숙소	①점진적 폐지	①초등학교합숙소 운영금지원칙 준수 및 제도화 ②중 · 고등학교 합숙소 개선 방안 강구	①초등학교 합숙훈련금지 및 중 · 고등학교 합숙기간제한 ②합숙소의 명칭변경(“생활관”) 및 환경 개선
3)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및 개최 방식 개선	①체육대회 평일개최금지 ②주관기관을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업무이관	①지역별리그제도입 및 유소년스포츠축제 전환 ②전국소년체전에 초등학생 제외조치 등 획기적 개선 ③과열경쟁 유도 행정적 유인구조 체육특기자 연구대회, 담당공무원 승진기제 등) 개편 ④주관기관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①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경기대회 운영 개선 (시기, 종목수 조정 및 축소)
4)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①학원스포츠클럽활성화를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		①학교스포츠 클럽 교육청 등록.관리 및 지원 ②관련부처간 학교 · 생활체육 활성화정책협조
5) 폭력 · 성폭력 예방 및 근절		①학생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및 인권증진 종합대책 마련 ②폭력,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영구자격박탈 ③현행 <선수보호위원회> 및 <고충처리센터> 등 유명무실한 제도 전면 재검토	①폭력,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②폭력,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의무화 ③학교운동부 코치 자격강화 및 처우 개선 ④"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⑤선수 접촉 · 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⑥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2) 현행 인권정책 평가

가. 정책 관점의 혼재: 엘리트 체육 vs 인권정책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책 개선 등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 스포츠 체육구조의 근간을 이루어온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정책이 기반 한 경쟁주의, 승리주의가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결의안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이전에도 이미 체육계 관련인사나 학자들, NGOs 등으로부터 다각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32]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역시 학습권 침해문제가 직접적으로 현행 학원체육구조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폭력과 성폭력 문제 역시 엘리트 체육 정책안에서 묵인되어온 폭력 문화 허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엘리트 체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 주체들 간에 다양한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관점을 극단화해서 설명하면 아직은 현행 엘리트 체육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 즉 “엘리트 체육을 포기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서 금 따는 거 다 포기해야 한다”,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관행과 제도를 어떻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체육계의 현실론부터, “문제는 있지만 개선해 가면서 엘리트 체육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적 개선론, 그리고 엘리트 체육의 전면적 폐지와 패러다임 전환론 등으로 분류되며[33] 구체적인

32)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책제언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 역시 현행 엘리트 체육의 병폐와 이와 관련한 정책적 변화 필요성을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아젠더로 제언했다.

33) 본 연구의 정책제언 관련 전문가 인터뷰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엘리트 체육정책의 폐지와 인식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책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실론이나 부분적 개선론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가령 “학습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위해서 정규수업을 다 듣는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혹은 “합숙소가 여러 인권 침해의 온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여건상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정책 관점과 구체적인 정책과제 간의 불일치는 현행 엘리트 정책 구조 틀을 전제하는 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충돌이기도 하다.

정책안 역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의 <표 Ⅴ-1>로 되돌아가 보면, 국회의 의결안이 엘리트 체육의 왜곡된 구조를 비판하면서 “학원체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학원체육 패러다임”을 표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관점은 단순히 현행 세부적인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그 개선을 통한 학원체육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계당국의 정책안은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학교운동부의 존재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엘리트 체육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정책관점을 보여준다.

즉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개혁적인 정책관점에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면, 오히려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원스포츠 정책은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구조적 개혁을 회피하면서 이를 “학교운동부” 문제로 축소, 환원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당국의 관점은 체육계를 지배하는 현실론과 엘리트 체육 비판론 사이에서의 혼란, 정책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그대로 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적, 갈등적 정책 관점이 결과적으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의 설정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애초에 의도된 정책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엘리트 체육 개선안의 문제

정책관점의 혼재 혹은 불분명한 정책방향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딜레마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소위 “현실론”적 입장에서 엘리트 정책을 전제한 채 집행되는 부분적 개선안들은 실제 현장에서 학생선수나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으로 받아들여진다. 가령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발생·유지시키는 대표적인 구조로 지적되는 학습훈련이나 합숙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과 관련하여 정상수업이수규정 준수, 합숙소 개선 및 폐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개선 혹은 유소년체육대회로의 전환 등이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특기자 입학 전형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엘리트 체육 구조 안에서 이러한 대책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행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온갖 편법이 동원되면서 마치 해결되고 있는 문제인 양 미봉되고 있다.[34]

다른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갖는 관계당국조차 뚜렷한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하고 강력한 집행의지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대책을 검토” 하거나 “방안을 강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게 되며, 심지어 현재의 엘리트 체육을 강화하거나 본래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역 대책이 발견되기도 한다.[35]

이러한 현실에서 관계당국의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을 얻기 어려우며, 현장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행정적 편법을 유도하는 정책의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경쟁주의, 승리제일주의를 주요 덕목으로 하는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학생선수들에게 경쟁을 자제하고 학습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이며 구조가 허락하지 않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오류이다.[36]

다.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미흡

현행 학생선수 인권관련 대책들은 주로 제도 개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에서 제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2007년도 학교운동부 정상수업 이수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면, 학생선수들이 평상시에 정규수업 후 운동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96.7%, 오전수업 후 운동하는 비율이 3.3%로 수업참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은 0%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96년 보고와 비교할 때 23% 증가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물론 그동안 학습권 침해를 조사해온 많은 실태조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학생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업 결손 여부에 대한 학교장의 “편법보고”와 그 보고에 기반 한 담당자들의 상부보고용 정책집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5)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권고되는 “체육중·고등학교 및 전문계교 확대권장”을 학습권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육중·고등학교 역시 학습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더 나아가 동구사회주의 모델에 기반 한 이러한 형태의 학교 확대가 미래사회에 과연 바람직한가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3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논점의 하나는 학생선수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문제였다.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본 연구의 인터뷰 사례에서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수업을 병행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몇몇 있었지만, 주변의 선후배나 지도자들이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 개인적인 재정 부담, 훈련시간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이 매우 미흡하거나 부재하다. 학생선수들이 인권 침해로 겪는 대표적 문제로서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는 학원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아울러 보다 직접적인 접근, 즉 예방과 인식 개선,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정책이 매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수 권익과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취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운동부 육성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에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가 눈이 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실제 운영 실적이 거의 미미할 뿐더러 전문적 상담이나 통합지원 서비스와 같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텐츠를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운영기관 자체가 학교나 시·도교육청 등 피해에 대한 직·간접 책임을 갖는 담당기관이어서 피해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은 결국 피해자들이 폭력이나 성폭력을 겪고도 이들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만들거나 문제를 은폐시켜버리는 역작용을 낳기도 한다.[37]

이와 같은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으로 2008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자와 학부모에 대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들 사업은 현장의 정책수요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폭력 등으로 피해를 겪은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성과뿐 아니라 향후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파일로트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이 강력히 요구되며 사업의 다양화, 전문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37) 본 실태조사에서 학생선수들은 폭력이나 성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대응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 "대응방법을 몰라서(29.7%)"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관련기관들이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준다.

라. 성 인지적 체육정책 도입 필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 피해 양태나 영향, 대처 방안 등에서 분명한 성별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성선수들의 경우 남성선수보다 폭력, 성폭력 등에 더 취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 차이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개별 과제 수립 시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생활이나 운동선수로서의 진로 등 자아 정체성과 관련하여 운동이 남성선수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여성선수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좀 더 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선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인권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존의 정책안과 관련해서 성 인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은 2007년 정부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처방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성 지도자 할당제 정도이다. 여성 지도자 할당제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근거는 황정임 외(2007)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스포츠계 성폭력이 ‘남성지도자-여성선수’라는 성별권력관계에 기반 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물론 여성 지도자의 존재는 성별불평등에 기반 한 성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본 연구의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결과가 보여주듯이 스포츠계에서 성폭력은 지도자-선수 사이에서 뿐 아니라 선후배나 또래 그리고 동성간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지도자 할당제는 단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성차별과 성별불평등 해소라는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남성적 가치와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스포츠계에서 여성 지도자의 존재와 가시화는 여성선수들에게 미래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성문화중심의 스포츠계에 성 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성 인지 정책에 관한 한 거의 불모지대라 할 수 있는 체육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유형의 성 인지 정책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스포츠계 성 평등 실태나 성별 차이, 여성선수의 경험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 인지적 체육정책을 포함한 인권종합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2. 인권 관점에 입각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1) 인권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앞서 최근 학생선수 인권정책 동향과 그 평가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이며, 그나마 시행되고 정책들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관계당국이나 체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엘리트 체육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변화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책 담론’의 수준에서 보면 현행 엘리트 정책에 대한 체육계의 비판과 이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 과제들에 대한 정책 제언 역시 여러 수준에서 제안되어 왔다.[3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나 관계당국의 대책안들도 이러한 정책제언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체육회 관련인사들이나 지도자들 역시 과도한 경쟁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9]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관계자들은 현재 관계당국의 개선책에 대해 “말만 하지 현장에서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 혹은 “회의만 하지 실질적 개선안을 집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40] 이들의 지

38) 학생선수 인권 개선 정책 혹은 스포츠 인권 개선 정책에 관한 정책적 관심들은 2000년대 들어 체육계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논문들로는 강신욱(2003, 2005, 2007a, 2007b), 강찬곤(2004), 김병철(2007), 남상우(2007), 류태호 외(2003), 유광욱・원유병(2007), 이정래 외(2006), 이창섭 외(2006), 조광민 외(2006), 함정혜・박현애(2007), 홍덕기・류태호(2007), 황정임 외(2007) 등 다수가 있다.

39) 지도자 간담회나 지역별 인권교육을 통해 만난 체육계 관계자들 역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40) 체육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있는 한 인터뷰 대상자는 “우리학교에서는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오전 정규수업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 다시 전으로 돌아가 더 공부를 안 시키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관계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적은 담론적 수준에서의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 간에 상당한 큰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엘리트 체육에서 인권의식에 입각한 학생선수 인권정책으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과 결단, 그리고 관계당국의 강력한 집행 의지라 하겠다.[41]

사실상 엘리트 체육 정책은 한편으로 인권 침해라는 측면뿐 아니라 다른 한편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과 정당성을 비판받고 있다. 류태호 외(2003) 등 체육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 체육계를 30여 년간 지배해온 엘리트 정책이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합한 체육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소수에 대한 자원 집중 정책은 오히려 풍부한 재능을 갖춘 인적자원 범위를 제한하고 우수한 선수의 배출을 저해하는 등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엘리트 체육에서 관행화된 운동 절대주의, 즉 합숙훈련이나 수업 결손 등을 통한 최대한의 연습량 확보와 혹독한 훈련방식 고수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말살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집단적이고 통제적인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는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실제로 운동 중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엘리트 체육정책은 소수의 전문운동선수 이외의 일반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을 상대적으로 배제하거나 ‘운동권’을 박탈한다. 즉 폐쇄적인 운동부 운영과 이들에 대한 자원의 집중적 투여는 운동부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운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거나 제약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문제와 맞물려서 일반학생들의 운동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와 연관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엘리트 정책에서 인권 친화적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정치적 이상의 추구라는 비젼을 넘어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인권 친화적 체육정책 패러다임은 엘리트 체육과 매우 다른 정책목표를 갖는다. 일차적으로 학생선수 인권정책은 학생선수 개인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과 권리를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며, 선수 각각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

41) 전문가 인터뷰에서 한 체육계 인사는 학생선수 인권정책과 관련해 “이미 어떤 정책도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현시점에서 문제는 정책제언이 아니라 집행의지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학생선수 인권정책은 학생선수 각자가 성별이나 연령, 성적 정체성, 장애 등 여타의 차이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성 인지적 관점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 입각한 체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엘리트 체육 정책이 국가주도 하에 기량이 우수한 소수의 전문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관리하는 정책이라면, 인권 친화적 체육정책은 각 개별 운동선수 자신의 전인격적 성장과 한 인격체로서의 권리,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정신 함양 및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즉 운동을 통한 인간성 계발과 민주적 사회인 양성과 같은 교육적 목적의 달성, 운동참여의 즐거움과 개인의 운동특성 개발, 도전과 성취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한 스포츠 가치의 추구, 개방적 형태의 운동부 활성화와 전 국민의 스포츠 향유 등 이상적인 체육의 비젼과 가치(류태호 외, 2003)를 공유한다.

2)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과 주요과제

인권 관점에 입각한 체육정책이라는 분명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제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의 인권종합대책의 수립 및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종합대책은 첫째,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학습권 등 인권 침해 개선 및 인권향상을 위한 체육정책 및 제도 개선, 둘째,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셋째,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인권 향상(학습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세부적으로 제안되었다고 본다. 특히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체육특기자선발제도 개선, 합숙소 개선 및 점진적 폐지, 전국체육대회 운영 및 개최방식 획기적 개선 혹은 유소년스포츠축제 전환, 학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성 인지적 체육정책의 도입은 현재의 스포츠 정책이 내재한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친화적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개선 요소들이다. 특히 이들 제도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폭력·성폭력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발생구조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과 형식상의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수행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제언을 첨부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학습권 관련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의 도입과 체육특기자선발제도 개선, 정규수업이수 강력 제도화, 튜터링 등 수업보완 프로그램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지상목표가 되는 체육계 구조에서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선수 자신들조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안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운동에만 승부를 걸거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또한 “히딩크 감독 신드롬”에서 증명되듯이, 과학적·체계적 훈련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물리적 시간 중심의 운동 관행이 갖는 비효율성 역시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운동선수들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고 활동영역이 다변화되면서 선수 개인의 창의성과 언어 구사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연습량에만 초점을 두는 근대적 훈련 모델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는 단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선수 자신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지원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보다 시급하게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

□ 합숙소 개선 및 폐지 관련

합숙소 개선 혹은 폐지안은 합숙소가 학생선수들의 삶을 폐쇄된 공간과 훈련만으로 통제하면서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체육계 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쟁점이다. 이번 연구결과 역시 합숙소나 합숙훈련이 폭력과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합숙소 폐지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의 주요과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합숙소 문제 역시 학습권과 더불어 엘리트 체육구조 안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처럼 보인다. 현실여건상 합숙소를 '생활관'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기숙사'[42]로 전환하고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개선론 역시 학생선수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거나 과도기적인 절충론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미 많은 체육계 학자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일상적 삶에서 훈련과 통제의 효율성만을 최우선시해서 선수들의 삶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율적 주체로서 개인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며, 어떤 현실적 고려도 이 당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숙소 문제 역시 해결책은 엘리트 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같이 가는 문제이며, 관계당국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폭력 등 인권 침해뿐 아니라 체육계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관행과 부패, 과열경쟁의 근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존재 한다"[43]는 체육계 내부의 지적처럼 전국(소년)체육대회 문제는 엘리트 체육 정책이 파생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위치 지워진다. 게다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만들어내는 경쟁구조와 체육특기자 문제 등은 현 한국사회의 왜곡된 교육구조 및 대입제도, 그리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관계당국의 이해와 맞물려 더욱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진다. 관계당국이나 학자들이 기껏해야 경기 참가 횟수 제한, 혹은 종목 수 조정, 개최시기

42) 합숙소를 기숙사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합숙소와 기숙사는 존재 목적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 합숙소가 특정한 그룹의 운동선수들을 특정한 장소에 거주케 함으로써 훈련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훈련 이외의 시간까지 적절히 통제한다는 목적을 갖지만, 기숙사는 일종의 주거 형태의 하나로서 집단적 주거를 특징으로 한다.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에서 만난 체육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가 존재하는 한 체육계의 모든 병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도자나 코치, 학교장들과의 만남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정 등 지극히 미시적인 개선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배경을 갖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조의 문제는 구조 개선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정책 전환 계획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나.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예방 및 인식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 이외에는 전무할 뿐더러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실현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사람’임을 고려한다면,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은 인권정책의 주요한 컨텐츠로써 반드시 제도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폭력/성폭력 실태결과를 토대로 인권 침해 예방과 인식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①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② 학생선수 인권교육, ③ 학생선수 성교육 운영, ④ 지도자 인권교육, ⑤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⑥ 학부모 인권교육 및 간담회, ⑦ 관계기관 담당자 인권교육 및 협의회, ⑧ 스포츠 인권 전문 사이트 개설, ⑨ 스포츠 인권 의식 개선 및 인권문화 향상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들 개별과제의 구체적인 목적과 배경, 내용, 운영 및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① **목적**: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학원체육 주체 모두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보호하고, 피해발생시 의거된 지침에 준수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후속피해 발생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배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의 제작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스포츠 전반으로 볼 때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못하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

해가 야기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지배적이다. 이에 시급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인권 개념과 인권 침해 개념 및 행위를 분명히 알리고 인권 침해 시 이에 근거한 대처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③ 내용

- **학습권, 폭력, 성폭력 관련**: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 및 실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체계적 지침으로 구성한다.[44] 또한 피해 발생 시 학생이나 학부모, 지도자, 학교 등 관계당국이 수행해야 할 적절한 대처 방안이나 신고 방법, 의료적, 법적 조치 등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실제현장에서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성별, 연령, 성적 정체성 등 차별 금지 조항 포함**: 가이드라인은 폭력, 성폭력뿐 아니라 성별, 연령, 성적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지도자의 인권 침해 고지 의무**: 가이드라인은 지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준별 상세한 징계 및 처벌 규정은 물론 감독기관(학교장, 교육청 등)이나 지도자의 인권 침해 고지 의무[45]를 명시하여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가이드라인 숙지 및 교육**: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숙지되어야 하며, 특히 지도자 자격 이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킨다.

③ 운영 및 주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이의 홍보 및 배포, 교육과정에서 관계당국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

44) 본 연구의 외국의 인권정책 사례 연구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의 좋은 예들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5)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례에서 학생이 코치에게 감독의 성폭력을 보고한 경우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인권 침해 고지 의무를 분명히 한다면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선수 인권교육(학습권 · 폭력 · 성폭력)

① **목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개선 및 폭력 · 성폭력 예방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배경**: 2008년 상반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인권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학생선수 대상의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즉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의 제도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등 사업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강력히 요구된다.

③ **내용**

· 주제별(학습권 · 폭력 ·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은 학습권 등 학생인권의 보편적 개념에 기초하되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주제별(폭력 ·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폭력 ·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 발생 배경, 사례 및 실태,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스포츠 폭력 · 성폭력은 합숙생활이나 훈련과 같이 신체적 접촉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와 선수, 혹은 선후배나 동료 등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갖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등의 적절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상황별, 관계별에 따른 민감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성 인지적 프로그램: 본 연구결과는 폭력 ·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대응 방식, 영향 등에서 성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폭력 · 성폭력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수치심과 운동에 대한 사기 저하를 유발하며,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제작 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존감 향상과 피해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성 인지적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폭력 ·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참가자들의 적극적,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수

적이다. 특히 교육대상자가 10대 청소년들이란 점을 감안하여 역할극이나 또래그룹토론 등을 이용해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참가인원의 제한과 10대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간구성과 배치 역시 중요하다.[46]

- **예방교육의 정례화와 제도화**: 학생선수들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10대인 점을 감안하여 매해 일정시간 교육의 정례화와 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정시간 교육시수의 준수를 위해 교육결과 평가 및 보고는 학교나 지도자의 자체적인 보고가 아닌 교육주관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교육의 전문화와 정례화를 위해서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풀의 확보 및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폭력/성폭력 관련 교육 인력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스포츠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제기된다.[47] 따라서 교육인력 양성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료나 워크샵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운영 및 주체**: 현재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교육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력과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성폭력 전문기관이나 성교육전문기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 학생선수 대상 성교육 운영

① **목적**: 학생선수들의 건강한 성 문화 형성 및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46) 이런 방식의 청소년 대상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예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나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4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시행한 인권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스포츠 영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 10대 학생선수들의 경험이나 인식에 대한 정보부재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② **배경**: 본 연구결과는 학생선수들이 성별 인식이나 성과 관련해 일관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집단적, 폐쇄적 생활방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정규 성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학생선수들이 보이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부족이나 낮은 성 인식을 초래한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들이 성적 호기심이 강한 10대임을 고려할 때 건강한 성문화와 성 평등 의식의 형성은 성폭력 예방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장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③ **내용**

-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평등 의식 반영: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한 성별 인식에 기반 함으로써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훈련하며, 성 평등 의식에 기반 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성적 태도 등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학생선수의 경험과 문화를 고려한 성교육: 성교육은 피임 등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성교육 내용을 포함하되, 단체생활과 훈련과정에서 몸의 접촉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생선수들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서 일상의 맥락에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④ **운영 및 주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성교육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체육계나 운동선수들의 경험과 문화를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관련단체의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 성교육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동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① **목적**: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며, 따라서 인권 침해 예방 및 학생선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② **배경**: 현재 스포츠계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도자가 마치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가해자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큰 변화를 유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도자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도자들 역시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인권피해 발생 현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의 역할 및 폭력·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지도자 인권교육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도자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③ **내용**

· **학업과 운동 병행을 지원하는 지도자 역할**: 외국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 인권교육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을 향상시키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상과 지도자의 역할을 포함한다.[48]

· **폭력, 성폭력 관련 교육**: 지도자는 학습권, 폭력, 성폭력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피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학생의 지도 및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지도자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의 최대가해자 혹은 주요가해자임을 보여주며, 학생들 간에 폭력·성폭력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책이나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폭력·성폭력에 대한 지도자 자신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운동현장에서 폭력·성폭력의 문제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자가 숙지해야 할 원칙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선수들 간 폭력·성폭력 발생 시 적절한 학생선수 보호 지침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된다.

48) 지도자의 역할에 관해서는 Ⅳ장의 해외사례 연구 중 미국 IMG아카데미의 코치 역할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IMG는 모든 학생들이 선수로서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교육목적을 두며, 코치는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상시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진도와 운동 수행에 대해 상담한다.

④ **운영 및 주체**: 지도자 교육은 현직에 재직 중인 모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의 교육시수 의무화를 제도화 한다(예: 연 1회 3시간 이상 교육 참가). 지도자 교육의 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체육회의 협약을 토대로 운영하며, 시·도 교육청은 지도자의 교육 참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는다.

□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① **목적**: 지도자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사 및 채용 시 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지도자의 자격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학원체육에서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② **배경**: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몇몇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하여 영구제명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인사검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영구 제명되거나 실형을 복역한 뒤 체계적인 인사검증 절차 없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복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자 인사채용과정의 자격검증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내용 및 운영**: 폭력/성폭력 행위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함으로써(예: 1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영구제명’ 등) 학교 스포츠 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경기장이나 숙소, 학교 접근 금지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를 수반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학교의 지도자 채용 시에 학교장이나 학부모에게 정보열람을 허용한다.

□ 학생선수 학부모 인권 교육 및 간담회

① **목적**: 학부모 간담회 및 인권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 및 공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확대한다.

② **배경**: 학부모는 학원체육의 중요한 현장주체의 한 축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정책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부모 간담회는 그러한 관행을 깨뜨리고 학부모들의 어려움과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학부모 간담회의 지속 및 더 나아가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 등 적극적 지원 조치가 요구된다.

③ **내용**

· 학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공적 통로 마련: 학부모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학부모 소통공간을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견과 경험을 수렴함으로써, 그동안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온 학부모들을 학원정책의 주체로 공식화한다.

· 인권 및 폭력·성폭력 교육: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침해 감시자로서 역할하며 문제 발생시 학생선수의 일차적 지원자로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모 공동체·단체 구성: 궁극적으로 학부모 자신들의 역량 강화와 세력화를 기반으로 학부모 공동체나 단체구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제도 개선 및 인권 침해 감시자이자 학원정책의 주체로서 역할 한다.

④ **운영 및 주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부모 간담회의 지속적 사업추진과 지역별 학부모 네트워킹 구성 등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학부모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및 협의회

① **목적**: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협의회 등 공적 논의공간을 구성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② **배경**: 관계당국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학생선수 인권정책의 정책결정자이며 집행자로서 정책의 핵심적 주체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학계나 현장 지도자들은 이들 정책담당자들의 인권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책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 관계자의 정책 관점은 여전히 엘리트 정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거나 인권 관점에 입각해 있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더구나 정책현장에서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나 담당업무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오히려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정책 관계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인권교육 실시 및 관계당국 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회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③ **내용**

-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인권 의식이 정책 수행에 매우 핵심적이며, 또한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고려하여 관계자 대상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갖는 학교, 시·도 교육청, 각 경기연맹단체, 대한체육회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제도화한다.[49]
- **관계자 협의회 등 구성**: 현재 학생선수 인권 정책은 관계당국과 산하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의 정책체계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업무 조정과 갈등의 중재, 그리고 정책안과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 현장과의 간격 파악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④ **운영 및 주체**: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49)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스포츠계의 한 전문가는 담당자 인권교육이나 협의회 등이 국내 여건상 “전혀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자문한 바 있으나, 인권교육 의무화는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1년에 1회 이상 공공기관이나 학교, 일반사업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여성계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을 당시에도 많은 정책 관계자들의 저항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 새롭게 수행될 때의 저항과 반발은 예상할 수 있지만, 스포츠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저항과 반발을 견제하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의 의무화와 제도화를 통해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해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학생선수 업무 관련 관계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인권 업무 관련 주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연대와 협의로 운영되어야 보다 더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스포츠 인권 전문사이트 개설

① **목적:** 정책관련 담당자나 학생, 지도자, 학부모 등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스포츠 공동체 내부간은 물론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사회적인 스포츠 인권의식을 향상한다.

② **배경 :** 사회 전반의 스포츠 인권의식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 관련 기본 정보 즉 인권개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중적 보급과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시 언제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접근통로가 필요하다. 인권전문사이트 개설은 이와 같은 정책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쌍방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상호간 의사소통 채널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내용**

- **인권관련 제반 정보 제공**: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보, 피해신고 절차 및 방법, 대처 방안,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스포츠 조직과 기관의 역할과 감독, 관계법령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한다(예: 영국의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 **스포츠 커뮤니티 구성**: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별 게시판 운영 등 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위기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이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전문사이트는 접근 가능성의 용이함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④ **운영 및 주체**: 전문사이트는 개설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적극적 의사소통 지원과 같은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부처나 체육 관계기간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기보다는 전문성

을 확보한 인권관련 단체나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스포츠 인권 의식 개선 및 인권 문화 향상 사업

① **목적**: 인권관련 홍보 및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스포츠계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스포츠 인권 인식 개선 및 인권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배경**: 스포츠 인권 정책의 제도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권 의식의 향상과 스포츠 인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스포츠 인권 문제는 일반대중에게 폭력이나 성폭력 등 부정적 측면으로 각인되거나 체육계의 문제라는 협소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포츠 인권이 우리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이며, 스포츠 인권에 대한 보다 긍정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 및 문화 사업이 요구된다.

③ **내용**

- **문화 프로젝트 지원**: 학생선수 인권 캠프 실시, 청소년 인권 프로젝트 지원, 스포츠 인권 축제, 연극, 영화 제작, 사진전 공모 등 문화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을 통하여 스포츠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고 인권 관점에 입각한 스포츠 문화를 확대한다.
- **홍보사업**: 현행 스포츠 인권관련 정책 홍보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광고, 청소년 인권 마스코트제작, 홍보 물품 제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④ **운영 및 주체**: 국가인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기타 다양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다. 인권 침해(폭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본 연구결과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78.8%, 성폭력 피해가 63.8%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스포츠계 인권 피해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은 부재하며, 심지어 정책 제언이나 논

의의 수준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기관이 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경우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보 부재와 접근 가능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신고나 피해 지원 요구가 있어도 적절한 지원과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50] 또한 스포츠계에서도 몇몇 신고제도와 보호 장치들이 있다고는 하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형식적·명목적 이름만 유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51]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피해 발생 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치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진로와 삶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한다. 더불어 필요시에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역시 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으로 인권 침해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전문적인 상담과 진로 지도, 의료적,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탑(one-stop)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one-stop) 지원 체계"

① **목적**: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가칭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포츠 폭력·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신고와 동시에 긴급한 보호 및 일련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배경**: 스포츠 폭력·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준에서의 지원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피해자가

50)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교육 전문가 워크샵"에 참여한 관계자 토론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51)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체육계 학자는 위원회가 개설된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상담 혹은 재보된 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폭력·성폭력 문제가 학교나 제도권 내에서 신고 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가능상은 희박하다고 자문했다.

비록 심각한 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 방안이나 해결 방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거나 학업이나 운동을 그만두는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고를 해 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52] 또는 신고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의 학생피해 신고시스템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많은 경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으며 더불어 학교나 직업 중단, 인간관계 상실 등 수 많은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의 경우 폐쇄적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들 간에 발생되는 피해라는 점에서 그 후유증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선수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합한 원스탑 지원 시스템이 시급히 요구된다.

② 내용

- **종합적, 전문적 통합지원 체계**: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는 학생선수의 폭력·성폭력 피해발생시 긴급 신고, 조사, 위기 상담, 지속 상담(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 진로 지도 및 중재, 법적, 의료적 지원을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수행한다. 또한 이 센터는 피해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가해자 지속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2차 피해 재생산을 예방한다.
- **체육계 폭력, 성폭력 특수성 고려**: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폭력·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 피해가 학생선수로서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전문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전국네트워크지원망**: 센터는 심리적, 물리적 접근가능성의 용이함이 매우 필수적이며, 그런 점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등 한 지역에 모델이 되는 센터를 설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거점으로 점차 전국적인 지원망을 구축해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원스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식은 기존의 폭력, 성폭력 상담소나 지원센터 등의 기구나 역할을 모델로 하거나, 예산중복 등 현실적인 여건을

52)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교육이 끝난 후 여학생 몇몇이 다가와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처리 과정 경험을 이야기 하며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 “신고한 우리만 피해를 당한다”는 말을 해서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한다.

고려해 기존 폭력, 성폭력 관련기관의 특화된 부설기관 혹은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는 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③ **운영 및 주체**: 관계당국은 기존 관련단체에 대한 예산의 확대 지원이나 독립적 센터의 설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센터의 피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기능,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계당국이나 대한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직접적 운영이 아닌 시민단체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3. 소결

이상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학생선수 인권관련 정책 동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의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 학생선수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인권 관점에 입각한 학원체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현행 학생선수 관련 제도 개선, 인권 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권 향상(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본 연구결과는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 침해가 현행 엘리트 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서는 학원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 한 제도 개선안, 즉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수업 결손 금지, 합숙소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선 및 유소년축제로의 전환,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등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②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대책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들 정책과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몇몇 의미 있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되며, 이의 확대와 전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생선수 성교육 운영, 지도자 인권교육,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학부모 인권교육 및 간담회, 관계기관 담당자 인권교육 및 협의회, 스포츠 인권 전문 사이트 개설, 스포츠 인권 의식 개선 및 인권 문화 향상 사업 등이 요구된다.

③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지원체계 구축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화된 전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는 학생선수들이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선수의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고 시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진로나 미래를 같이 고려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전문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피해신고 시 조사 및 위기상담, 지속상담, 진로지도 및 중재, 법적・의료적 지원을 연계・통합하여 지원하는 원스탑 지원 시스템(가칭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④ 성 인지적 체육정책 도입

본 연구 결과는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 피해 양태나 영향, 대처 방안 등에서 분명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여성선수들의 경우 남성선수보다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거나 폭력, 성폭력 등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 인지적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스포츠계의 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개선 및 체육정책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⑤ 중장기 단계별・영역별 계획 및 예산 지원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관행과 제도를 한 순간 개혁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고려하여 주관부처는 3년, 5년, 10년 등 단계별・영역별 중장기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수요자나 관계기관 등에 미리 준비시킴으로써 관행에서

오는 저항을 줄이되,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강력하고 일관되게 단계별 정책 집행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 배치와 자원의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전담부서나 기구의 신설,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Ⅴ-1> 참조).

<그림 Ⅴ-1>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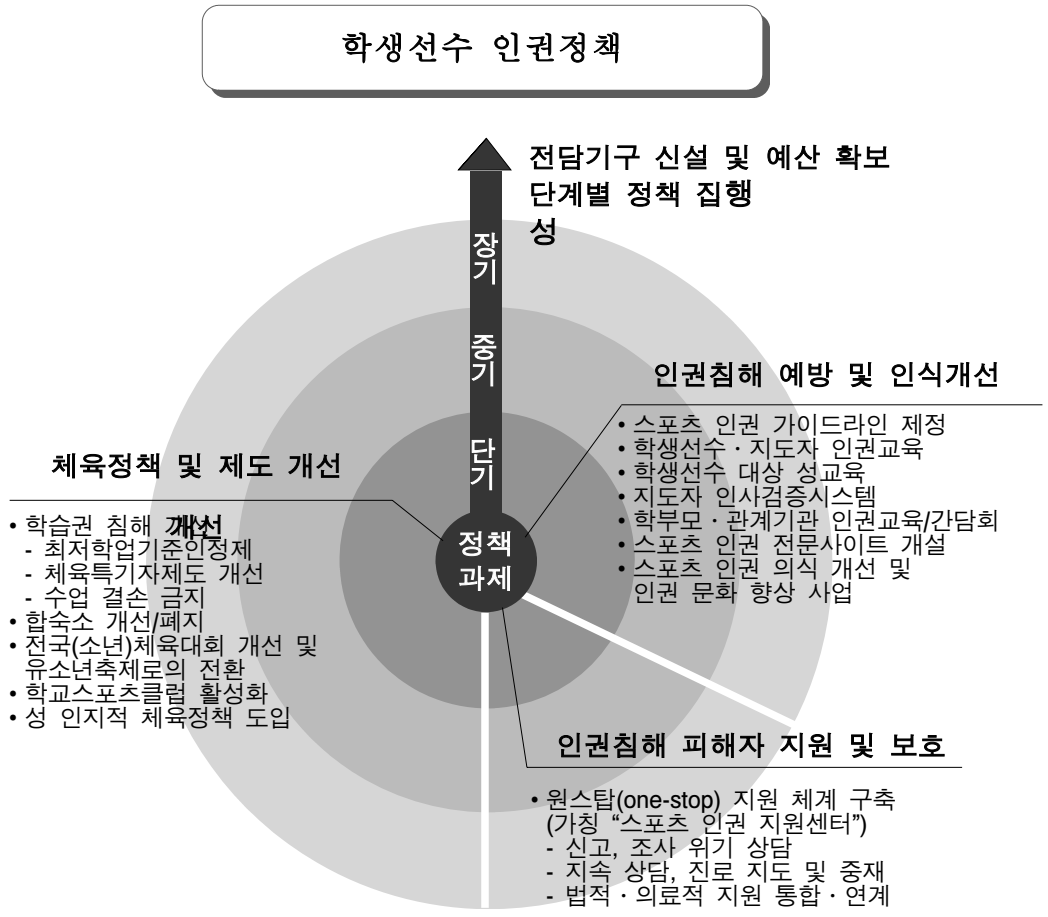

결 론

Ⅵ. 결 론

한국의 체육정책은 이른바 “국가 주도에 의한 소수 엘리트 선수만을 육성”하는 압축성장의 스포츠 발전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기간에 우수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평가와 아울러 자원을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잠재된 인적 자원의 사용을 원천봉쇄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해 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공유한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의 효용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기대로 인해 그것이 야기하는 병폐와 인권 침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다. 최근 체육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계기로 운동선수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근본적인 예방과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① 학습권 및 폭력, 성폭력 실태 전반, ② 학습권 침해와 폭력·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유지 기제 분석, ③ 관련 해외 정책사례 연구, ④ 학생선수 인권 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8년 5월-10월 동안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문헌연구 등이 병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피해 및 대응 방식 등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심층면접의 경우 학생선수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구조와 상호연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선수 관련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은 스포츠계, 여성계, 폭력·성폭력 NGO 관계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외에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권 실태를 살펴보면 학생선수들의 평균 수업시간은 시합이 있을 때 평균 2시간, 없을 때는 4.4시간 정도로 나타나 심각한 수업 결손률을 보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전체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훈련과 상관없이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은 매일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의 주 행위자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폭력은 훈련 장소에서 발생한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폭력유형은 선후배간의 폭력이며, 특히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에는 선배가 주 폭력행위자로 나타난다. 학생선수들은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벌 등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위해서 체벌은 어쩔 수 없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폭력 경험으로 인해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0.1%에 불과한 반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응답이 56.4%에 이른다. 특히 폭력 피해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성별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응답해, 성별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드러난다. 대처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등 소극적 대처가 “싫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적극적 대처보다 지배적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소극적인 대처 경향을 나타낸다.

성폭력과 관련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부터 강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전체 58.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제추행으로 25.4%를 차지한다. 강간 및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도 약 2.5%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가 매우 일상적일뿐 아니라 그 정도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성폭력 행위자는 폭력행위자와 달리 지도자와 선수들 간보다 선후배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장소나 기숙사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가 46.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화가 난다(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41.8%)”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성별 간 차이가 분석되는데, 남학생이 “화가 난다(53.1%)”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는 응답이 가장 높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폭력에

비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등 적극적 대처의 의지를 보이는 비율이 59.6%로 높게 나타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31.9%), “대응방법을 몰라서(29.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학생선수들이 어떤 계기로든 운동 중단 의사를 갖는다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자존감과 사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이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적으며, 운동부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운동부 중단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단 의사를 가졌던 비율이 전체의 86.2%로 나타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면접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며 아울러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구조와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준다.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선수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 침해는 폭력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주요한 토대이자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즉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박탈로 인해 학업 능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이외에 삶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또 다른 인권 침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또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이 매우 일상적이며 이는 학생들의 훈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용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선수들의 사기나 자존심 저하를 초래해 운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도자의 체벌은 종종 감정의 폭발이나 학생선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지도자의 폭력은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도자-선배학생선수-후배학생선수로 이어지는 가해자-피해자 연결고리의 악순환이 재생산되고 있다.

성폭력은 지도자와 학생선수, 그리고 학생선수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성폭력의 발생은 운동선수 집단의 위계화된 폭력문화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운동현장에서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훈련의 양상,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 선후배 간의 폭력이나 체벌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로 시공간적인 차

원에서 상호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는 지도자나 선후배간의 위계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상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학생선수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선수들이 운동 이외의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에도 운동선수생활에 지장이 올까봐 우려하거나 적절한 문제를 제기해봐야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체육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요구되며 피해발생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과 성폭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성별 특성을 고려할 때 운동현장에서 체벌 등 엄격한 통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훈련 방식이나 인권 침해의 시정이 요구되며, 특히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이나 여성선수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세력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학생선수 인권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정책사례로는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3개국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체육활동에서 아마추어 정신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와 NCAA(미국대학체육연맹)에서는 선수자격에서부터 학습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제시한다. 세계최고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지도하는 IMG 아카데미의 경우 코치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코치는 학생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폭력 및 성폭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나 브로셔, 가이드라인 제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경자체의 조성을 억제시키며, 피해신고 시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 차원에서 스포츠에서의 인권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관련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폭

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Member Protection Officer, Member Protection Mediator)를 따로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Child Protection in Sport"이라는 단체에서 학생선수보호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및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외국사례의 공통점은 학생선수를 전인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스포츠 활동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점검하며 항상 스포츠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준다는 국내 학생선수 인권정책 개발 시에 하나의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국내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최근 학생선수 인권정책 관련 동향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인권 관점에 입각한 학원체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학생선수 관련 제도 개선과 아울러 인권 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영역별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학습권 보장 등 인권 향상과 관련해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 한 제도 개선안, 즉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수업 결손 금지, 합숙소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선 및 유소년축제로 전환,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등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며, 아울러 성 인지적 체육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개선 대책으로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학생선수 인권교육, 학생선수 성교육 운영, 지도자 인권교육,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학부모 인권교육 및 간담회, 관계기관 담당자 인권교육 및 협의회, 스포츠 인권 전문 사이트 개설, 스포츠 인권 의식 개선 및 인권 문화 향상 사업 등이 요구된다. 셋째, 인권 침해(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신고 시 조사 및 위기 상담, 지속 상담, 진로 지도 및 중재, 법적・의료적 지원을 연계・통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주관부처는 3년, 5년, 10년 등 단계별/영역별 중장기플랜을 제시하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단계별 정책 집

행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집행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 배치와 자원의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전담부서나 기구의 신설,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뿌리가 깊은 체육계의 인권 침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결정권을 갖는 정책담당자들(학교장, 시·도 교육청, 각 경기연맹단체, 대한체육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책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 그리고 정부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한다.

첫째, 정부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체육계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정부의 체육 정책방향과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전문가, 체육인, 시민들을 연대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여론주도 그룹으로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학원 체육 정책의 현재 당사자인 학생선수,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일단 운동을 선택한 후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특례 입학, 직업시장 진출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비리와 폭력, 인권 침해, 재정적 부담 등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내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도 전무하며, 잘못된 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가질 여유가 없이 대부분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게 된다. 즉 이들은 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정작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부모간담회는 이들을 지원하는 첫 번째 정책적 접근이라고 평가되며, 장기적으로 학부모들 스스로 정책의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자신의 목소리와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세력화가 요구된다.

셋째, 체육계의 문제는 단순히 체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외부사회와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가령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육계는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운동경험을 축적해 온 청소년 폭력이나 성폭력 전문 시민단체 등 일반시민사회와 상호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계는 오랫동안 성폭력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어 왔으면서도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폭력이나 여성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을 갖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계 및 학생선수 인권문제는 수 많은 젠더 이슈를 포함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폭력,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뿐 아니라 폭력이나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로서의 자존감이나 정체성 등에서 상당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체육에서 여성의 상대적 소외와 접근가능성의 제한, 학생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의 성별불균형과 성 차별적 제도의 개선, 한국 스포츠문화에 내재된 남성중심의 인식체계와 문화 등도 중요한 여성 인권 아젠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와 여성의 문제, 즉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별 문제 그리고 성 인지적 체육 정책 및 성 평등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스포츠계와 여성계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신욱(1998), “운동선수 신체적 학대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체육학회지』 제37권 제2호.

---------(2003), “학교 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 실태 조사”,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3호, 97-109쪽.

---------(2005),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5호, 147-59쪽.

---------(2007a), “학교운동부 코치의 체벌행위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135-151쪽.

---------(2007b),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언어폭력 경험과 자율훈련참가의 가설적 인과모형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6호, 97-108쪽.

강창곤(2004),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8권 제4호, 92-105쪽.

고은하 외(2005), 「운동선수 구타 실태 조사 및 근절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2007),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2007), 「학교스포츠클럽 성공을 위한 정책제안」,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실(2006),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학교운동부 실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문화관광위원회(2005), 「운동선수 구타 근절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권인숙(2005),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카투사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21권 제2호, 223-53쪽.

권인숙 외(2004),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성의식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김기오・강정호(2002), “고교 운동선수의 운동만족도와 아노미 및 사회적 일탈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5호, 71-83쪽.

김병철(2007), “중・고 체조선수들의 체벌실태 및 코칭행동과 체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5호.

김석희(2007), “대학 운동선수들의 체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1호.

김선희(2007),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반성과 실천적 대안: 전인적 청소년 스포츠.” 『코칭능력개발지』 제9권 제3호.

김승재・김진희(2007), “스포츠교육모형에서의 젠더 관점”,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377-90쪽.
김신일(1999), “학습권의 정당성과 위상”,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편), 『교육이론과 실천』, 제9권, 5-13쪽.
김애랑(1994), “합숙훈련 기간과 조건이 운동선수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球技種目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영갑・김동규(2001), “스포츠 현장의 체벌과 보상”, 『한국체육철학회지』, 제9권 제2호.
김용승(2007), “체벌과 선수의 정신력 강화”, 『스포츠과학』, 여름호.
김응식(2001), “체벌에 대한 운동선수와 지도자 태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3호, 59-70쪽.
김익겸 외(2001),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부설한국체육과학연구소(편), 『체육학논문집』, 제29집, 85-95쪽.
김재원 외(2004), “폭력을 경험한 운동선수의 정서상태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2호, 133-40쪽.
김정명(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연구』, 제6권 제2호, 21-40쪽.
남상우 외(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117-27쪽.
류태호 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문석주・이강헌(2005),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형태와 종목유형별 스트레스 수준”, 한국체육과학회(편),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267-77쪽.
문익수・문창일(2006), “스포츠 교육을 통한 인성발달.” 『코칭능력개발지』 제8권 제4호.
백종수(2004),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 수준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1권 제2호, 231-43쪽.
변혜정(2004),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성폭력 행위와 피해 의미의 틈새”,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05), 「선수에 대한 폭력 행위 실태 및 근절 대책」, 대한체육회.
서혜진(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태도와 진로계획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희진・김용준(2004),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참가요인과 운동선수만족, 운동지속 및 탈퇴의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2호, 97-107쪽.

손종열(1998). NCAA의 benchmarcking에 의한 한국 대학 intercolligiate sports system 정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무엽(2003), “청소년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 및 괴롭힘에 대한 심리적 반응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심향보 외(2005),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운동선수들의 폭력으로 인한 탈진 비교”,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4호, 261-70쪽.

엄상현・박창범(2006), “운동선수의 체벌대상행동 통제용이성과 체벌수용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편),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3호, 405-14쪽.

오성기・전도선(2001), “스포츠 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른 체벌의 원인 비교.”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2권 제4호.

유광욱・원유병(2007),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종류 및 폭력 원인”,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105-16쪽.

이강헌 외(2004), “스포츠 형태와 종목유형별 고교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 한국체육과학회(편),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3권 제1호, 343-52쪽.

이명선(2005), “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10대 성교육과 성적 자기결정권> 웍샵 자료집,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이미경(2001),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총서』, 제4권, 157-75쪽.

이성은(2003), “성희롱-이성애제도-조직문화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19권 제2호, 209-44쪽.

---------(2004), “Practical Strategies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10권 제4호.

이용인 외(2003),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8권 제2호, 202-15쪽.

이정래 외(2006), “중학교 운동선수의 체벌 실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체육과학회(편),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제3호, 453-62쪽.

이충삼(2001), “청소년 운동선수와 일반학생간의 자아개념 다중 비교”, 한국체육과학회(편),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3-19쪽.

이충훈 외(2006), “개인 및 단체 종목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운동만족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사격과 축구선수 중심으로”, 한국스포츠리서치(편),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6호, 25-34쪽.

이학준(2006a), “스포츠윤리: 쟁점과 과제.”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6b), “체벌대안담론.”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4권 제3호.
이한주(2007). 외국의 스포츠영재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공교육의 역할 탐색.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7-29.
임수원(2005), “남자 고교 운동선수집단에서 사회화 수단으로서의 구타문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편),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8권 제3호, 327-39쪽.
장(윤)필화(1999), 『여성 몸 성』, 또 하나의 문화.
전용구(1997), “학교 운동부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편),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지』, 제2권 2호, 147-58쪽.
전태준・이승희(2007), “체육계열 대학생의 스포츠우리성과 집단 규범 및 선・후배 간 폭력 의식의 관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1호, 229-41쪽.
정희준(2007),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한국여성민우회・문화연대 주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자료집.
조광민 외(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인권위원회.
조현익・소영호(2007), “체육계 대학생의 분노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295-307쪽.
주종미(2007),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한국스포츠법학회(편),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267-300쪽.
---------(2008), “운동부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스포츠법학회(편),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3호, 219-45쪽.
지준만(2007), “축구 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임파워먼트, 집단응집력, 선수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6호, 357-68쪽.
체육시민연대・한국스포츠교육학회・전국체육교사모임(2003),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최관용(2003),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3호, 317-26쪽.
최수민(200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함정혜(199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활동 및 체벌실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6권 제4호.
함정혜・박현애(2007),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 한국여성체육학회(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51-62쪽.
홍덕기(2008),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덕기・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4권 제4호, 131-54쪽.
황정임 외(2007),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
황홍규(2000),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의의”, 대한교육법학회(편), 『교육법학연구』, 제12권, 312-48쪽.

Anita White(2003), "Women and sport in the UK", in ***Sport and Women: Social issu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Eds),*** p.35-52,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2000a), 「Harassment-free Sport: Guidelines for Officials」, Canberra.
---------(2000b), 「Harassment-free Sport: Guidelines to Address Homophobia and Sexuality Discrimination in Sport」, Canberra
---------(2000c), 「Harassment-free Sport: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e in Sport」, Canberra.
Carole Oglesby(2002), "Reflections on the special issue on sport: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Sexual harassment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eds),*** pp.145-50, England: Antony Rowe.
Celia Brackenridge & Kari Fasting(2002),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 England: Antony Rowe.
Gillian Flynn(1999), "Sexual harassment interpretations give cause for new concerns", ***Workforce,*** 78(5).
Ilse Hartmann-Tews & Gertrud Pfister(2003), ***Sport and Women: Social issu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IOC(2007), 「IOC Adopts Consensus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Jan Toftegaard Nielsen(2001), "The Forbidden Zone: Intimacy, Sexual Relations and

Miscondu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6(2), pp.165-82.

Jim Mckenna & Nicky Dunstan-Lewis(2004), "An action research approach to supporting elite student-athletes in higher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0(2), pp.179-98.

Joy Bringer & Celia Brackenridge & Lynne Johnston(2002), "Defining appropriateness in coach-athlete sexual relationships: The voice of coaches", in ***Sexual harassment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eds)***, pp.133-44, England: Antony Rowe.

Kari Fasting(2003), "Women and sport in Norway", in ***Sport and Women: Social issu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eds)***, p.15-34,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Kari Fasting & Celia Brackenridge & Jorunn Sundgot-Borgen(2003),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 Among Norwegian Elite Female Athletes and Nonathlet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4(1), p.84-97.

Liz Kelly(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Jalna Hammer & Mary Maynard(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M.Ann Hall(2003), "Girls' and women's sport in Canada: from playground to podium", in ***Sexual harassment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eds)***, pp.161-78, England: Antony Rowe.

Naomi Fejgin & Ronit Hanegby(2001), "Gender and Cultural Bias in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Spor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6(4), pp.259-78.

Sebastien Guilbert(2004), "Sport and violence: A Typ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9(1), p.45-55.

Seth Kirshenberg(1997), "Sexual harassment: What you need to know", ***Training & Development***, 51(9).

Robert L. Simon(1995), 『스포츠와 사회 가치』, 여인성・함정혜 옮김, 보경문화사.

Suzanne B. Kurth & Bethany B. Spiller & Cheryl Brown Travis(2000), "Consent, Power and Sexual Scripts: Deconstructing Sexual Harassment", Cheryl Brown Travis & Jacquelyn W. White(eds), ***Sexuality, society and feminis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nia Cassidy(2006), 『스포츠 지도의 이해』, 김진희 옮김, 대한미디어.

The Human Rights Council of Australia(2000), 「How you play the game: The

contribution of sport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uncil of Australia」.

Trisha Leahy & Grace Pretty & Gershon Tenenbaum(2002), "Prevalence of sexual abuse in organised competitive sport in Australia", in ***Sexual harassment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eds)***, p.19-46, England: Antony Rowe.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1),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harassment of students by school employees, other students, or third parties. Title 9.

WSI(2004), 「Women Sport International Position Statement on Sexual Harassment in Sport」.

www.ausport.gov.au

www.childprotectioninsport.org.uk

www.harassmentinsport.com

www.imgacademies.com

www.ncaa.org

www.nfhs.org

www.ncaa.org/gender_equity

www.olympics.com.au

www.playbytherules.net.au

<부록 1> 학생선수 인권관련 외국기관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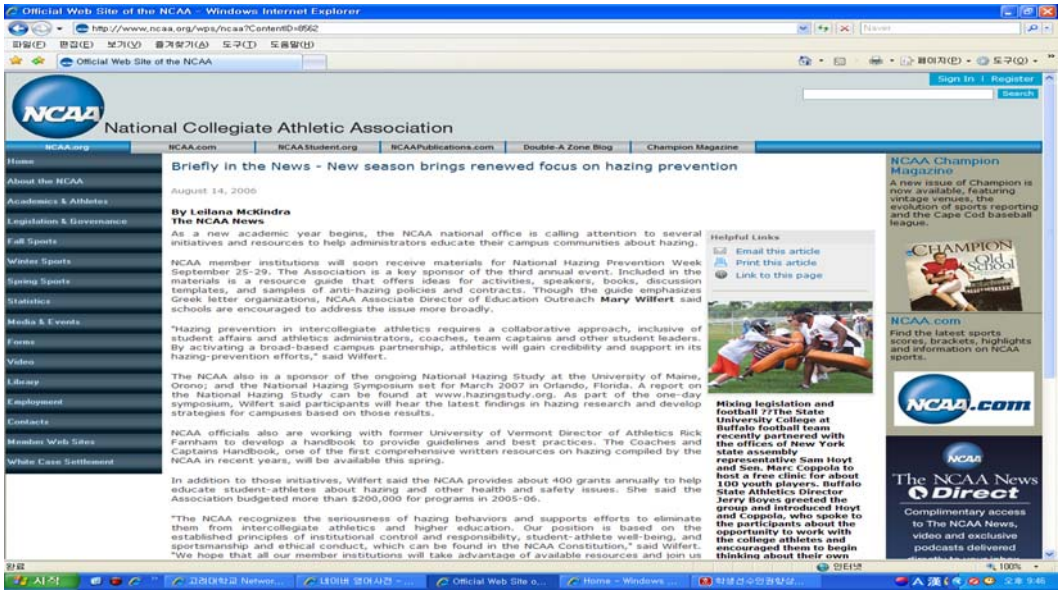

〔NCAA 홈페이지(www.nca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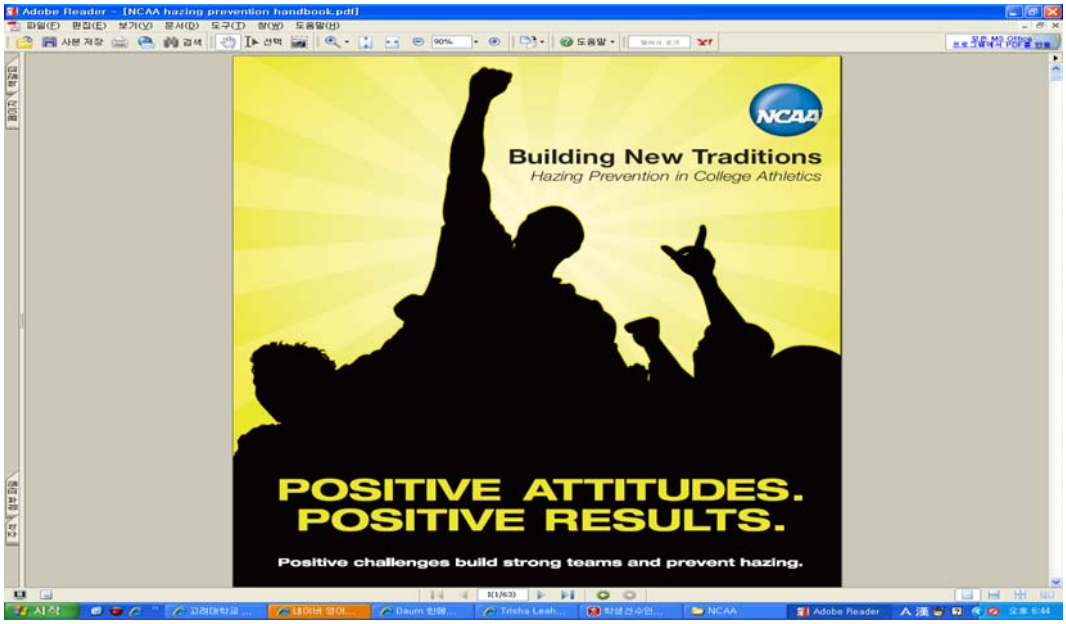

〔NCAA 폭력 예방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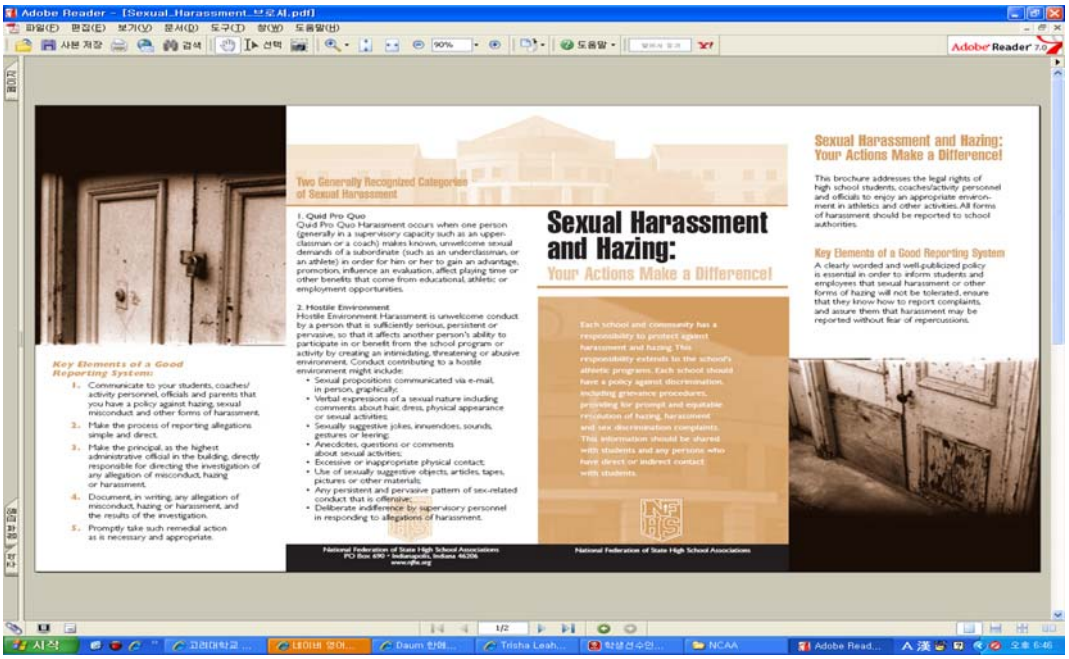

［학생선수 성희롱 예방 브로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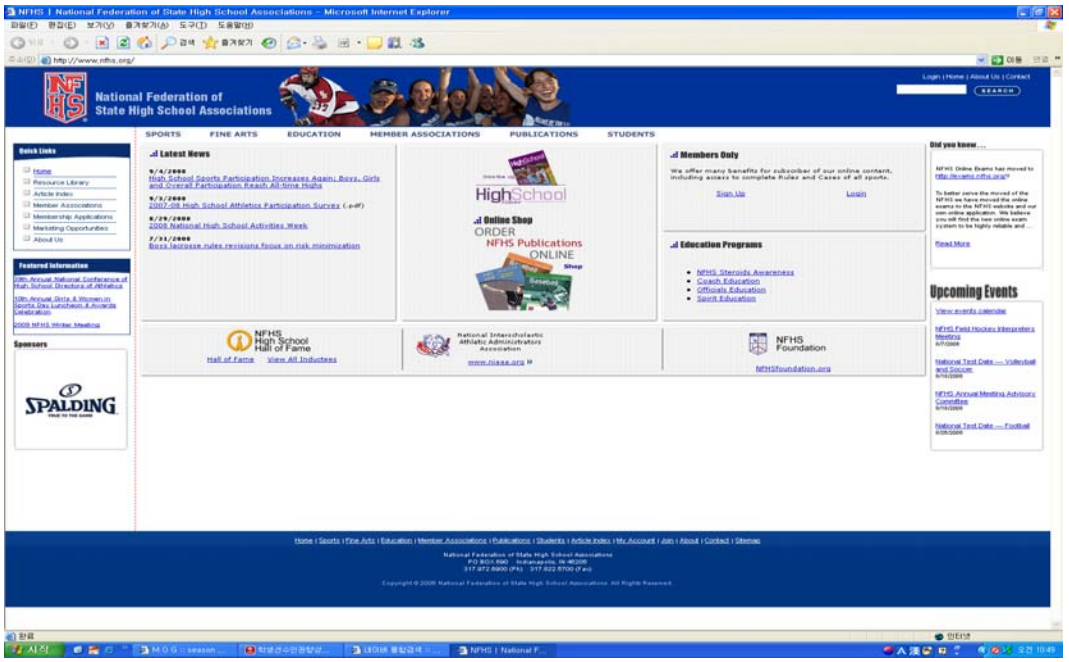

［NFHS 홈페이지(www.nfh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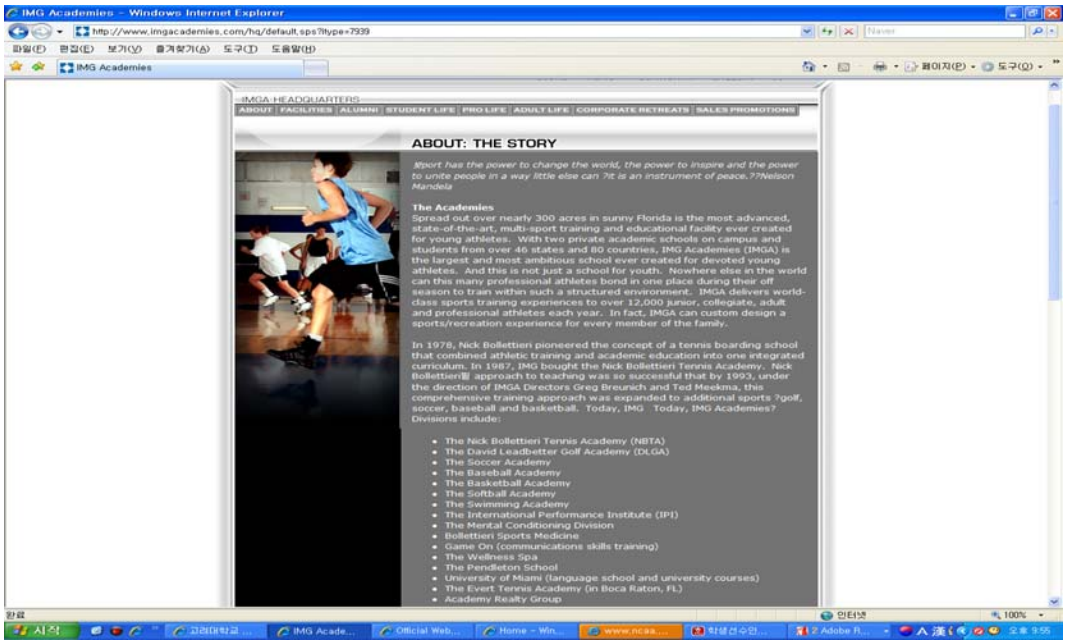

[IMG 아카데미 홈페이지(www.imgacademi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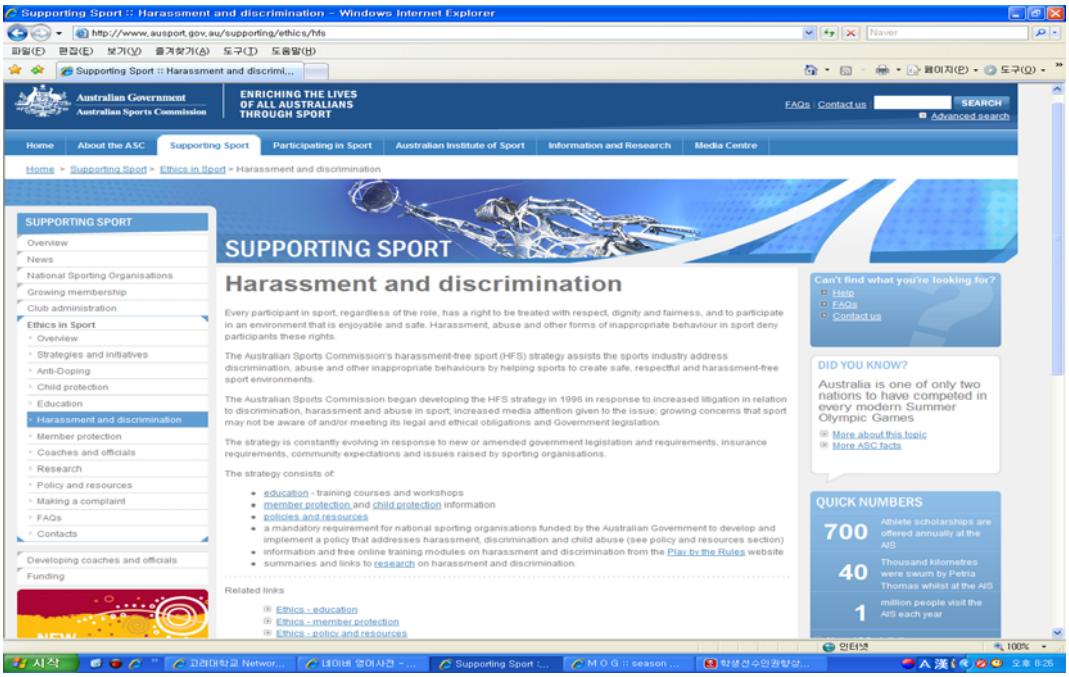

[호주체육회 홈페이지(www.ausport.gov.au)]

[Play by the Rules 홈페이지(www.playbytherules.net.au)]

[호주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www.olympics.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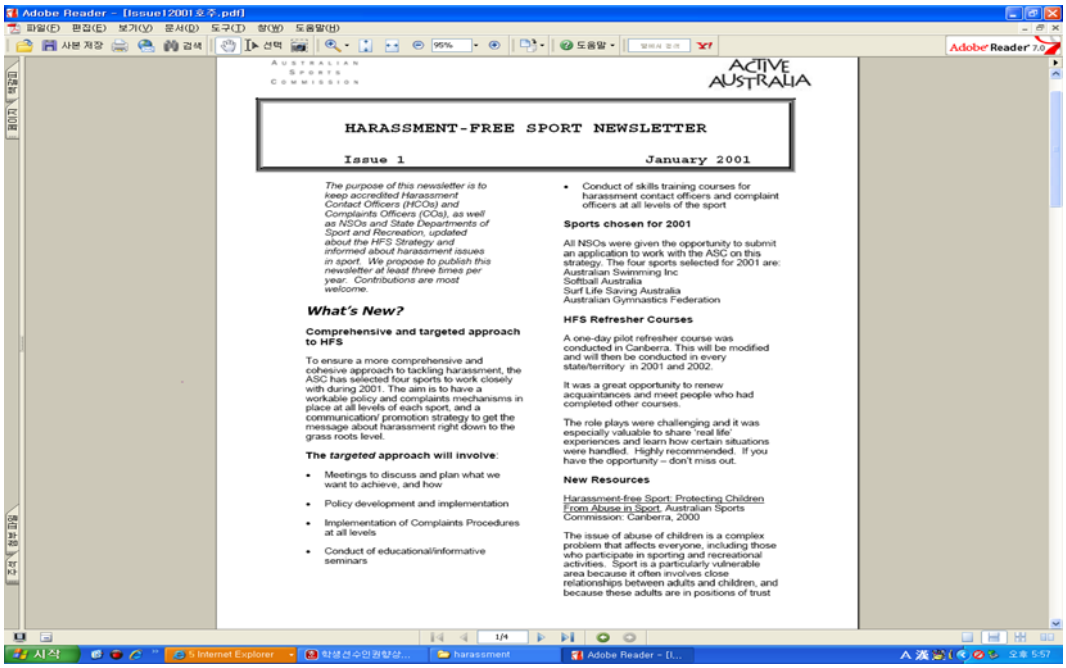

[호주체육회 Harassment-Free 스포츠소식지]

[Child Protection in Sport 홈페이지(www.childprotectioninsport.org.uk)]

<부록 2>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ID	1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운동부에 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됩니다. 따라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최종 연구보고서 역시 여러분의 소속 학교를 추측할 수 없도록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조사와 관련해 저희 연구진과 더 자세한 얘기나 인터뷰에 응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나누어드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8. 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책임자: 이명선(객원연구위원)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사항에 O로 표시해주세요.

1. 여러분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시합이 없을 때 약( )시간 ② 시합이 있을 때 약( )시간

2. 여러분은 하루에 몇 교시 정도 수업에 들어가나요?

① 시합이 없을 때 약( )교시 ② 시합이 있을 때 약( )교시

3. 여러분은 1년 동안 대략 몇 번 정도 시합을 위해서 합숙하나요? 약( )회

4. 그렇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대략 며칠 정도 시합을 위해서 합숙하나요?

① 없다 ② 약 ( )일

5. 당신은 주로 어디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① 가족과 함께 ② 친척집 ③ 기숙사 ④ 자취나 하숙 ⑤ 합숙소
⑥ 기타 ( )

6. 당신은 운동부 활동으로 인하여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보충수업을 받고 있나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학교선생님이 보충해주신다 ③ 운동부선생님이 보충해주신다
④ 운동부 친구들끼리 도와준다 ⑤ 운동부가 아닌 친구들이 도와준다
⑥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다 ⑦ 기타 ( )

7. 운동부가 되기 전과 운동부가 된 후에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요? (1~5 중에서 ○로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운동이 더 즐거워졌다.	1 …… 2 …… 3 …… 4 …… 5
학교수업에 더 흥미를 느낀다.	1 …… 2 …… 3 …… 4 …… 5
운동에서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1 …… 2 …… 3 …… 4 …… 5
성적이 떨어졌다.	1 …… 2 …… 3 …… 4 …… 5
친한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1 …… 2 …… 3 …… 4 …… 5
운동부가 아닌 친구와 멀어졌다.	1 …… 2 …… 3 …… 4 …… 5
운동부에 고립되는 것 같다.	1 …… 2 …… 3 …… 4 …… 5
나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 …… 2 …… 3 …… 4 …… 5
많이 맞거나 때리거나 거칠어졌다.	1 …… 2 …… 3 …… 4 …… 5

8. 여러분이 소속된 운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나요?
(2, 3, 4, 5, 6을 고른 경우에는 '누구에게서', '어디서' 경험하였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내용	횟수	누구에게서	어디서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합숙 훈련 기간 동안 누군가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한 학기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번 ⑥ 매일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9. 여러분이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별 느낌이 없다 ② 우울하다 ③ 화가 난다 ④ 무섭다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
⑦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는다 ⑧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⑨ 언제가 되든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 ⑩ 기타 ( )

10. 여러분이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 ②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③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④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⑥ 그냥 넘어간다
⑦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⑧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⑨ 기타 ( )

11. 여러분이 소속된 운동부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나요? (1~5 중에서 ○로 표시해주세요.) (2, 3, 4, 5를 고른 경우에는 '누가', '어디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모두 골라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많다	누가	어디서
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내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나를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1 ·· 2 ·· 3 ·· 4 ·· 5	① 코치 ② 감독 ③ 친구 ④ 선후배 ⑤ 기타( )	① 합숙장소 ② 시합장소 ③ 훈련장소 ④ 이동차량 ⑤ 락커룸 ⑥ 코치실 ⑦ 뒷풀이장소 ⑧ 학교뒷마당/공터/집 등 한적한 곳 ⑨ 기타 ( )

12. 여러분이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별 느낌이 없다 ② 우울하다 ③ 화가 난다 ④ 무섭다
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 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
⑦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는다 ⑧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⑨ 언제가 되든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 ⑩ 기타 ( )

13. 다른 선수가 위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별 느낌이 없다 ② 그 선수가 뭔가 당할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③ 화가 난다 ④ 우울하다 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⑥ 왜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⑦ 무섭다
⑧ 그 선수는 운동을 그만둘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⑨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
⑩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⑪ 기타 ( )

14. 위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 ②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③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④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⑤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⑥ 그냥 넘어간다
⑦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⑧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⑨ 기타 ( )

15. 여러분이 위와 같은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그럴 것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 2순위: ___

①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②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③ 불만을 말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④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⑤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⑦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⑧ 그 사람이 협박해서
⑨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⑩ 성폭력(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⑪ 기타 ( )

16. 최근 여러분이 소속된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17. 운동부 내에서의 체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1~5 중에서 ○로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체벌도 참아야 한다.	1 …… 2 …… 3 …… 4 …… 5
선배 말은 하늘이다.	1 …… 2 …… 3 …… 4 …… 5
전체 팀웍과 훈련을 위해서는 단체기합이나 얼차려도 필요하다.	1 …… 2 …… 3 …… 4 …… 5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체벌은 필요하다.	1 …… 2 …… 3 …… 4 …… 5
옷을 벗기는 것도 체벌이다.	1 …… 2 …… 3 …… 4 …… 5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	1 …… 2 …… 3 …… 4 …… 5
나는 맞으면 운동하기가 싫다.	1 …… 2 …… 3 …… 4 …… 5

18. 다음 행동 중에서 여러분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u>모두 골라주세요.</u>

①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때린다.
②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준다.
③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다.
④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때린다.
⑤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준다.
⑥ 합숙 훈련 기간 동안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진다.

19. 다음 행동 중에서 여러분이 '성폭력(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u>모두 골라주세요.</u>

① 옷을 갈아입거나 쉴 때 노크 없이 불쑥 들어온다.
② 몸(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훑어보거나 계속 쳐다본다.
③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다.
④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다.
⑤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는다.
⑥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키스한다.
⑦ 무릎위에 앉히거나, 허락 없이 몸에 기댄다.
⑧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다.
⑨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다.
⑩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⑪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20. 여성과 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1~5 중에서 ○로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므로 보호해줘야 한다.	1 …… 2 …… 3 …… 4 …… 5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나 농담도 성폭력(성희롱)이다.	1 …… 2 …… 3 …… 4 …… 5
성폭력(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 …… 2 …… 3 …… 4 …… 5
성경험을 자랑하는 친구가 부럽다.	1 …… 2 …… 3 …… 4 …… 5
임신을 피하는 것(피임)은 여자가 해야 된다.	1 …… 2 …… 3 …… 4 …… 5
나는 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다.	1 …… 2 …… 3 …… 4 …… 5
성관계는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	1 …… 2 …… 3 …… 4 …… 5
남자는 여자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성관계를 가지면 된다.	1 …… 2 …… 3 …… 4 …… 5

※ 다음은 나의 운동부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동부 폭력에 대한 의식 및 운동부의 변화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1. 운동부의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22. 운동부의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23.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① 합숙을 없애거나 줄인다
② 체벌을 못하게 한다
③ 단체기합을 못하게 한다
④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
⑤ 성교육을 한다
⑥ 가해자는 코치나 감독이 될 수 없게 한다
⑦ 수업에 빠질 경우 보충수업을 해준다
⑧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학생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한다
⑨ 학교, 대한체육회 등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⑩ 운동시설이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다
⑪ 기타 ( )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은 자료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여자 ② 남자

2. 당신은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하시고, 학년을 숫자로 적어주세요.)
(중학교 / 고등학교) _____ 학년

3. 당신의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육상선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적어주세요.)
① 육상 ( ) ② 축구 ③ 체조 ④ 농구 ⑤ 배구
⑥ 수영 ⑦ 태권도 ⑧ 기타 ( )

4. 언제부터 학교운동부 생활을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하시고, 학년을 숫자로 적어주세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_____ 학년 _____ 월부터

5. 운동부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운동이 좋아서 ② 코치, 체육선생님, 담임선생님 등이 권하셔서 ③ 부모님이 원하셔서
④ 친구 때문에 ⑤ 스타 운동선수들이 멋있어보여서 ⑥ 기타 ( )

6. 본인이 운동에 소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혹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①이면 다음의 7-1번 문항도 대답해주세요.)

7-1.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 싫어서 ② 성폭력(성희롱) 때문에 ③ 학교성적이 떨어져서
④ 운동성적이 떨어져서 ⑤ 진로문제 때문에 ⑥ 운동이 힘들어서
⑦ 가족의 반대 때문에 ⑧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⑨ 기타 ( )

8. 체벌을 하지 않고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감독이나 코치, 교사라면 이렇게 하겠다'를 써주세요.
( )

9. 당신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

| 인 쇄 | 2008년 11월

| 발 행 | 2008년 11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연구수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103-1 93330